



2021.08.24

국회예산정책처 | 법안 비용추계 이해와 사례

2021 법안 비용추계 이해와 사례 II

Understanding Bill Cost Estimation and Case Studies 2021 II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2021 법안 비용추계

이해와 사례 II

(법안 비용추계 사례)



국회의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2021 법안 비용추계 이해와 사례 II(법안 비용추계 사례)

총괄 | 박명호 추계세제분석실장

기획·조정 | 심혜정 조세분석심의관
임준기 행정비용추계과장
윤상열 前행정비용추계과장
이유미 추계세제총괄과장
임재금 前추계세제총괄과장
이현경 경제비용추계과장
이진우 사회비용추계과장
박연서 세제분석1과장
백경엽 세제분석2과장

작성 | 이택균, 김계남, 윤주철, 문지은
이주호, 지수현, 박나경, 유희수
김진이, 이윤경, 장만수, 안종덕
장삼열, 이미연, 여은구, 김정훈
이우영, 백수연, 김효경, 박지원
이겨레, 최천규, 박정환, 이정훈

지원 | 강신영

「2021 법안 비용추계 이해와 사례」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문의: 추계세제분석실 행정비용추계과 | 02) 6788-3778 | ace@nabo.go.kr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본 원고에 실린 추계서는 개별 분석관의 견해를 반영하여 작성한 것으로 실제 집행되는 비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일러두기

- 「법안 비용추계 이해와 사례」의 2권인 ‘법안 비용추계 사례’는 2020.5.30. ~ 2021.3.31. 기간 동안 의원발의 빈도가 높았거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법률안에 대하여 비용추계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유사 법률안에 소요되는 비용을 미리 가늠하고 법률안을 성안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 본 비용추계 사례집은 ‘지출법안’과 ‘수입법안’으로 나누어 법률안 별로 주요 정책 내용을 소개하고, 법률안이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추가 재정지출 또는 재정수입의 증감규모를 추계함으로써 국회의원님들께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작성하였습니다.
- 보고서에 게재된 비용추계 금액의 경우 비용추계 작성 당시 가정한 단가 기준(물가상승률, 임금상승률 등)과 현재 기준의 단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한 부분이 있어 현 시점의 추계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또한, 국회예산정책처가 의원님들께 회답하는 비용추계서 양식을 일부 수정하여 보고서에 게재하였으므로, 실제 회답되는 비용추계서와는 일부 양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법안 비용추계의 개념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법안 비용추계 이해와 사례」 1권인 ‘법안 비용추계 이해’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례

제 1 장 지출법안

I. 보건·복지 분야 • 1

[비용추계서]

1. 지방의료원의 공동 개설: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2. 근로자가 예방접종을 받는 경우 유급휴가 제공: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
3. 장애아동의 연령 상향: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17

II. 산업·농업·국토·교통 분야 • 25

[비용추계서]

1. 도시철도 무임수송 등 공약서비스의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국가 또는 원인제공자가 부담: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25
2. 수소전기자동차 연료보조금 지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31
3. 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에 대한 출연금 지급: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36

III. 교육·과학·문화·여성가족 분야 • 44

[비용추계서]

1. 특수학교 특수교육교원 배치기준 상향 및 지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44
2. 주기적 안전성평가 실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57
3. 양육비 대지급 실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5

IV. 환경·노동 분야 • 73

[비용추계서]

1.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가산: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73
2. 청년창업가에 대한 고용·산재보험료 지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8
3. 강우로 인해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되지 않고 배출되는 하수의 측정·기록: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83

V. 국방·보훈·보상·법제사법 분야 • 92

[비용추계서]

1. 6·25전쟁 참전 비정규군 공로자 공로금 지급 등: 「6·25전쟁 참전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 92
2. 고엽제수당 유족 승계, 사망일시금 지급, 수송시설 이용지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0
3. 치료명령 및 보호관찰 대상자 확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9

[미첨부사유서]

4. 동반휴직제도 및 육아휴직: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28

VI. 안전·행정 분야 • 136

[비용추계서]

1. 보험목적물 대상 확대: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36
2. 소방공무원 예방접종 실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41
3.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46

차례

제 2 장 수입법안

I. 소득세 분야 • 153

[비용추계서]

1. 월세 세액공제율 인상: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53
2.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159
3.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율 인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166

[미첨부사유서]

4. 상가임대로 인하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69

II. 법인세 분야 • 172

[비용추계서]

1. 법인세율 변경: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172
2. 최저한세율 변경: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80
3.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89

III. 재산과세 분야 • 198

[비용추계서]

1.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 인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198
2.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과세표준 및 세율인하, 세액공제 확대 등: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205
3.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과세기준액 인상 등: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224

IV. 소비과세 분야 • 240

[비용추계서]

1.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비과세 기준을 배기량에서 자동차
가액으로 변경: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40
2. 원료로 사용되는 중유를 과세대상에서 제외: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46
3. 개인음식점 사업자에 대한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인상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49

[미첨부사유서]

4. 부가가치세 면세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253

V. 지방세제 분야 • 256

[비용추계서]

1. 영세개인사업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56
2.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 인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260
3. 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인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265

2021 법안 비용추계 이해와 사례 II

법안 비용추계 사례

제1장 지출법안



I 보건·복지 분야

1. 지방의료원의 공동 개설: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1.02.10. 발의)

가.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서울대학교병원 등과 공동으로 지방의료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의 설립 비용부담

나. 비용추계 결과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 1개소의 설립비용을 부담할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2년 991억원, 2023년 1,492억원 등 2021년부터 2025년 까지 5년간 총 2,483억원(연평균 497억원)으로 추계
 - 건립비용에 토지매입비는 포함하지 않은 결과로 토지매입비를 포함할 경우 지방의료원 설립에 따른 재정소요는 본 추계의 결과보다 증가할 수 있음

〈개정안에 따른 비용추계 결과〉

(단위: 억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계	연평균
지방의료원의 설립 (안 제4조제2항)	-	991	1,492	-	-	2,483	497
국비(50%)	-	496	746	-	-	1,242	248
지방비(50%)	-	496	746	-	-	1,242	248

주: 현행 보건복지부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사업’의 국비지원율 50% 적용

다. 재정수반요인

- 설립 및 등기(안 제4조제2항 신설)
 - 지방자치단체는 효율적인 의료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서울대학교병원 또는 국립대학병원과 공동으로 지방의료원을 개설할 수 있음

라. 비용추계의 전제

- 본 추계에서는 개정안에 따라 지방의료원 1개소를 신축하여 서울대학교병원 등과 공동 개설하는 데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 정부의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2020.12.13.)에 따르면 2025년까지 신축 또는 이전 신축을 통해 지방의료원을 3개소 이상 확대할 계획이나 현 시점에서는 연도별 구체적인 신설 계획을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1개 병원을 신설하는 데 소요되는 재정소요를 추계
 - 개정안에 따라 서울대학교병원 등과 공동으로 개설하는 지방의료원은 신설 형태에 따라 소요재정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 본 추계에서는 지방의료원을 신축하는 것으로 가정하므로 기존 병원의 증축 등을 통해 신규 개설을 추진할 경우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 －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른 공동개설은 신·증축 없이 기존 의료원의 허가사항 변경(공동개설), 병원 신축, 기존병원 증축·리모델링 등을 통해 추진 가능

- 신규 설치되는 지방의료원의 규모는 기존 지방의료원의 평균 병상 규모 및 연구·진료·교육 기능이 가능¹⁾한 규모 등을 감안하여 400병상 규모로 가정
 - 2019년도 말 기준 운영 중인 34개소의 지방의료원(분원 제외)의 평균 병상 수는 283개이며, 이 중 인턴, 레지던트 수련병원으로 지정된 7개 병원의 평균 병상 수는 433개임
 - 「의학교육 평가인증기준」에서는 임상실습 교육을 위하여 유효병상을 500병상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²⁾³⁾
- 지방의료원 설립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⁴⁾하되 운영비는 자체 진료수익 등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가정
 -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운영비 지원 여부 및 규모는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상황 등에 따라 상이함⁵⁾
- 부지매입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유희 부지 활용 여부, 설립 위치 등에 따라 소요 비용에 큰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본 추계에서 부지매입비는 반영하지 않음

1) 서울대학교병원 및 국립대학교병원과 지방의료원을 공동으로 개설하게 되면 의료인력의 교류, 공동 연구활동 등을 수행하기 위해 연구 및 교육 기능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고 가정

2) 「의학교육 평가인증기준」에 따르면 의과대학은 임상실습 교육을 위하여 유효병상 500병상 이상의 대학부속 교육병원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 2020.02.07.)

3) 참고로 기존의 국립대병원의 병상은 최소 689병상(강원대학병원)에서 최대 1,751병상(서울대학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제외)임

4)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 국비지원 한도 금액이 신축의 경우 연간 165억원(지방비 포함 총 330억원)으로 본 추계에서 산출한 지방의료원 설립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본 추계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고 지방의료원 1개소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하여 제시함

5) 법 제18조에 따르면 지방의료원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수익금, 제17조에 따른 보조금·출연금 및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비는 시설 및 장비보강사업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음

-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으로 함
 - 법 시행 첫해인 2021년 계획 수립,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년간 설립 공사 후, 2024년 운영을 개시하는 것으로 가정
 - 지방의료원 건립 사업의 사업비 규모를 고려 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해당⁶⁾되나, 예비타당성조사 기간 등을 고려 시 사업 시행 기간을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본 추계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기간은 고려하지 않음

마. 비용추계 상세 내역

1) 추계의 대상 및 방법

- 개정안에 따른 추계 대상은 지방의료원의 설립·운영에 따른 추가재정 소요임
 - 지방의료원의 설립은 병상수를 400병상 규모로 하고 유사사례를 적용하여 건축비를 추계

6) 기획재정부 「2021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으로서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정보화 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규정

〈비용추계 산식〉

추가재정소요 = 지방의료원 설립비¹⁾

1) 지방의료원 설립비 = 건축비^{a)} + 기타 설비비^{b)}

※ 2022~2023년 2년간 건물 신축 공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

a) 건축비 = 공사비[†] + 부대경비[‡]

† 공사비 = 총면적 × 면적당 공사단가

· 수련병원으로 지정된 기존 지방의료원의 사례를 준용하여 400병상 적용,
연면적 및 면적당 공사단가는 세종충남대학교병원 사례 적용(「2020년도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보고서: 세종충남대학교병원 건립사업」,
KDI공공투자관리센터, 2020.5.)

‡ 부대경비 = 설계비 + 감리비 + 시설부대비

· 기획재정부 「2021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건축부문
요율 및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등 적용

b) 기타 설비비 = 의료장비비 + 집기비품비 + 전산시스템구축비

· 병상당 의료장비비, 집기비품비, 전산시스템구축비는 세종충남대학교병원 사례를
적용

2) 지방의료원의 설립(안 제4조제2항)

- 지방의료원의 설립비용 항목은 추계의 전제에서 밝힌 바와 같이 토지
매입비는 제외하고 건축비와 기타 설비비로 구성
- 설립비는 건축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병원 기타 설비비 등으로 구성
되며, 설계비는 건축이 시작되는 2022년, 감리비 및 시설부대경비는
건축이 완료되는 2023년에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
- 의료원은 400병상 규모로 하되, 필요면적 및 공사비는 「세종충남대병원
건립사업」 사업계획⁷⁾을 준용

- 세종충남대병원의 병상당 연면적 $166.7m^2$ 를 적용할 경우 지방의료원의 총 연면적은 $66,680m^2$ 으로 산출됨
- 부속병원의 총 연면적 $66,680m^2$ 에 $1m^2$ 당 건축공사비 단가를 곱하여 산출
 - 건축공사비는 시공 시점(2022년) 이후 2년간 각각 건축공사비 총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집행하는 것으로 가정
 - 2018년 기준 「세종충남대학교 병원 건립」 사업계획의 $1m^2$ 당 공사비 $2,325,992\text{원}/m^2$ (2018년 기준)에 건설공사비 최근 3년간 연평균 상승률 3.8%를 적용하여 2022년 기준 $1m^2$ 당 건축공사비 단가 산출⁸⁾
- 건축공사비에 국토교통부의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따른 건축설계 대가요율⁹⁾을 곱하여 산출
 - 부속병원 건축물은 의료시설의 건축부문 요율 제3종(복잡) 상급을 적용하며 추계기간 동안 요율에 변함이 없다고 가정
 - 연도별 건축공사비에 직선보간 산정식¹⁰⁾에 따라 산출된 설계비 요율 5.04%을 적용하여 산출

7) 세종충남대학교병원은 500병상 규모로 총 연면적 $83,358m^2$ 에 지상 11층, 지하 3층으로 건설되며, 공사비는 1,938억 9,000만원임. 이에 따르면 면적당 공사단가는 $2,325,992\text{원}/m^2$ (2018년 기준)으로 산출됨(자료: 「2020년도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보고서: 세종충남대학교병원 건립사업」, KDI공공투자관리센터, 2020.5.)

8) 2017년 공공건축물 유형별 공사비 분석(조달청, 2018.6.)에 따르면 의료시설(충남서산시 건립)의 경우 공사단가는 $2,653,060\text{원}/m^2$ 으로 산출됨(2017년 기준)

9)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911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 4] 건축설계 대가요율에 따르면, 공사비 1,000억원 및 2,000억원의 대가요율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제3종(복잡)			제2종(보통)			제1종(단순)		
	상급	중급	기본	상급	중급	기본	상급	중급	기본
1,000억원	5.10	4.25	3.40	4.63	3.86	3.09	4.17	3.47	2.78
2,000억원	5.03	4.19	3.35	4.57	3.81	3.05	4.11	3.43	2.74

자료: 국토교통부

10) 직선보간 산정식은 다음과 같음

$$\text{요율}(\%) = Y_1 - \{(\text{당해 공사비} - X_1) \times (Y_1 - Y_2) / (X_2 - X_1)\}$$

(X_1 : 작은 금액, X_2 : 큰 금액, Y_1 : 작은 금액 요율, Y_2 : 큰 금액 요율)

- 건축공사비에 국토교통부의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따른 건축감리 대가요율¹¹⁾을 곱하여 산출
 - － 연도별 건축공사비에 직선보간 산정식에 따라 산출된 감리비 요율 1.05%을 적용하여 산출
- 병상당 의료장비비, 집기비품비, 전산시스템구축비 단가를 곱하여 산출하며 병상당 각 항목별 비용은 「세종충남대학교병원 건립」 사업계획¹²⁾을 준용

〈지방의료원 1개소 설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단위: 억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계
건축비 (A)	공사비	-	900	900	-	-	1,801
	부대경비	-	91	23	-	-	114
	소 계	-	991	923	-	-	1,914
기타 설비비(B)	의료장비	-	-	482	-	-	482
	집기비품	-	-	29	-	-	29
	전산시스템	-	-	59	-	-	59
	소계	-	-	569	-	-	569
합계(A+B)		-	991	1,492	-	-	2,483

- 주: 1. 공사비 및 기타 설비비 산출을 위한 단가는 「2020년도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보고서: 세종충남대학교병원 건립사업」(KDI공공투자관리센터, 2020.5.)의 세종충남대학교병원 사례를 적용
 2. 설계비,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는 「2021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의 건축부문요율 제3종(복잡) 상급으로 적용
 3. 건립비용에 토지매입비는 포함하지 않은 결과로 토지매입비를 포함할 경우 지방의료원 설립에 따른 재정소요는 본 추계의 결과보다 증가할 수 있음

- 1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911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 5] 건축감리 대가요율에 따르면, 공사비 1,000억원 및 2,000억원의 대가요율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제3종(복잡)	제2종(보통)	제1종(단순)
1,000억원	1.07	0.97	0.87
2,000억원	1.05	0.95	0.86

자료: 국토교통부

- 12) 「세종충남대학교병원 건립」 사업계획에 따르면 병상당 의료장비비는 1억 1,459만원, 집기비품비는 682만원, 전산시스템구축비는 1,400만원임(2018년 기준)

2. 근로자가 예방접종을 받는 경우 유급휴가 제공: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1.03.15. 발의)

가. 주요내용

- 사업주는 근로자가 예방접종을 받는 경우 접종일로부터 유급휴가를 줄 수 있음

나.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감염병의 백신을 접종하는 경우 사업주로 하여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그 비용을 지원할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백신휴가 제공률과 국가 지원율을 각각 50%로 가정할 경우 6,732억원(시나리오 1), 100%를 가정할 경우 2조 6,930억원(시나리오 2)으로 추계됨
- 본 추계 결과는 모든 임금근로자 중 공무원 등 일부를 지원제외 대상으로 가정하고, 백신휴가 제공률과 정부 지원율을 각각 50%, 100%로 가정하여 추계한 결과로 지원 대상, 지원 단가 등에 따라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개정안에 따른 비용추계 결과: 2021년〉

(단위: 억원)

구분	시나리오1	시나리오2
	백신후가 제공률(50%), 정부 지원율(50%)	백신후가 제공률(100%), 정부 지원율(100%)
백신접종 시 유급휴가비 지원	6,732	26,930

주: 2022년 이후에도 추가재정소요는 발생할 수 있으나 코로나19의 유행상황에 따라 재정소요 여부와 규모 등에 변동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2021년 예상소요액만을 산출함

다. 재정수반요인

- 사업주의 협조의무(안 제41조의2제1항)
 - 사업주는 근로자가 예방접종을 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유급휴가(이하 ‘백신히가’)를 줄 수 있음
 - － 동 법 제41조의2제항에 따르면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백신히가 도입에 따라 국가의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라. 비용추계의 전제

- 본 추계에서는 코로나19 백신히가 비용 지원에 따른 정부의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며, 추계기간은 2021년으로 함
- 정부는 소아, 청소년, 임신부를 제외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 11월까지 2차 접종을 완료한다는 계획¹⁾임
- － 2022년 이후에도 추가재정소요는 발생할 수 있으나 코로나19의 유행상황에 따라 재정소요 여부와 규모 등에 변동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2021년 예상소요액만을 산출함
- 향후에도 감염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나 감염병의 종류, 파급력,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해 현 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구체적인 접종계획이 수립된 2021년 코로나19 백신 접종만을 추계의 대상으로 함

1)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관계부처 합동, 2021.1.28.)

- 개정안에 따라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는 경우 1인당 2일간의 유급 휴가를 주는 것으로 가정하고, 2회차 백신 접종에 따른 유급휴가 비용 지원은 고려하지 않음
 - 정부 발표자료 등을 참조하여 1인당 2일간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가정²⁾
 - 예방접종 백신의 접종 횟수는 백신의 종류에 따라 1~2회로 차이가 있으나³⁾ 식약처 승인을 완료하고 국내 도입이 확정된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등은 2회 접종하도록 승인
 - － 백신접종 간격이 백신의 종류에 따라 3주~12주로 차이가 있고 2차 접종의 접종률은 현 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2차 접종 시의 유급휴가 비용은 추계의 대상에서 제외
- 유급휴가 비용 지원대상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임금 근로자 중 별도로 백신휴가를 제공받은 근로자로 가정함
 - 개정안 및 현행법에 따른 ‘입원·격리자 유급휴가 지원사업’에서는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하는 사업장의 규모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지 않고, 백신 접종 후 업무나 일상생활 복귀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전체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함

2) 백신 접종 후 10~12시간 이내 이상 반응이 시작되는 점을 고려하여 접종 다음 날 1일을 부여하고, 이상 반응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1일 더 사용할 수 있도록 함(백신 접종 시 의사 소견서 없이 신청만으로 휴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1.3.28.)

3)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2회 접종, 얀센 백신은 1회 접종

- 전체 임금근로자 중 현행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입원·격리자 유급 휴가비용 지원사업’의 지원제외 대상을 차감한 후 최근 정부의 조사결과로 발표된 백신접종 의향률(68%)⁴⁾을 적용하여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임금 근로자 수 추정
 - ‘입원·격리자 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에서는 국가 등 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등은 유급휴가비용 지원에서 제외하고 있음⁵⁾
 - 백신을 접종한 임금 근로자 중 별도로 백신휴가를 제공받는 근로자의 비율은 50%를 가정한 경우(시나리오 1)와 100%를 가정한 경우(시나리오 2)로 구분하여 추계
 - 개정안의 내용은 백신휴가의 제공이 사업주의 의무 규정은 아니며, 정부는 보도자료에서 병가제도가 있는 경우에는 병가를 활용하도록 권고·지도할 계획으로 밝히고 있어 현 시점에서 별도의 백신휴가 제공 비율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움⁶⁾
- 유급휴가 비용에 대한 지원단가는 현행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유급 휴가비용 지원 사업’의 1인당 평균 일급 지급액을 적용하되, 정부 지원율은 50%를 가정한 경우(시나리오 1)와 100%를 가정한 경우(시나리오 2)로 구분

4) 전국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한 조사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다고 답변한 사람 중 예방접종을 받을 의향이 있다고 답변한 사람의 비율(「코로나19 관련 인식조사」,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2021.3월.)

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입원·격리자 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 안내 24판(중앙방역대책본부, 2021년 3월)

6) 정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기업 등 민간 부문에 대해서 백신 휴가는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거나, 병가 제도가 있는 경우에는 병가를 활용하도록 권고·지도할 계획으로 밝히고 있음(「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2021.3.28.」)

-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현행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코로나19 입원·격리자에 대해 유급휴가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1인당 일별 평균 지급액은 10만 4,165원이었음
- － 39,363건에 대해 445억 8,300만원을 지원함(2021년 2월 기준)
- 참고로 현행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지원 금액 기준은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 1일 상한액 13만원⁷⁾으로 정하고 있음

마. 비용추계 상세 내역

1) 추계의 대상 및 방법

- 추계대상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는 경우 유급휴가를 제공하고 정부가 그 비용을 지원할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임

〈비용추계 산식〉

$$\text{추가재정소요}_t = \text{지원대상 근로자 수}_t^{1)} \times \text{지원 단가}_t^{2)} \times \text{정부 지원율}^{3)} \times \text{지급 기간}^{4)}$$

이때, t 는 추계연도(2021년)

$$1) \text{ 지원대상 근로자 수} = (\text{전체 임금근로자 수} - \text{지원제외 대상 근로자 수}^a) \times \text{백신 접종률}^b \times \text{별도의 유급휴가 제공 비율}^c$$

$$a) \text{ 지원제외 대상 근로자 수} = \text{공무원 수} + \text{공공기관 근로자 수} + \text{유치원·어린이집 교직원 수}$$

$$b) \text{ 백신 접종률은 백신 접종 의향률 조사결과인 68\% 적용}$$

$$c) \text{ 백신을 접종한 근로자에게 별도의 유급휴가를 제공하는 비율은 50\%를 가정한 경우(시나리오 1)과 100\%를 가정한 경우(시나리오 2)로 구분}$$

7) 「신종감염병중후군 및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발생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금액」(질병관리청 고시 제2020-16호, 2020.09.14.)

- 2) 백신휴가비 지원단가는 현행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의 1인당 일별 평균 지급액 10만 4,165원에 2021년 임금상승률 전망치 적용
- 3) 유급휴가 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율은 50%를 가정한 경우(시나리오 1)와 100%를 가정한 경우(시나리오 2)로 구분하여 추계
- 4) 지급 기간은 1인당 2일 가정

- 추계방법은 지원 대상 근로자 수에 일당 지급액(지원 단가), 정부 지원율, 지급기간(2일)을 곱하여 추계

2) 백신접종 시 유급휴가비 지원(안 제41조의2제1항)

- 추계방법은 지원대상 근로자 수에 지원 단가, 정부 지원율, 지급 기간을 곱하여 추계
- 개정안에 따른 백신휴가비 지원 대상자는 전체에서 밝힌 것처럼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임금 근로자 중 백신휴가 제공 비율을 50%로 가정한 경우(시나리오 1)와 100%로 가정한 경우(시나리오 2)로 구분
 - － 또한, 현행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입원·격리자 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의 지원제외 대상을 제외
 - － 전체 임금근로자에서 공무원, 공공기관 근로자,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직원 등을 제외한 근로자를 지원 대상으로 가정
- 백신 접종 의향률 조사결과(보건복지부 / 문화체육관광부, 2021.3월)인 68% 적용

〈백신희가비 지원 대상자 수 추정: 2021년〉

(단위: 천명)

구 분		근로자 수	비고
전체 임금 근로자 수(A)		20,446	15세 이상 임금 근로자 수(2020년 8월)
지원제외 대상 근로자 수 (F=B+C+D+E) ¹⁾	공무원 수(B)	1,114	전체공무원 현원 (2019년 말)
	공공기관 근로자 수(C)	398	총임직원 현원 (2020.4분기)
	유치원 교직원 수(D)	38	사립유치원 교직원 수(2020년)
	어린이집 교직원 수(E)	331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현황(2019년)
	소계(F)	1,882	
백신 접종 임금근로자 수 (G=F×백신접종률 68%)		12,624	
지원 대상자 수	시나리오 1 (백신희가 제공률: 50%)	6,312	
	시나리오 2 (백신희가 제공률: 100%)	12,624	

주: 1) 본 추계에서 지원제외 대상으로 가정한 공무원, 공공기관, 유치원, 어린이집 근로자 이외에 정부, 지자체가 인건비 등 운영비 전체를 예산으로 지원받는 기관의 종사자도 지원제외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 해당 근로자의 수를 추정하기 어려워 본 추계에서는 고려하지 않음. 따라서 지원제외 대상이 추가될 경우 전체 임금 근로자 중 지원 대상자 수는 감소할 수 있음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통계청, 2020.10.27.), 2020인사혁신통계연보(인사혁신처, 2020.6), 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 교육기본통계(한국교육개발원), 어린이집 및 이용자통계(보건복지부)

- 현행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유급휴가비용 지원 사업’의 1인당 평균 일급 지급액에 2021년 명목 임금상승률 전망치(국회예산정책처 내부 자료) 적용

〈법 제41조의2제3항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지원 현황〉

(단위: 건, 백만원, 원)

구 분	건 수	지급액	1인당 일별 평균지급액
2020년(2~12월)	24,503	27,504	102,652
2021년(1~2월)	14,860	17,079	107,675
합계	39,363	44,583	104,165

자료: 질병관리청

- 유급휴가 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율은 50%를 가정한 경우(시나리오 1)와 100%를 가정한 경우(시나리오 2)로 구분하여 추계
- 개정안에 따라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임금 근로자에 대해 2일간의 백신휴가를 부여하고 그 비용을 지원할 경우 예상되는 추가재정소요는 백신휴가 제공률과 국가 지원율을 각각 50%로 가정할 경우 6,732억원(시나리오 1), 100%를 가정할 경우 2조 6,930억원(시나리오 2)으로 추계됨
 - 본 추계 결과는 임금근로자 중 공무원 등 일부를 지원제외 대상으로 가정하고, 백신휴가 제공률과 정부 지원율을 각각 50%, 100%로 가정하여 추계한 결과로 지원 대상, 지원 기준 등에 따라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백신희가비 지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정: 2021년〉

(단위: 천명, 원, 일, %, 억원)

구 분	건 수	추계값
지원 대상자 수(A) ¹⁾	시나리오1(백신희가 제공률: 50%)	6,312
	시나리오2(백신희가 제공률: 100%)	12,624
지원 단가(B) ²⁾		106,665
지원 기간(C)		2
정부 지원율(D)		50
추가재정소요 (E=A×B×C×D)	시나리오1(정부 지원율: 50%)	6,732
	시나리오2(정부 지원율: 100%)	26,930

주: 1) 개정안에 따른 지원대상 근로자 수는 전체 근로자 수에서 공무원 등 지원제외 대상 근로자 수를 차감한 후 백신접종률을 적용하여 추정

2) 지원단가는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유급휴가비용 지원 사업’의 1인당 평균 일급 지급액에 2021년 명목 임금상승률 전망치(국회예산정책처) 적용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3. 장애아동의 연령 상향: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09.22. 발의)

가. 주요내용

- 장애아동의 연령 기준을 현행 “18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상향

나. 비용추계 결과

- 장애아동의 연령 기준을 현행 “18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상향하는 경우 2022년 20억 2,400만원, 2026년 21억 3,300만원 등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총 103억 8,400만원(연평균 20억 7,700만원)의 추가 재정소요 예상

〈개정안에 따른 비용추계 결과〉

(단위: 백만원)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합계	연평균
발달재활서비스	771	780	790	802	813	3,956	791
언어발달지원	67	68	69	70	71	346	69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1,185	1,199	1,215	1,232	1,249	6,081	1,216
합계	2,024	2,048	2,075	2,104	2,133	10,384	2,077

다. 재정수반요인

□ 장애아동의 정의 변경

- “장애아동”이란 19세 미만의 사람 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¹⁾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함

〈현행 및 개정안에 따른 장애아동의 정의〉

	현 행	개정안
장애아동의 정의	18세 미만인 등록장애인	19세 미만인 등록장애인

라. 비용추계의 전제

- 본 추계에서는 “장애아동 가족지원(발달재활서비스·장애아가족양육지원)” 사업의 추가 지원금을 추계의 대상으로 함
- 개정안에 따라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아동의 연령이 현행 “18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상향될 경우, 개정안은 법 제21조²⁾ 제23조³⁾ 제24조⁴⁾에 따른 「장애아동 가족지원」 사업에 영향(지원대상 확대)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 ①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 2)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발달재활서비스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하여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 3)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3조(가족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가족이 장애아동에게 적합한 양육방법을 습득하고 가족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가족상담·교육 등의 가족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 4)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4조(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법 제22조5)에 따른 보육지원은 현행 지원대상이 12세 이하 장애아동으로 장애아동 연령 상한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에 따라 지원대상이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됨

〈장애아동 지원대상의 확대〉

	현 행	비용추계의 전제
장애아동 가족지원 사업 (법 제21조·제23조·제24조)	장애아동 전체 (18세 미만)	장애아동 전체 (19세 미만)
장애아 보육료(법 제22조)	12세 이하	12세 이하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장애아동 가족지원」 사업의 내역사업 중 “장애아가족양육지원”에 관한 연령별 통계가 파악되고 있지 않아 해당 사업의 지원대상자 수가 연령별로 동일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가정
- 개정안 부칙에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것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으로 함

마. 비용추계 상세 내역

1) 추계의 대상 및 방법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보건복지부 「장애아동 가족지원」 사업 (2020년도 예산 1,106억 6,800만원)의 장애아동 지원대상이 확대될 경우

5)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2조(보육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보육법」 제27조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대상이 되는 장애아동에 대하여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보육료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추가로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내역사업별 “추가 지원대상자 수”에 “1인당 지원금”을 곱하여 산출

- “추가 지원대상자 수”는 현행 내역사업의 지원대상자 현황을 바탕으로 추정
 - (발달재활서비스) 현행 사업의 “14~17세 평균 지원대상자 수”에서 “18세 지원대상자 수”를 차감하여 추정
 - (언어발달지원·장애아가족 양육지원) 현행 사업의 연령 1세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 수로, 전체 지원대상자 수를 지원대상 연령 수로 나누어 산출⁶⁾
- “1인당 지원금”은 현행 사업의 2020년도 예산 기준 1인당 평균 지원금에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산출

〈비용추계 산식〉

연간 추가재정소요_t = 장애아동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_t

$$= \sum_{i=1}^3 (\text{추가 지원대상자 수}_{i,t}^{1)}) \times 1\text{인당 지원금}_{i,t}^{2)}$$

이 때, t 는 추계연도(2022~2026년),

i 는 3개 지원사업(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 장애아가족양육지원)

1) 추가 지원대상자 수 _{i,t} 는 현행 사업의 지원대상자 현황을 바탕으로 추정

2) 1인당 지원금 _{i,t} = 1인당 지원금 _{$i,t-1$} × (1 + α^a)

a) α 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물가상승률 전망치

이 때, 1인당 지원금 _{$t=2020$} 은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 216만원, 장애아가족양육 지원 521만원

6) 언어발달지원과 장애아가족양육지원에 관한 연령별 통계가 확보되지 않아, 현행 사업의 지원대상자 수가 연령별로 동일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

2) 장애아동의 정의 변경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장애아동 지원의 추가 지원대상자에게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원금
 - 개정안은 “장애아동”의 정의를 현행 “18세 미만인 등록장애인”에서 “19세 미만인 등록장애인”으로 변경하는 내용
 - 개정안에 따라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아동의 연령이 현행 “18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상향될 경우, 현행 보건복지부 소관 「장애아동 가족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발달재활서비스”, “장애아가족양육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가) 발달재활서비스

- 추계기간 동안 추가 지원대상자 수는 연간 349명으로 추정
 -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은 현행 장애아동 연령 기준(18세 미만)을 초과하더라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지원을 받고 있음⁷⁾
 - 14~17세는 연령별 2,700명 내외이나, 18세에 2,300명대로 감소하는 것은 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은 18세 장애아동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데 기인함

7)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발달재활서비스의 지원 기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의 필요성 및 효과, 장애아동 및 그 가족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지원 기준에 따라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대상 장애아동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하는 기간은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달의 다음 달부터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대상 장애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로 한다. 다만,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대상 장애아동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만 20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을 연장하여야 한다.

〈연령별 발달재활서비스 지원대상자 현황: 2020년 9월말 기준〉

(단위: 명)

구분	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지원대상자 수	2,647	2,632	2,721	2,693	2,324

주: 18세인 지원대상자는 현행 장애아동 연령 기준을 초과하였으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지원을 받고 있음

자료: 보건복지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개정안에 따른 추가 지원대상자는 “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은 18세 장애 아동”으로 추계기간 동안 연간 349명으로 추정
- 14~17세의 연령별 지원대상자 수가 증가 또는 감소 추세를 보이지 않으므로, “4개 연령 평균 지원대상자 수(2,673명)”에서 “18세 지원대상자 수(2,324명)”를 차감하여 추가 지원대상자 수를 추정

〈발달재활서비스 추가 지원대상자 수(추정치): 2022~2026년〉

(단위: 명)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추가 지원대상자 수	349	349	349	349	34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추계기간 동안 1인당 지원금은 현행 사업의 2020년도 예산 기준 1인당 평균 지원금에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산출
- 현행 사업의 2020년도 예산 기준 1인당 평균 지원금은 216만원임

〈발달재활서비스 1인당 지원금(추정치): 2022~2026년〉

(단위: 천원)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1인당 발달재활서비스 지원금	2,208	2,234	2,263	2,295	2,327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언어발달지원

- (추가 지원대상자 수) 추계기간 동안 추가 지원대상자 수는 30.6명으로 추정
 - 최근 2년간 장애아동 언어발달지원 대상자 수가 550명(사업예산 기준)으로 변동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현행 사업의 연평균 1세당 지원대상자 수(30.6명)를 추계기간 동안 추가 지원대상자 수로 추정
 - 개정안은 장애아동의 연령을 1세 상향하므로, 연령 1세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 수를 추가 지원대상자 수로 추정
- (1인당 지원금) 추계기간 동안 1인당 지원금은 현행 사업의 2020년도 예산 기준 1인당 평균 지원금에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산출
 - 현행 사업의 2020년도 예산 기준 1인당 평균 지원금(216만원)은 발달재활서비스 1인당 지원금과 동일하므로, 추계기간 동안 1인당 지원금은 발달재활서비스 1인당 지원금과 동일하게 적용

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 추계기간 동안 추가 지원대상자 수는 222.5명으로 추정
 - 최근 2년간 장애아동 언어발달지원 대상자 수가 4,005명(사업예산 기준)으로 변동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현행 사업의 연평균 1세당 지원대상자 수(222.5명)를 추계기간 동안 추가 지원대상자 수로 추정
 - 개정안은 장애아동의 연령을 1세 상향하므로, 연령 1세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 수를 추가 지원대상자 수로 추정

- 추계기간 동안 1인당 지원금은 현행 사업의 2020년도 예산 기준 1인당 평균 지원금에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산출
 - 현행 사업의 2020년도 예산 기준 1인당 평균 지원금은 521만원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1인당 지원금(추정치): 2022~2026년〉

(단위: 천원)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1인당 양육지원금	5,327	5,391	5,461	5,537	5,61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산업 · 농업 · 국토 · 교통 분야

1. 도시철도 무임수송 등 공익서비스의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국가 또는 원인제공자가 부담: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06.03. 발의)

가. 주요내용

- 도시철도 무임수송 등 공익서비스의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국가 또는 원인제공자가 부담

나.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도시철도운영자¹⁾의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이하 “공익서비스비용”이라 한다)을 국가 또는 해당 도시철도 서비스를 직접 요구한 자(이하 “원인제공자”라 한다)가 부담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1년 7,767억 2,400만원, 2025년 1조 429억 9,800만원 등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향후 5년간 총 4조 5,229억 1,200만원(연평균 9,045억 8,200만원)으로 추계됨

1) 「도시철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7. (생략)

8. "도시철도운영자"란 도시철도운송사업을 하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제26조에 따라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서 도시철도에 관한 민간투자사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하 생략)

〈개정안에 따른 비용추계 결과〉

(단위: 백만원)

	2021	2022	2023	2024	2025	합계	연평균
공익서비스 비용	776,724	835,588	899,307	968,295	1,042,998	4522,912	904,58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재정수반요인

- 공익서비스 비용의 부담(안 제31조의2 신설)
 - 도시철도운영자의 공익서비스비용은 원인제공자가 부담(제1항)
 -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는 공익서비스비용의 범위(제2항)
 - － 도시철도운영자가 다른 법령에 따르거나 국가의 정책 또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도시철도의 운임을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액(제1호)
 - － 도시철도운영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수목적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제2호)
- 공익서비스 비용 산정·평가 전문기관 지정(안 제31조의3 신설)
 -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익서비스비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해당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음

라. 비용추계의 전제

-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는 공익서비스비용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수 목적사업’의 기준, 범위 등이 정해지지 않았고, 도시철도운영자가 ‘특수 목적사업’으로 간주할 수 있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지 않으므로, ‘특수 목적사업 수행비용’은 비용추계의 대상에서 제외
- 원인제공자는 당해 도시철도 서비스를 직접 요구한 자로, 관련 법령에 따르면 원인제공자에 공공기관 및 공사, 공단도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²⁾³⁾⁴⁾ 본 추계에서는 국가가 공익서비스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가정
- 추계 기간 동안 도시철도 요금은 동일한 것으로 가정
- 향후 발생할 도시철도 요금의 감면액은 최근 감면대상별 감면액의 증감율을 반영하여 추산

- 2) 「장애인복지법」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은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그 밖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운영하는 운송사업자는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과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자의 운임 등을 감면하는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6조(수송시설의 이용지원)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輸送施設)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1.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 활동이 어려운 경우 이들을 직접 보호하여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자
-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수송시설의 이용대상 등) ② 제1항에 따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제3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수송시설의 종류와 그 밖에 수송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해당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 기타 감면액(대전도시철도공사가 12세 미만 3자녀 이상 가구 부모에게 제공하는 무임승차 혜택)은 최근 3년간(2016 ~ 2018년) 감면액 변동이 미미하다는 점을 고려 2018년 감면액을 추계기간 동안 동일하게 적용
- 국토교통부장관이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공익서비스 비용 산정 및 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한국철도공사의 사례⁵⁾⁶⁾를 참고하여 비용추계의 대상에서 제외
- 국토교통부는 한국철도공사로 하여금 공익서비스비용의 보조를 위한 정산서 제출 시 회계법인 또는 교통관련 연구기관의 의견서를 함께 제출⁷⁾하도록 하고 있음
-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으로 함

-
- 5)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3조(공익서비스 제공에 따른 보상계약의 체결)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익서비스비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그 기관으로 하여금 공익서비스비용의 산정 및 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 6)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규칙」 제7조(전문기관의 지정) ①법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자격이 있는 회계법인
 2.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중 교통관련 연구기관
- 7) 국토교통부·한국철도공사의「2019년 공익서비스 보상계약서」 제10조 ④ “을”은 정산서를 제출할 때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기관의 의견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 자격이 있는 회계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회계법인
 - 가. 최근 3년간 “을”의 회계 관련 용역이나 결산 또는 감사를 맡지 아니한 회계법인
 - 나. 2015년도 매출액 100억 원 이상인 회계법인
 - 다. 공인회계사 20명 이상을 보유한 회계법인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교통관련 연구기관

〈도시철도운영자의 이용요금 감면액: 2014 ~ 2018년〉

(단위: 백만원, %)

	2014	2015	2016	2017	2018	합 계	연평균 증가율
노인	367,638	407,307	449,501	489,949	510,596	1,690,711	8.56
장애인	97,406	100,871	105,710	108,386	107,381	463,855	2.47
국가유공자	6,867	6,946	7,268	7,275	7,256	32,110	1.39
기타	248	335	375	399	399	1,319	12.62
합 계	472,149	515,459	562,854	606,010	625,632	2,187,995	7.29

주: 1. 도시철도운영자는 서울메트로,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부산교통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인천교통공사,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공사, 대전광역시 도시철도공사, 서울시메트로 9호선(주), 서울시메트로 9호선운영(주), 부산-김해 경전철(주), 의정부 경전철(주), 용인 경량전철(주)

2. '기타'는 대전광역시 정책의 일환으로, 대전도시철도공사가 12세 미만 3자녀 이상 가구 부모에 무임승차 혜택을 주어 발생한 감면액임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

□ 공익서비스비용 부담액

- 추계기간동안 예상되는 이용요금 감면액은 전년도 이용요금 감면액에 연평균 증가율을 적용하여 산출
- 감면대상에 따라 연평균 증가율이 1.39%에서 최대 8.56%까지 편차가 큰점을 고려, 감면대상별 이용요금 감면액을 각각 산출하여 이를 합산함
 - 기타 감면액의 경우 최근 3년간(2016 ~ 2018년) 감면액이 유사하다는 점을 고려 2018년 감면액을 추계기간 동안 동일하게 적용

〈도시철도운영자의 이용요금 감면액 추계: 2021 ~ 2025년〉

(단위: 백만원)

	2021	2022	2023	2024	2025	합 계	연평균
노인	653,236	709,144	769,837	835,724	907,250	3,875,191	775,038
장애인	115,527	118,378	121,298	124,291	127,358	606,852	121,370
국가유공자	7,562	7,667	7,773	7,881	7,991	38,874	7,775
기타	399	399	399	399	399	1,995	399
합 계	776,724	835,588	899,307	968,295	1,042,998	4,522,912	904,58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 수소전기자동차 연료보조금 지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021.03.24. 통과)

가. 주요내용

- 수소전기자동차 연료보조금 지급

나. 비용추계 결과

- 화물차에 대해 수소 연료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2023년 4억 8,900만원, 2025년 24억 3,900만원 등 향후 5년 동안 총 41억 4,700만원(연평균 8억 2,900만원)으로 추계됨

〈개정안에 따른 비용추계 결과〉

(단위: 백만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합계	연평균
수소연료보조금 지급 (안 제43조제3항)	—	—	489	1,220	2,439	4,147	829

다. 재정수반요인

- 수소전기자동차 수소 연료보조금 지급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 운행 시 수소연료보조금 지급

라. 비용추계의 전제

- 보조금지급 대상 대수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19.1, 관계부처 합동)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수소차 보급목표를 기준으로 함
 - 동 계획에서는 화물차는 2023년부터 본격 도입을 시행하여 2030년 1만대, 2040년 3만대까지 보급할 계획임
- 보조금 단가는 국토교통부의 연구용역⁸⁾에서 도출한 단가 1,002원/kg을 적용함⁹⁾
 - 이는 버스 보조금을 기준으로 추정한 단가이므로, 추후 시범운행, 기술 개발 등을 거쳐 단가를 산정할 계획으로 향후 실제 적용되는 보조금 단가는 상이할 수 있음
- 개정안 부칙에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것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으로 함

마. 비용추계 상세 내역

1) 추계의 대상 및 방법

- 수소화물자동차 보조금 지급대상 수에 보조금 지급액을 곱하여 산정

8) 한국교통연구원. 2019.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 및 수소버스 등 사업용 친환경차 확대를 위한 연료 보조금 체계 개편 연구」.

9) 국토교통부는 수소연료보조금 도입 등 연료보조금 체계개편을 위한 연구용역 시행(한국교통연구원, 2019.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 및 수소버스 등 사업용 친환경차 확대를 위한 연료보조금 체계 개편 연구」)

〈비용추계 산식〉

$$\text{추가재정소요}_t = \sum_{t=2021}^{2025} (\text{보조금 지급 대수}_t^{1)}) \times \text{대당 보조금 지급액}_t^{2)})$$

이때, 추계기간 2021년~2025년

- 1) 보조금 지급 대수_t = 국토교통부의 연도별 보급 계획에 따름
 - 2023년 200대, 2024년 500대, 2025년 1,000대
- 2) 대당 보조금 지급액_t = kg당 보조금 단가_t(a) × 1대당 연평균 소요 연료_t(b)
 - a) kg당 보조금 단가_t = 1,002원
 - 2025년까지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가정함
 - b) 1대당 연평균 소요 연료_t = 연평균 주행거리_t ÷ 연비_t
 - 1년 평균 주행거리는 84,228km로 적용
 - 수소연료의 연비는 34.6km/kg로 적용

2) 수소 연료보조금 지급(안 제43조제3항)

- 추계기간 동안 수소 연료보조금 지급 대상 차량 수는 국토교통부의 연도별 보급 계획에 따름

〈수소차 보급계획〉

(단위: 대)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수소화물차 수	—	—	200	500	1,000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

□ 1대당 연간 보조금 지급액은 kg당 보조금 단가에 1대당 연평균 소요 연료량을 곱하여 산출함

- 첫째, kg당 보조금 단가는 1,002원/kg을 적용함
 - 기존 경유를 사용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주행거리당 연료가격 차이를 보조하는 방식으로 산출하되, 버스의 ‘주행거리당 연료가격 차이 보조비용’과 ‘실증 사례를 통해 산출한 보조비용’의 비율을 적용하여 보정함¹⁰⁾
- 둘째, 1대당 연평균 소요 연료량은 연평균 주행거리를 수소차 연비로 나누어 산출함
 - 화물차의 연평균 주행거리는 84,228km, 수소화물차의 연비는 34.6km/kg, 연평균 소요연료량은 2,434.3kg으로 추정
- 따라서 1대당 연평균 보조금 지급액을 산출하면, 2.44만원으로 추정되며, 보조금 지급 수준은 추계기간 동안 동일한 것으로 가정함

〈1대당 연평균 수소 연료보조금 지급액〉

	kg당 보조금 단가(원) (a)	연평균 소요 연료량(kg) (b=c/d)	연평균 주행거리(km) (c)	연비(km/kg) (d)	대당 연평균 보조금 지급액(백만원) (a×b)
수소화물차	1,002	2,434.3	84,228	34.6	2.44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

10) 버스의 경우, 연구용역 결과를 종합하여 산출한 ‘주행거리당 연료가격 차이 보조비용 = 2,936원/kg’과 ‘실증 사례를 통해 산출한 보조비용 = 3,500원/kg’이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 화물차의 경우에도 실증 연구를 통해 실제 운행비용을 비교할 필요가 있음. 현재는 실증연구가 없는 상황으로, 버스 보조비용 산출방식에 따른 금액 차이를 적용하여 화물차의 보조금 단가를 보정함
 - (버스 연구) 2,936원 : (버스 실증) 3,500원 = (화물차 연구) 840원 : (화물차 실증 추정) 1,002원

3. 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에 대한 출연금 지급: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2020.11.23. 발의)

가. 주요내용

- 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에 대한 출연금 지급

나.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업기술단지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을 지급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1년 169억 4,000만원, 2025년 188억 8,000만원 등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888억 7,800만원(연평균 177억 7,600만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됨

〈개정안에 따른 비용추계 결과〉

(단위: 백만원)

	2021	2022	2023	2024	2025	합계	연평균
산업기술단지 운영비에 대한 출연금 지급 (안 제17조제1항)	16,940	17,279	17,625	18,154	18,880	88,878	17,776

주: 국비와 지방비의 금액을 합한 금액임

다. 재정수반요인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등(안 제17조제1항)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의 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함
 - －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 비용을 출연·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정하고 있음

라. 비용추계의 전제

- 개정안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출연금을 지급하는 경우, 국비 및 지방비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2020년 기준 19개의 산업기술단지가 운영 중이며, 국가는 별도로 운영비에 대해 출연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비에 대한 출연금을 지급하고 있음
 - － 산업기술단지는 기관운영비의 대부분을 정부 및 지자체 수탁사업 인건비와 간접비를 활용하는 PBS(Project Based System)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 기준 11개 산업기술단지는 운영비 중 일부를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받고 있음
- 산업기술단지 현황은 현재와 같이 19개로 유지되며 신규 조성 단지는 없다고 가정하여 조성비에 대한 출연금은 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 산업기술단지 조성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현황은 [바. 참고자료 1]과 같음

- 최근 3년(2018~2020년) 산업기술단지의 운영비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자료를 바탕으로 평균 운영비 및 현행 출연금 규모를 추정함
 - 추계기간 동안 산업기술단지 운영비 규모가 최근 3년 평균과 유사하다고 가정하였으나, 세종 산업기술단지 등 신규 단지에서 사업이 확대되는 경우 운영비가 증가하여 추가재정소요가 확대될 수 있음
 - 현재 산업기술단지 운영비에 대해 출연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추계기간 동안에도 유사한 규모로 출연금을 지급한다고 가정하며, 해당 출연금은 개정안에 따른 전체 재정소요에서 제외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함
- 개정안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업기술단지의 운영비에 대해 출연하는 경우, 전체 운영비의 15%를 출연하는 것으로 가정함
 - 최근 3년 운영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지급액의 평균 비율은 14.9%로 나타났으며, 산업기술단지 조성계획(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르면 중앙정부가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운영에 대해 자금을 지원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총사업비의 15% 이상을 부담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어 최소 출연금 비율을 15%로 가정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분담비율은 현시점에서 알 수 없으므로, 국비 및 지방비를 모두 포함한 전체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함
-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¹⁾을 적용함
-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으로 함

1)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소비자물가상승률(CPI)	0.5%	1.0%	1.2%	1.2%	1.3%	1.4%

마. 비용추계 상세 내역

1) 추계의 대상 및 방법

- 추계의 대상은 개정안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업기술단지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출연금임
- 산업기술단지 운영비 및 현행 출연금 지급액은 최근 3년(2018~2020년) 평균치에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산출
- 산업기술단지 운영비에 출연금 비율(15%)를 적용하여 전체 출연금 소요액을 산출한 후, 현행 출연금 지급액을 제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산출

〈비용추계 산식〉

$$\text{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 \sum_t [(\text{산업기술단지 운영비}_t^{1)}) \times \text{출연금 비율}^{2)}) \\ - \text{현행 출연금 지급액}_t^{3)}]$$

이때, t 는 추계연도(2021~2025년)

- 1) 산업기술단지 운영비 $_t$ = 산업기술단지 운영비 3년(2018~2020년) 평균 2,234억 8,600만원
 - 19개 산업기술단지 운영비의 합계로, 2018년, 2019년은 결산, 2020년은 예산 기준임
 - 세종 산업기술단지는 2019년 7월 개소하였으며, 2020년 예산을 평균금액으로 가정함
 - 2) 출연금 비율 = 15.0%
 - 최근 3년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이 지급된 경우에 한해 운영비 대비 출연금의 평균 비율을 산출하면 14.9%임
 - 산업기술단지 조성계획(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르면 중앙정부가 자금 지원시 지방자치단체의 최소 출연금 비율은 총사업비의 15%임
 - 3) 현행 출연금 지급액 $_t$ =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지급액 3년(2018~2020년) 평균 167억 5,000만원
 - 세종 산업기술단지는 2019년 7월 개소하였으며, 2020년 예산을 평균금액으로 가정함
- ※ 운영비 및 출연금은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2020.11.)

2)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등(안 제17조제1항)

- 2020년 기준 산업기술단지 운영비 평균액은 2,234억 8,600만원이며,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은 167억 5,000만원임
- 최근 3년 산업기술단지 운영비 및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현황의 상세 내역은 [마. 참고자료 2]를 참조

〈산업기술단지 운영비 및 출연금 현황: 2018~2020년〉

(단위: 백만원)

구 분	평균운영비	평균출연금	구 분	평균운영비	평균출연금
서울TP	5,599	—	충북TP	18,941	—
부산TP	15,688	1,754	충남TP	10,690	142
대구TP	17,567	—	전북TP	9,706	—
인천TP	20,911	3,833	전남TP	12,724	1,122
광주TP	10,821	—	경북TP	14,223	687
대전TP	13,401	4,611	경남TP	13,123	—
울산TP	17,311	—	제주TP	10,133	1,964
세종TP ¹⁾	5,372	1,020	경기대진TP	3,882	400
경기TP	8,967	1,084	포항TP	7,487	133
강원TP	6,940	—	합 계	223,486	16,750

주: 1) 세종TP는 2019년 7월 개소하여, 2020년 예산을 평균액으로 가정하였으나, 추후 사업규모 확대 등에 따라 운영비가 증가할 여지가 있음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

- 전체 산업기술단지 운영비에 출연금 비율(15%)을 적용하여 산출한 후, 현행 평균 출연금 지급액을 차감하여 연간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함

〈개정안에 따른 출연금 증액시 추가재정소요 산출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합계
전체 산업기술단지 운영비(A)	225,721	230,235	234,840	241,885	251,561	1,184,242
개정안에 따른 운영비 지원을 위한 출연금(B=A×15%)	33,858	34,535	35,226	36,283	37,734	177,636
현행 지방자치단체 출연금(C)	16,918	17,256	17,601	18,129	18,854	88,758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B-C)	16,940	17,279	17,625	18,154	18,880	88,878

주: 국비와 지방비의 금액을 합한 금액임

바. 참고자료

1) 산업기술단지 조성 관련 출연금 내역

(단위: 백만원)

	조성출연금			
	국비	지방비	민간부담금	합 계
서울TP	0	60,000	62,000	122,000
부산TP	13,400	43,400	5,900	62,700
대구TP	25,127	17,000	26,000	68,127
인천TP	24,557	60,400	8,500	93,457
광주TP	24,757	18,600	5,400	48,757
대전TP	0	21,300	1,600	22,900
울산TP	13,257	26,400	4,600	44,257
경기TP	24,447	63,500	800	88,747
강원TP	13,220	30,290	3,420	46,930
충북TP	13,620	22,711	6,955	43,286
충남TP	25,357	23,900	4,150	53,407
전북TP	12,872	26,500	2,073	41,445
전남TP	13,220	18,600	15,100	46,920

	조성출연금			
	국비	지방비	민간부담금	합 계
경북TP	25,557	18,200	43,200	86,957
경남TP	13,330	39,000	4,400	56,730
제주TP	0	48,800	4,900	53,700
경기대진TP	0	9,000	31,470	40,470
포항TP	13,482	4,000	15,400	32,882
합 계	256,203	551,601	245,868	1,053,672
평균	14,234	30,645	13,659	58,537

주: 1단계 조성사업 협약금액 기준이며, 세종테크노파크는 조성 중(2019년 1월~2023년 12월)으로 국비 132억원이 투입될 계획임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 최근 3년(2018~2020년) 산업기술단지 운영비 및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8(결산)			2019(결산)			2020(예산)		
	운영비 (A)	지자체 출연금(B)	비 중 (B/A)	운영비 (A)	지자체 출연금(B)	비 중 (B/A)	운영비 (A)	지자체 출연금(B)	비 중 (B/A)
서울TP	5,107	—	—	5,963	—	—	5,728	—	—
부산TP	13,142	1,461	11.1	14,732	1,600	10.9	19,189	2,200	11.5
대구TP	15,320	—	—	17,558	—	—	19,824	—	—
인천TP	23,526	3,400	14.5	16,343	4,500	27.5	22,863	3,600	15.7
광주TP	9,045	—	—	9,718	—	—	13,701	—	—
대전TP	11,461	4,500	39.3	13,233	4,800	36.3	15,509	4,532	29.2
울산TP	15,315	—	—	16,098	—	—	20,519	—	—
세종TP	—	—	—	1,012	250	24.7	5,372	1,020	19.0
경기TP	8,277	1,100	13.3	8,718	1,076	12.3	9,905	1,076	10.9
강원TP	5,644	—	—	6,608	—	—	8,567	—	—
충북TP	17,929	—	—	18,277	—	—	20,616	—	—
충남TP	8,805	—	—	9,357	61	0.7	13,908	366	2.6

III 교육 · 과학 · 문화 · 여성가족 분야

1. 특수학교 특수교육교원 배치기준 상향 및 지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2021.02.19. 발의)」

가. 주요내용

- 특수학교 특수교육교원 배치기준 상향 및 지원

나. 비용추계 결과

- 특수학교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을 상향하는 경우 연평균 720~3,144 억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 인건비, 기본경비 및 자산취득비 외에 교실증축비 등이 소요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증가할 수 있음
 - 저출산 추세로 인해 추계기간의 실제 특수교육대상자 증가율이 최근 11년간 연평균 증가율보다 낮은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감소할 수 있음
 - 사립 특수학교 실제 지원범위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감소할 수 있음

〈개정안에 따른 비용추계 결과〉

(단위: 백만원)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합계	연평균
1안	286,238	279,279	306,511	335,734	364,408	1,572,170	314,434
2안	51,797	57,866	69,879	83,221	96,998	359,761	71,952

주: (1안) 모든 특수학교에 대해 학생 2명 당 교원 1명을 배치

(2안) 모든 특수학교에 대해 학생 3명 당 교원 1명을 배치

다. 재정수반요인

- 특수학교 특수교육교원 배치기준 상향 및 지원(안 제5조 및 제27조)
 - 특수학교는 학생 2명마다 특수교육교원을 1명 배치하고, 부득이한 경우 학생 3명 당 1명을 배치하도록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배치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지원을 하여야 함

라. 비용추계의 전제

- (배치기준) 개정안은 부득이하게 학생 3명 당 교원 1명을 배치하는 경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데, 모든 특수학교에 대해 학생 2명 당 교원 1명을 배치하는 경우(1안) 및 모든 특수학교에 대해 학생 3명 당 교원 1명을 배치하는 경우(2안)를 각각 추계
- (지원항목 및 설립유형별 구분) 특수교육교원 배치기준을 개정하여 이를 증원하는 경우 교원인건비, 기본경비 및 자산취득비 소요가 증가하는데, 그 외 비용항목은 추계의 대상에서 제외
 - 특수교육교원을 늘릴 때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교실 증설 가능여부 및 기존 교실 활용가능성은 불분명하므로 교실 증축비 등은 추계의 대상에서 제외
 - 사립 특수학교의 경우 국·공립 특수학교와 동일한 배치기준을 적용하고, 동일한 비용을 지원받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
 - 사립 특수학교의 경우 안 제5조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지원 항목 및 범위가 명확하지 않음
 - 참고로 사립 특수학교는 특수교육대상자가 졸업하는 경우 특수교육교원

배치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국·공립 특수학교와 동일한 수준으로 배치기준을 상향하기 곤란할 수 있음

- (학생수) 추계기간동안 특수교육대상자 증가추세가 유지되고, 특수교육대상자 중 국·공·사립 특수학교 재학생의 최근 3년간 평균비율이 추계기간 중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저출산 및 학령인구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장애의 조기발견 및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신청의 활성화로 특수교육대상자 수는 2009~2011년간 연평균 2.2% 증가함¹⁾
 - 최근 11년(2009~2020년)간 특수교육대상자는 연평균 2.2% 증가함
 - 최근 3년(2018~2020년)간 특수교육대상자 중 국립 특수학교 학생 수 비율은 0.93%, 공립학교 비율은 15.58%, 사립학교 비율은 11.55%로 해당 비율이 추계기간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채용방식) 설립유형별 법정정원 교원 수에서 既채용 교원 수를 차감한 인원을 신규채용하는 것으로 가정²⁾
 - 신규교원은 모두 9호봉 정규교원인 것으로 가정
 - 既채용 교원 수는 2020년 기준 학교유형별 교사 수에 전년도 신규채용교원 수를 누적한 값

1) 특수교육대상자 및 학령인구(만 6~21세) 수 현황(자료: 교육부 및 통계청)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연평균 증감율
특수교육 대상자(명)	75,187	79,711	82,665	85,017	86,633	87,278	88,067	87,950	89,353	90,780	92,958	95,420	2.2%
학령인구(천명)	10,083	9,950	9,785	9,590	9,397	9,181	8,920	8,670	8,461	8,242	8,047	7,821	-2.3%

※ 2016년 특수교육대상자 감소는 통계방식 변화에 따른 오류일 수 있음

2) 「고등교육법」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① ~ ⑦ (생 략)

⑧ 각 학교는 등록금의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⑩ (생 략)

- 개정안에 따른 채용 외에 별도 채용, 퇴직은 고려하지 않음
- (추계기간) 안 부칙은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으로 가정

마. 비용추계 상세 내역

1) 추계의 대상 및 방법

- 개정안에 따라 설립유형별 특수학교 특수교육교원의 정원을 충족하기 위해 추계기간동안 신규교원을 채용
 - 배치기준을 모든 특수학교에 학생 2명 당 교원 1명을 배치하는 경우(1안) 및 모든 특수학교에 학생 3명 당 교원 1명을 배치하는 경우(2안)로 나누어 각각 추계
 - 특수교육대상자 수는 매년 2.2%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하고, 이 중 국·공·사립 특수학교 학생 수는 최근 3년간 비율을 적용
 - － 국립 특수학교 학생 수 비율은 0.93%, 공립학교 비율은 15.58%, 사립학교 비율은 11.55%
 - 기본경비는 현행 인건비 대비 기본경비 비율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자산취득비는 신규 임용되는 해에 1회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

〈비용추계 산식〉

$$\text{추가재정소요}_t = \left\{ \sum_{\tau=2022}^t \sum_{i=1}^3 \text{설립유형}(i) \text{별 신규채용인원}_{i,\tau}^1 \times (\text{인건비}_{t,\tau}^2 + \text{기본경비}_{t,\tau}^3) \right\} + \text{신규채용인원}_t^1 \times \text{자산취득비}_t^4$$

이 때, t 는 추계년도(2022~2026년), τ 는 채용연도(2022~ t 년),
 i 는 설립유형(국립=1, 공립=2, 사립=3)

1. 신규채용인원 $_{i,t} = \text{법정정원}_{i,t}^{1)} - \text{기채용교원}_{i,t}^{2)}$

1) 법정정원 $_{i,t} = \text{학생 수}_{i,t} \times (1/2) \quad (1\text{안})$
 또는 학생 수 $_{i,t} \times (1/3) \quad (2\text{안})$

* 학생 수 $_{i,t} = \text{특수교육대상자수}_t \times \text{설립유형}(i) \text{별 학생비율}$

** 특수교육대상자수 $_t = \text{특수교육대상자수}_{t-1} \times (1 + 2.2\%)$,
 특수교육대상자수 $_{2020} = 95,420$ 명

*** 설립유형(i)별 학생비율: 국립 0.93%, 공립 15.58%, 사립 11.55%, [표 2] 참조

2) 기채용교원 $_{i,t}^{2)} = 2020\text{년 설립유형}(i) \text{별 교원 수} + \text{누적 신규채용인원}_{i,t}$

* 2020년 설립유형(i)별 교원 수: [표 2] 참조

** 누적 신규채용인원 $_{i,t} = \sum_{\tau=2022}^{t-1} \text{신규채용인원}_{i,\tau}$, 신규채용인원 $_{i,2021}=0$, 누적
 신규채용인원 $_{i,2022}=0$

2. 인건비 $_{t,\tau} = \text{봉급 및 수당}_{t,\tau}^{1)} \times (1 + \text{기관부담금 비율}_t^{2)})$

1) 봉급 및 수당 $_{t,\tau}$: 신규채용시 모두 9호봉 정규교원이고, 호봉은 2022년 9호봉부터 매년 1호봉씩 상승하며, 봉급 및 수당은 최근 3년간 공무원보수인상을 평균값(1.83%)에 따라 인상되는 것으로 가정

2) 기관부담금 비율 $_t$: 국회 예산정책처의 기관부담금(공무원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비율 전망치

3. 기본경비 $_{t,\tau}$: 인건비 $_{t,\tau}$ 에 「2020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본예산 분석 결과」에 따른 인건비 대비 기본경비 비율(6.49%)을 곱하여 산출

4. 자산취득비 $_t$: 1인당 자산취득비는 예산정책처 전망치 적용, 채용년도에 신규 임용하면서 1회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

2) 설립유형별 특수교육교원 신규채용인원 전망

- 최근 11년간 특수교육대상자 증가추세 및 설립유형별 학생 수 비율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국·공·사립 특수학교 학생 수를 전망
 - 최근 11년(2009~2020년)간 특수교육대상자는 연평균 2.2% 증가
 - 국립 특수학교 학생 수 비율은 0.93%, 공립학교 비율은 15.58%, 사립학교 비율은 11.55%

〈최근 3년간 특수학교의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특수교사 배정 현황〉

(단위: 명, %)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평 균
학령인구수(A)		8,260,301	8,047,435	7,821,088	-
특수교육대상자 수(B)		90,780	92,958	95,420	-
특수학교 학생 수(C)	국립	857	877	862	-
	공립	14,091	14,455	14,940	-
	사립	10,971	10,752	10,497	-
특수교육대상자 수 대비 설립유형별 학생수 비율(D=B/C)	국립	0.94	0.94	0.90	0.93
	공립	15.52	15.55	15.66	15.58
	사립	12.09	11.57	11.00	11.55
특수학교 특수교육교원 배정인원(E)	국립	321	321	321	-
	공립	4,229	4,459	4,758	-
	사립	3,312	3,293	3,226	-

주: 배정인원(E)은 기간제교원 포함

자료: 교육부

- 추계기간동안 설립유형별 법정정원에서 기존에 채용된 특수교육교원 수를 차감하여 부족인원을 산출하고, 이를 매년 신규채용하는 것으로 추계
 - 별도의 퇴직·신규채용은 없는 것으로 가정

〈설립유형별 특수교육교원 법정정원 및 신규채용인원 전망: 2022~2026년〉

(단위: 명)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합 계
특수교육 대상자		99,645	101,828	104,058	106,337	108,666	-
학생수	국립	927	947	968	989	1,011	-
	공립	15,521	15,861	16,208	16,563	16,926	-
	사립	11,510	11,762	12,020	12,283	12,552	-
법정정원 (1안)	국립	464	474	485	495	506	-
	공립	7,761	7,931	8,105	8,282	8,464	-
	사립	5,755	5,881	6,010	6,142	6,276	-
법정정원 (2안)	국립	309	316	323	330	337	-
	공립	5,174	5,288	5,403	5,522	5,643	-
	사립	3,837	3,921	4,007	4,095	4,184	-
신규채용 (1안)	국립	143	10	11	10	11	185
	공립	3,003	170	174	177	182	3,706
	사립	2,529	126	129	132	134	3,050
신규채용 (2안)	국립	0	0	2	7	7	16
	공립	416	114	115	119	121	885
	사립	611	84	86	88	89	95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3) 신규채용인원에 따른 인건비, 기본경비 및 자산취득비

- (인건비) 인건비는 채용년도별 신규채용인원에 채용년도별 인건비단가를 곱한 값을 합산하여 추계
 - 1인당 인건비는 봉급과 수당, 기관부담금을 합하여 산출
 - 호봉은 2022년 9호봉부터 매년 1호봉씩 상승하고, 봉급 및 수당은 최근 3년간 공무원보수인상률 평균값에 따라 인상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산출
 - 기관부담금은 봉급 및 수당에 국회 예산정책처의 기관부담금(공무원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비율 전망치를 곱하여 산출

〈신규채용인원(1안)에 따른 설립유형별 인건비〉

(단위: 명, 백만원)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국립	신규채용인원	143	10	11	10	11
	2022년 채용자 인건비	5,960	6,236	6,521	6,824	7,080
	2023년 채용자 인건비	-	425	445	465	486
	2024년 채용자 인건비	-	-	476	499	522
	2025년 채용자 인건비	-	-	-	442	462
	2026년 채용자 인건비	-	-	-	-	496
	인건비 합 계	5,960	6,661	7,442	8,230	9,046
공립	신규채용인원	3,003	170	174	177	182
	2022년 채용자 인건비	125,150	130,964	136,940	143,298	148,681
	2023년 채용자 인건비	-	7,223	7,558	7,909	8,269
	2024년 채용자 인건비	-	-	7,537	7,893	8,252
	2025년 채용자 인건비	-	-	-	7,822	8,184
	2026년 채용자 인건비	-	-	-	-	8,199
	인건비 합 계	125,150	138,187	152,035	166,921	181,584
사립	신규채용인원	2,529	126	129	132	134
	2022년 채용자 인건비	105,396	110,292	115,325	120,679	125,213
	2023년 채용자 인건비	-	5,353	5,602	5,862	6,129
	2024년 채용자 인건비	-	-	5,588	5,851	6,117
	2025년 채용자 인건비	-	-	-	5,833	6,103
	2026년 채용자 인건비	-	-	-	-	6,036
	인건비 합 계	105,396	115,646	126,515	138,226	149,59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신규채용인원(2안)에 따른 설립유형별 인건비〉

(단위: 명, 백만원)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국립	신규채용인원	0	0	2	7	7
	2022년 채용자 인건비	0	0	0	0	0
	2023년 채용자 인건비	-	0	0	0	0
	2024년 채용자 인건비	-	-	87	91	95
	2025년 채용자 인건비	-	-	-	309	324
	2026년 채용자 인건비	-	-	-	-	315
	인건비 합 계	0	0	87	400	734
공립	신규채용인원	416	114	115	119	121
	2022년 채용자 인건비	17,337	18,142	18,970	19,851	20,596
	2023년 채용자 인건비	-	4,844	5,069	5,304	5,545
	2024년 채용자 인건비	-	-	4,981	5,216	5,454
	2025년 채용자 인건비	-	-	-	5,259	5,502
	2026년 채용자 인건비	-	-	-	-	5,451
	인건비 합 계	17,337	22,986	29,020	35,630	42,548
사립	신규채용인원	611	84	86	88	89
	2022년 채용자 인건비	25,463	26,646	27,862	29,156	30,251
	2023년 채용자 인건비	-	3,569	3,735	3,908	4,086
	2024년 채용자 인건비	-	-	3,725	3,901	4,078
	2025년 채용자 인건비	-	-	-	3,889	4,069
	2026년 채용자 인건비	-	-	-	-	4,009
	인건비 합 계	25,463	30,215	35,322	40,854	46,493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기본경비) 기본경비는 인건비 전망치에 대하여 「2020회계연도 교육비 특별회계세입·세출 본예산 분석 결과」에 따른 인건비 대비 기본경비 비율(6.49%)을 곱하여 산출

〈신규채용인원에 따른 기본경비〉

(단위: 백만원)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1안	국립	인건비(A)	5,960	6,661	7,442	8,230	9,046
		기본경비(B)	387	432	483	534	587
	공립	인건비(A)	125,150	138,187	152,035	166,921	181,584
		기본경비(B)	8,122	8,968	9,867	10,833	11,785
	사립	인건비(A)	105,396	115,646	126,515	138,226	149,599
		기본경비(B)	6,840	7,505	8,211	8,971	9,709
	합계	인건비(A)	236,505	260,494	285,992	313,377	340,228
		기본경비(B)	15,349	16,906	18,561	20,338	22,081
2안	국립	인건비(A)	0	0	87	400	734
		기본경비(B)	0	0	6	26	48
	공립	인건비(A)	17,337	22,986	29,020	35,630	42,548
		기본경비(B)	1,125	1,492	1,883	2,312	2,761
	사립	인건비(A)	25,463	30,215	35,322	40,854	46,493
		기본경비(B)	1,653	1,961	2,292	2,651	3,017
	합계	인건비(A)	42,800	53,201	64,429	76,883	89,775
		기본경비(B)	2,778	3,453	4,181	4,990	5,826

주: 기본경비(B) = 인건비(A) × 6.4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자산취득비) 매년 신규채용인원에 대해 자산취득비가 1회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신규채용인원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의 1인당 자산 취득비 전망치를 곱하여 산출

〈신규채용인원에 따른 자산취득비 추계: 2022~2026년〉

(단위: 백만원)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합 계	평 균
1안	국립	866	61	69	63	71	1,130	226
	공립	18,195	1,044	1,085	1,120	1,168	22,613	4,523
	사립	15,323	774	804	835	860	18,597	3,719
	합계	34,385	1,880	1,958	2,019	2,099	42,340	8,468
2안	국립	0	0	12	44	45	102	20
	공립	2,521	700	717	753	777	5,468	1,094
	사립	3,702	516	536	557	571	5,882	1,176
	합계	6,223	1,216	1,266	1,354	1,393	11,452	2,29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4) 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학생 2명 당 교원 1인을 배치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 (1안)는 2022년 2,862억 3,800만원, 2026년 3,644억 800만원 등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총 1조 5,721억 7,000만원(연평균 3,143억 3,400만원)으로 추계
- 개정안에 따라 학생 3명 당 교원 1인을 배치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 (2안)는 2022년 517억 9,700만원, 2026년 969억 9,800만원 등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총 3,597억 6,100만원(연평균 719억 5,200만원)으로 추계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2~2026년〉

(단위: 백만원)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합 계	평 균
1안	국립	인건비	5,960	6,661	7,442	8,230	9,046	37,339	7,468
		기본경비	387	432	483	534	587	2,423	485
		자산취득비	866	61	69	63	71	1,130	226
		합 계	7,212	7,155	7,994	8,827	9,704	40,892	8,178
	공립	인건비	125,150	138,187	152,035	166,921	181,584	763,877	152,775
		기본경비	8,122	8,968	9,867	10,833	11,785	49,576	9,915
		자산취득비	18,195	1,044	1,085	1,120	1,168	22,613	4,523
		합 계	151,467	148,199	162,987	178,875	194,537	836,065	167,213
	사립	인건비	105,396	115,646	126,515	138,226	149,599	635,381	127,076
		기본경비	6,840	7,505	8,211	8,971	9,709	41,236	8,247
		자산취득비	15,323	774	804	835	860	18,597	3,719
		합 계	127,559	123,925	135,529	148,032	160,168	695,213	139,043
	합계	인건비	236,505	260,494	285,992	313,377	340,228	1,436,596	287,319
		기본경비	15,349	16,906	18,561	20,338	22,081	93,235	18,647
		자산취득비	34,384	1,879	1,958	2,018	2,099	42,340	8,468
		합 계	286,238	279,279	306,511	335,734	364,408	1,572,170	314,434
2안	국립	인건비	0	0	87	400	734	1,221	244
		기본경비	0	0	6	26	48	79	16
		자산취득비	0	0	12	44	45	102	20
		합 계	0	0	104	470	826	1,401	280
	공립	인건비	17,337	22,986	29,020	35,630	42,548	147,520	29,504
		기본경비	1,125	1,492	1,883	2,312	2,761	9,574	1,915
		자산취득비	2,519	696	722	749	776	5,462	1,092
		합 계	20,981	25,174	31,625	38,691	46,085	162,556	32,511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합 계	평 균
사립	인건비		25,463	30,215	35,322	40,854	46,493	178,348	35,670
	기본경비		1,653	1,961	2,292	2,651	3,017	11,575	2,315
	자산취득비		3,700	516	535	555	575	5,881	1,176
	합 계		30,816	32,692	38,150	44,060	50,086	195,804	39,161
합계	인건비		42,800	53,201	64,429	76,883	89,775	327,089	65,418
	기본경비		2,778	3,453	4,181	4,990	5,826	21,228	4,246
	자산취득비		6,219	1,212	1,269	1,348	1,396	11,452	2,290
	합 계		51,797	57,866	69,879	83,221	96,998	359,761	71,952

- 주: 1. 인건비, 기본경비 및 자산취득비 외에 교실증축비 등이 소요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증가할 수 있음
 2. 저출산 추세로 인해 추계기간의 실제 특수교육대상자 증가율이 최근 11년간 연평균 증가율보다 낮은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감소할 수 있음
 3. 사립 특수학교 실제 지원범위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감소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 주기적 안전성평가 실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09.14. 발의)

가. 주요내용

-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시행 주체를 현행 “발전용원자로운영자”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로 변경

나.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2021년 32억 3,400만원, 2025년 116억 300만원 등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총 408억 5,100만원(연평균 81억 7,000만원)의 추가 재정소요 예상

〈개정안에 따른 비용추계 결과〉

(단위: 백만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합계	연평균
인건비	1,214	1,243	1,273	1,304	1,335	6,370	1,274
기본경비	51	53	54	55	57	270	54
평가사업비	1,891	4,444	7,375	10,212	10,212	34,134	6,827
자산취득비	78	-	-	-	-	78	16
합 계	3,234	5,740	8,702	11,571	11,603	40,851	8,170

다. 재정수반요인

- 주기적 안전성평가(안 제23조제1항)
 -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제20조제1항¹⁾에 따라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허가를 받은 날부터 매 10년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실시하는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받아야 함

〈현행 및 개정안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시행 주체〉

	현 행	개정안
시행 주체	발전용원자로운영자	원자력안전위원회

라. 비용추계의 전제

- 개정안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소요비용은 한국수력원자력(주) 및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비용단가 등을 적용하여 추계
- 개정안 부칙에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것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으로 함

1) 「원자력안전법」 제20조(운영허가) ①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마. 비용추계 상세 내역

1) 추계의 대상 및 방법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위원회가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대하여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비용항목은 평가인력 인건비, 기본경비, 평가사업비, 자산취득비로 구성됨²⁾
 - (평가인력 규모·평가사업비) 현행 주기적 안전성평가는 발전용원자로 운영자인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실시하고 있으므로, 본 추계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주)의 평가인력 규모와 평가사업비 단가 등을 적용
 - (인건비·기본경비) 개정안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는 안 제111조제1항제14호³⁾에 따라 전문기관 등에 위탁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본 추계에서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인건비 단가 및 인건비 대비 기본경비 비율 등을 적용
 - (자산취득비) 국회예산정책처의 「법안비용추계에 이용되는 단가 및 기준정보에 관한 연구」에서 조사된 비용단가를 적용

2) 개정안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평가인력은 총 13명으로 추정되는데, 인력 규모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전문기관의 유희공간 등을 추가 인력의 업무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본 추계에서는 추가재정소요의 비용항목으로 임차비용을 제외함

3) 안 제111조(권한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위원회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3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기관, 통제기술원, 그 밖의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다른 행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4. 제23조제1항(제34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

〈비용추계 산식〉

$$\begin{aligned}\text{연간 추가재정소요}_t &= \text{주기적 안전성평가 실시에 필요한 비용}_t \\ &= \text{인건비}_t^{1)} + \text{기본경비}_t^{2)} + \text{평가사업비}_t^{3)} + \text{자산취득비}_t^{4)}\end{aligned}$$

이 때, t 는 추계연도(2021~2025년)

1) $\text{인건비}_t = \text{평가인력 수}_t^{a)} \times \text{1인당 인건비}_t^{b)}$

a) 평가인력 수 $_t$ 는 총 13명

b) $\text{1인당 인건비}_t = \text{1인당 인건비}_{t-1} \times (1 + \alpha_t)$

이 때, t 는 추계연도, 1인당 인건비 $_{t=2020}$ 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직원 1인당 인건비(2020년도 예산 기준), α 는 인건비 상승률(최근 3년간 공무원 평균 보수인상률, 2.4%)

2) $\text{기본경비}_t = \text{인건비}_t \times \text{인건비 대비 기본경비 비율}^{a)}$

a)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인건비 대비 기본경비 비율(4.23%) 적용

3) $\text{평가사업비}_t = \text{안전성평가 대상 시설 수}_t \times \text{1호기당 평가사업비 단가}^{a)}$

a) 한국수력원자력(주)의 1호기당 평가사업비 단가(복수 시설 9억 4,600만원/년, 단수 시설 13억 2,400만원/년) 적용

4) $\text{자산취득비}_{t=2021} = \text{평가인력 수}_{t=2021}^{a)} \times \text{1인당 자산취득비}_{t=2021}^{b)}$

이 때, t 는 주기적 안전성평가 개시연도(2021년)

a) 평가인력 수 $_t$ 는 총 13명

b) 1명당 자산취득비 $_{t=2021}$ 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법안비용추계에 이용되는 단가 및 기준정보에 관한 연구」에서 조사된 5,892,484원(2020년 공공기관 기준)을 적용

2) 주기적 안전성평가

- 개정안에 따라 위원회가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재정소요를 추계
 - 현행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주)의 평가인력 규모 고려하여 평가인력 수를 추정한 후, 한국수력원자력(주)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비용단가 등을 적용하여 추계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사업”(2020년도 예산 244억 5,200만원)을 통하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음

가) 평가인력 수

- 개정안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실시하는 필요한 인력은 총 13명으로 추정
 - 한국수력원자력(주)은 현행법에 따라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총 13명의 인력이 평가를 수행하고 있음
 - 한국수력원자력(주)에 따르면, 평가인력 13명은 본사 2명, 연구소 9명, 발전소 2명으로 구성됨
 - 개정안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실시하는 필요한 인력은 한국수력원자력(주)의 현행 평가인력 수를 준용하여 총 13명으로 추정

나) 주기적 안전성평가 실시에 따른 소요비용

- 주기적 안전성평가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건비, 기본경비, 평가사업비, 자산취득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각 비용항목별 추계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인건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직원 1인당 인건비에 공무원 평균 보수인상률을 적용하여 산출
 - 개정안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는 공공분야의 업무에 해당하고, 수탁기관 소속 직원의 인건비 상승률은 공무원의 임금 상승률과 유사한 추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므로, 본 추계에서는 평가인력의 인건비 상승률로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2020년도 예산 기준 1인당 인건비 9,122만원에 최근 3년간 공무원 평균 보수인상률 2.4%⁴⁾ 적용 후, 평가인력 수 13명을 곱하여 산출
- (기본경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인건비 대비 기본경비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
- 평가인력 인건비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인건비 대비 기본경비 비율 (2020년도 예산 기준 4.23%)을 곱하여 산출
- (평가사업비) 추계기간 동안 주기적 안전성평가 대상 시설 수에 한국수력원자력(주)의 평가사업비 단가를 적용하여 산출
- 추계기간 동안 주기적 안전성평가 일정은 시설별 운영허가일과 1개 시설당 평가 기간을 고려하여 추정
 - 1개 시설당 평가 기간은 최근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착수한 신고리1·2호기의 평가 기간인 3년 6개월을 적용

4) 최근 3년간 공무원 보수인상률은 다음과 같음

	2018	2019	2020	연평균
공무원 보수인상률	2.6	1.8	2.8	2.4

(단위: %)

자료: 인사혁신처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처에서 재구성

〈주기적 안전성평가 예상 일정: 2021~2025년〉

	2021	2022	2023	2024	2025
고리1호기					
고리3·4호기					
신고리3·4호기					
한빛1·2호기					
한빛3·4호기					
한빛5·6호기					
월성1호기					
신월성1·2호기					
한울5·6호기					

주: 추계기간 동안 주기적 안전성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은 일정에서 제외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주기적 안전성평가 예상 일정을 바탕으로 평가 대상 시설 수를 추정

〈주기적 안전성평가 대상 시설 수: 2021~2025년〉

(단위: 개)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복수 시설	2	4	5	8	8
단수 시설	-	0.5	2	2	2

주: 고리1호기, 월성1호기는 단수 시설이며, 나머지 시설은 복수 시설에 해당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평가사업비 단가) 1호기당 비용단가로 복수 시설 9억 4,600만원/년, 단수 시설 13억 2,400만원/년을 적용하고, 추계기간 동안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복수 시설) 최근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착수한 신고리1·2호기 기준 비용 단가를 적용
 - (단수 시설) 한국수력원자력(주)에 따르면 고리1호기, 월성1호기 등 단수 시설의 경우 복수 시설 대비 약 40%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므로, 본 추계에서도 복수 시설 비용단가의 40%를 추가로 적용
- (자산취득비)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산정한 1인당 자산취득비에 물가 상승률을 적용하여 산출
- 국회예산정책처의 「법안비용추계에 이용되는 단가 및 기준정보에 관한 연구」에서 조사된 5,892,484원(2020년 공공기관 기준)에 물가상승률을 적용한 후, 평가인력 수 13명을 곱하여 산출
 - 자산취득비는 주기적 안전성평가 실시가 시작되는 해인 2021년에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3. 양육비 대지급 실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2021.03.09. 발의)」

가. 주요내용

- 현행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사업을 중단하고 ‘양육비 대지급’ 실시

나. 비용추계 결과

- 양육비 대지급에 필요한 추가재정소요는 2023년 905억 7,100만원, 2027년 934억 3,700만원 등 2023년부터 2027년까지 향후 5년 동안 총 4,602억 9,300만원(연평균 920억 5,900만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

〈개정안에 따른 비용추계 결과〉

(단위: 백만원)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계	연평균
양육비 대지급	90,571	91,370	92,112	92,803	93,437	460,293	92,059

주: 본 추계에서는 현행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사업의 지원단가인 월 20만원이 추계기간 중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나, 추후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자녀(지원단가 월 10만원)의 대지급 신청 비중이 높아질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감소할 수 있음

다. 재정수반요인

- 양육비 대지급
 - 동법 제11조¹⁾에 따른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등을 신청한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양육비 대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

- 대지급 신청을 받은 여성가족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결정된 대지급은 미성년 자녀가 「민법」 제4조2)에 따른 성년에 이를 때까지 지급할 수 있음

〈현행 및 개정안에 따른 양육비 대지급〉

양육비 대지급	
현행법	개정안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14조)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14조) 삭제 · 양육비 대지급(안 제21조의 6) 신설

라. 비용추계의 전제

□ 추가재정소요는 개정안에 따른 총재정소요에서 현행 제도 유지 시 총재정소요를 차감하여 산출

- 개정안에 따른 총재정소요는 ‘양육비 대지급’에 따른 비용으로서, 양육비 대지급 건수에 건별 지원단가³⁾를 곱하여 산출

- 1) 제11조(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등의 신청) ① 양육부·모는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자녀의 인지청구 및 양육비 청구를 위한 소송 대리 등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양육비 채권자는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양육비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할 경우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신청의 대리 등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이나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법률지원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법률지원 등의 신청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2)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 (양육비 대지급 건수) 미성년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구 수에 이혼·미혼 한 부모가구 비율과 양육비 채권 비율, 양육비 채무 미지급율, 한부모가족의 만18세 이하 평균 자녀 수를 곱하여 산출
- (건별 지원단가) 현행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금액인 20만원⁴⁾이 추계기간 중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현행 제도 유지 시 총재정소요는 현행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비용으로서, 최근 2년간(2019~2020년) 평균 사업비인 3억원이 추계기간 중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양육비 대지급 신청자 중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의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18세 미만 자녀(이하 ‘저소득 한부모자녀’)에 대한 대지급 신청 비중이 높아질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감소할 수 있음
- 현행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르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의 ‘저소득 한부모자녀’는 1인당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 받고 있음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사업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양육비로 대지급하고 있으나, 저소득 한부모자녀에게는 이미 지급 중인 ‘아동양육비’를 고려하여 양육비 대지급 단가를 월 10만원으로 낮추어 지급 중임
- 개정안에 따라 현행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삭제하고 ‘양육비 대지급’을 신설하여 지원할 경우 양육비 대지급 업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나 본 추계에서는 양육비 대지급 업무로 인한 추가 소요 비용이 미미할 것으로 가정하고 추계에서 제외함

3) 개정안은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양육비 대지급의 지원기준과 대지급 금액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이를 알기 어려우므로 대상자 모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

4) 본 추계에서는 양육비 대지급 건수 산출 시 가구별 평균 자녀 수(1.5명)를 고려했기 때문에 건별 지원단가는 20만원으로 동일하게 적용

- 현재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이행개선부 15명, 가족상담단 15명, 법률지원단 30명, 양육지원부 13명 등 총 73명으로 구성되어 대지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동법 제8조⁵⁾에 따라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하여 인력을 충원할 수 있음
- 또한 양육비 대지급 신청자에 대한 현행 해당 가구의 소득 파악 등의 업무가 줄어들 여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에 따른 양육비 대지급 업무로 인한 추가 소요 비용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추계에서 제외함

□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으로 함

마. 비용추계 상세 내역

1) 추계의 대상 및 방법

- 추가재정소요의 추계대상은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양육비 채권자가 양육비 대지급을 신청할 경우 발생하는 대지급 금액으로 대지급 건수에 건별 대지급 단가를 곱하여 산출

5) 제8조(직원 등의 파견요청) ①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장은 양육비 이행 관련 업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을 거쳐 관계 기관에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경우에는 미리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견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파견직원의 업무 범위, 대상 및 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행관리원의 장이 정한다.

- (연간 대지급 건수) 미성년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구 수에 이혼·미혼 한부모가구 비율과 양육비 채권 비율, 양육비 채무 미지급율, 한부모가족의 만18세 이하 평균 자녀 수를 곱하여 산출
- (연간 대지급금) 양육비 대지급 건수에 건별 월 대지급액 20만원과 12개월을 곱하여 산출
- 추가재정소요는 개정안에 따른 총재정소요에서 현행 제도 유지 시 총재정소요를 차감하여 산출
- 현행 제도 유지 시 총재정소요는 여성가족부 소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지원」 사업에서 실시 중인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최근 2년간 평균 사업비 3억원이 추계기간 중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함

〈비용추계 산식〉

추가재정소요 = 개정안에 따른 총재정소요_t¹⁾ - 현행 제도 유지 시 총재정소요_t²⁾
 이 때, t 는 추계연도(2023~2027년)

- 1) 개정안에 따른 총재정소요_t = 양육비 대지급 건수_t(a) × 월 대지급액(b) × 12개월
 - a) 양육비 대지급 건수 = 미성년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구 수 × 이혼·미혼 한부모가구 비율 (81.6%) × 양육비 채권 비율(24.5%) × 양육비 채무 미지급율(29.4%) × 한부모가구의 만18세 이하 평균 자녀 수(평균 1.5명)
 - b) 월 대지급액 20만원(현행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사업의 월 지원단가)
- 2) 여성가족부 소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지원」 사업에서 실시 중인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최근 2년간 평균 사업비 3억원이 추계기간 중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2) 양육비 대지급

가)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 양육비 대지급 건수

- 먼저, 통계청 장래가구추계(2023~2027년)의 추계가구 수에 2016~2019년 평균 미성년 한부모가구 비율 2.05%를 적용하여 장래 미성년자녀 한부모가구 수(2023~2027년)를 추정
 - － 통계청 인구총조사에 따른 총 가구 수 대비 미성년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구의 2016~2019년 평균 비중은 2.05%
- 다음으로, 여성가족부의 「2018년 한부모가족실태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양육비 채권 발생가능 비율, 양육비 채권 보유비율 등을 적용
 - － 양육비 채권이 발생하지 않는 사별 등을 제외하고, 양육비 채권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인 이혼·미혼 한부모가족 비율인 81.6%를 적용함
 - － 이혼·미혼 한부모가족 중 양육비 채권을 소유하고 있는 비율인 24.5%를 적용함(정기지급 채권 22.5% + 일시·정기지급 채권 0.1% + 일시지급 채권 1.9%)
 - － 양육비 채권 소유자에 대한 양육비 채무 미지급률인 29.4%를 적용하고, 양육비 대지급 건수는 한부모가족의 만18세 이하 평균 자녀 수인 1.5명을 적용하여 산출
 - － 양육비 대지급 대상으로 선정되면 추계기간 내에서는 미성년으로 가정함

〈양육비 대지급 건수 산출 내역〉

(단위: 가구, 건)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장래추계가구 수 (A)	20,985,904	21,170,635	21,342,220	21,501,347	21,647,983
미성년자녀 한부모가구 수(B) ($B=A \times 2.05\%$)	429,452	433,233	436,744	440,000	443,001
이혼·미혼 한부모가구 수(C) ($C=B \times 81.6\%$)	350,433	353,518	356,383	359,040	361,489
양육비 채권소유 가구 수(D) ($D=C \times 24.5\%$)	85,856	86,612	87,314	87,965	88,565
양육비 채무 미지급 가구 수(E) ($E=D \times 29.4\%$)	25,242	25,464	25,670	25,862	26,038
양육비 대지급 건수(F) ($F=E \times 1.5\text{명}$)	37,863	38,196	38,505	38,793	39,057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현행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월 지급단가인 20만원을 양육비 대지급 단가로 하고, 12개월을 곱하여 연간 대지급금 산출
 - 추계기간 중 동 지원단가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가정하나, 연도별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의 신청이 증가할 경우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감소할 수 있음

〈개정안에 따른 총 재정소요: 2023~2027년〉

(단위: 건, 백만원, 개월)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양육비 대지급 건수(A)	37,863	38,196	38,505	38,793	39,057
양육비 대지급 단가(B)	0.2	0.2	0.2	0.2	0.2
지원 개월(C)	12	12	12	12	12
합계(A×B×C)	90,871	91,670	92,412	93,103	93,737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현행 제도 유지 시 총재정소요

- 현행 제도 유지 시 총재정소요는 여성가족부 소관 「한국건강가정진 흥원 지원」 사업에서 실시 중인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연간 사 업비 3억원이 추계기간 중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현행 제도 유지 시 총재정소요: 2023~2027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한시적 양육비 대지급금	300	300	300	300	30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환경 · 노동 분야

1.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가산: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8.20. 발의)

가. 주요내용

- 한부모 근로자의 육아휴직 급여 가산

나.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한부모 근로자의 육아휴직 급여액을 70% 가산할 경우 고용보험기금의 추가재정소요는 2021년에 246억 4,100만원, 2025년에 304억 1,200만원 등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 총 1,394억 1,600만원(연평균 278억 8,300만원)으로 추계됨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1~2025년〉

(단위: 백만원)

	2021	2022	2023	2024	2025	합계	연평균
육아휴직 급여 (안 제70조제5항)	24,641	26,624	28,324	29,414	30,412	139,416	27,883

다. 재정수반요인

□ 육아휴직 급여(안 제70조)

-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에 따른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액에 100분의 7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가산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여야 함(제5항 신설)

라. 비용추계의 전제

□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중 한부모 근로자의 비중은 최근 자료만 가용하므로¹⁾ 이에 근거하여 개정안의 수급자 수를 추정함

- 2020년 4, 5월 기준으로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중 한부모 근로자의 비중은 평균 0.93% 수준임

□ 개정안은 한부모 근로자인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에게 100분의 7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가산하여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본 추계에서는 그 비율을 70%로 가정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가산비율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1) 한부모 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특례는 2020년 3월 31일부터 시행되어 한부모 근로자인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에 대한 자료는 2020년 4~5월 자료만 구축되어 있음

- 한부모 근로자의 임금분포에 대한 자료가 미비하므로 현행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의 임금분포에 근거하여 급여액 및 가산 급여액을 추정함
 - 한부모 근로자인 수급자의 통상임금 분포가 일반 근로자의 통상임금 분포와 다를 경우 급여단가는 달라질 수 있음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으로 함

마. 비용추계 상세 내역

1) 추계의 대상 및 방법

- 비용추계 대상은 “한부모 근로자인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에 대한 가산 급여액”으로 하며, 수급자 수에 1인당 평균 가산 급여액을 곱하여 산출함
 - 1인당 평균 가산 급여액은 한부모 근로자의 급여액에 70%를 곱한 금액으로 하며, 한부모 근로자의 급여액은 일반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의 2019년 임금분포에 근거하여 추정함
 - 한부모 근로자의 휴직기간은 일반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와 동일하게 가정함(2020년 예산상 9.17개월)

〈비용추계 산식〉

$$\text{추가재정소요}_t = \text{수급자 수}_t^{1)} \times \text{1인당 평균 가산 급여액}_t^{2)}$$

이때, t 는 추계연도(2021~2025년)

- 1) 국회예산정책처의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수 전망치에 한부모 근로자 비중(0.93%)을 반영함
- 2) 가산 급여액은 한부모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을 9.17개월로 가정할 경우 1인당 2,185만원으로 추정됨

2) 육아휴직(안 제70조)

- 육아휴직 급여의 수급자 중 한부모 근로자의 비중은 0.93%로 가정하며, 추계기간 동안 동 수준이 유지되는 것으로 함
 - 2020년 4, 5월 기준으로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중 한부모 근로자 비중은 각각 0.96%, 0.89%로 평균적으로 0.93% 수준임
 - － 2020년 4, 5월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수는 각각 11,199명, 9,427명이며, 이 중 한부모 근로자는 각각 108명, 84명임²⁾
 - 육아휴직 급여의 수급자 수 전망치는 국회예산정책처의 「2019~2028년 8대 사회보험 재정전망」(2019. 11.)에 근거하여 추정하며, 추계기간 동안 한부모 근로자의 비중은 변함이 없는 것으로 가정함

〈개정안에 따른 지급대상자 전망: 2021~2025년〉

(단위: 명)

	2021	2022	2023	2024	2025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수	121,584	131,369	139,759	145,134	150,061
－한부모 근로자	1,128	1,219	1,297	1,346	1,39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수는 초회수급자 기준임

- 한부모 근로자인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에 대한 가산 급여액은 가산 비율을 70%로 가정할 경우 연간 2,185만원으로 추정되며, 추계기간 동안 동 수준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함
- 육아휴직 급여액은 휴직기간별로 다른데,³⁾ 소득대체율과 상·하한액은 다음과 같음
 - －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소득대체율 100%(월 70~250만원), 4개월째부터 6개월까지는 80%(월 70~150만원), 7개월째부터는 50%(월 70~120만원)임
 - 2019년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의 임금분포를 고려할 때 개정안에 따른 1인당 평균 가산 급여액은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960만원 (=188만원×3개월), 4개월째부터 6개월까지는 681만원(=134만원×3개월), 7개월째부터 9.17개월까지는 543만원(=101만원×3.17개월)임
 - － 이때 한부모 근로자의 휴직기간은 일반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와 동일하게 9.17개월로 가정함

3)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육아휴직 급여의 특례) ① 제95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피보험자의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 급여는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월별 상한액은 250만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이 겹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서는 제95조를 적용한다.
 ③ 제9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피보험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그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월별 상한액은 250만원으로 한다.
 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6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월별 상한액은 150만원으로 한다.
 3. 육아휴직 7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월별 상한액은 120만원으로 한다.

2. 청년창업가에 대한 고용·산재보험료 지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0.6.10. 발의)

가. 주요내용

- 청년창업가에 대한 고용·산재보험료 지원

나.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초기창업자인 청년창업자에게 국가가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지원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1년에 516억 4,500만원, 2025년에 538억 1,000만원 등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 총 2,636억 900만원(연평균 527억 2,200만원)으로 추계됨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1~2025년〉

(단위: 백만원)

	2021	2022	2023	2024	2025	합계	연평균
고용보험료의 지원 (안 제21조)	20,777	20,991	21,208	21,427	21,648	106,050	21,210
산재보험료의 지원 (안 제21조의2 신설)	30,868	31,187	31,509	31,834	32,162	157,559	31,512
합 계	51,645	52,178	52,716	53,260	53,810	263,609	52,722

다. 재정수반요인

- 고용보험료의 지원(안 제21조)
 - 국가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의3에 따른 초기창업자로서 청년창업자에 해당하는 자가 제13조제4항에 따라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제2항)
- 산재보험료의 지원(안 제21조의2 신설)
 - 국가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의3에 따른 초기창업자로서 청년창업자에 해당하는 자가 제13조제5항에 따라 부담하는 산재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제1항)

라. 비용추계의 전제

- 개정안은 초기창업자인 청년창업자에게 국가가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현행 고용노동부의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일명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수준에 준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함
 - 다만, 동 사업은 국민연금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므로 산재보험료의 경우는 보험료율을 고려하여 지원수준을 추정함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으로 함

마. 비용추계 상세 내역

1) 추계의 대상 및 방법

- 비용추계 대상은 “초기창업자인 청년창업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에 대한 지원금”으로, 지원대상자 수에 지원단가를 곱하여 추계함

〈비용추계 산식〉

추가재정소요_t = 초기창업자인 청년창업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에 대한 지원금_t

$$= \sum_{i=1}^2 (\text{지원대상자 수}_t^{1)} \times \text{지원단가}_{i,t}^{2)})$$

이때, *i*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t*는 추계연도(2021~2025년)

- 1) 2017년 기준 340,337명이며, 2018년 이후 2015~2017년 연평균 증가율(1.0%) 적용
- 2) 2020년 기준으로 고용보험료 지원단가는 1인당 6만원이며, 산재보험료의 경우는 9만원으로 가정(지원단가는 현행 수준이 추계기간 동안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2) 고용보험료의 지원(안 제21조)·산재보험료의 지원(안 제21조의2 신설)

- 개정안의 보험료 지원대상자인 “초기창업자인 청년창업자”는 2017년 기준으로 340,337명이며, 2018년 이후 연평균 1.0%씩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함

- 개정안의 지원대상자인 초기창업자인 청년창업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의3¹⁾에 따른 초기창업자로서 청년창업자²⁾에 해당하는 자”이므로(안 제21조제2항 등) 업력 3년 미만의 39세 이하인 창업자를 말함
-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초기창업자인 청년창업자는 2017년 기준으로 340,337명이며 2015~2017년 동안 연평균 1.0%씩 증가하였음
 - 초기창업자인 청년창업자가 창업한 기업의 평균 피고용자 수는 2017년 기준으로 1.0명임

〈초기창업자인 청년창업자 추이〉

(단위: 명)

	2015	2016	2017	연평균 증가율
초기창업자인 청년창업자	333,418	335,437	340,337	1.0%

주: 이 자료는 초기창업자인 청년창업자가 창업한 기업의 수를 의미하나, 여기에서는 창업자로 간주함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

- 개정안의 지원대상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의 합으로 하며, 지원단가는 각 6만원과 9만원으로 가정함
 - 지원대상자가 피고용자 1명에 대해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는 실업급여 보험료(보험료율 0.8%)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보험료율 0.25%³⁾)로 이루어져 있으며, 현행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단가(기가입자 기준)⁴⁾를 고려하여 2020년 기준으로 1인당 연 6만원으로 가정함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의3. "초기창업자"란 창업자 중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5조의4(창업촉진사업 추진 시 우대 대상 예비청년창업자 등의 범위) 법 제4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비청년창업자 또는 청년창업자"란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를 말한다.

3)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다른데, 지원대상자의 평균 피고용자 수(2017년 기준 1.0명)를 고려할 때 0.25%임.

- 지원대상자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는 업종에 따라 상이한데, 평균 보험료율(2020년 기준 1.56%)을 고려하여 추정한 결과 1인당 연 9만원으로 가정함($=6\text{만원} \times (1.56\% / 1.05\%)$)⁵⁾

- 개정안에 따라 초기창업자인 청년창업자에게 국가가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지원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1년에 516억 4,500만원, 2025년에 538억 1,000만원 등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 총 2,636억 900만원으로 추계됨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1~2025년〉

	2021	2022	2023	2024	2025	합계
지원대상자 수(A, 명)	354,609	358,269	361,967	365,704	369,479	—
지원단가 (만원)	고용보험(B)	6	6	6	6	—
	산재보험(C)	9	9	9	9	—
추가재정소요 ($A \times (B+C)$, 백만원)	51,645	52,178	52,716	53,260	53,810	263,60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4) 현행 두루누리 사업의 고용보험료 지원단가는 기가입자(지원률 30%)의 경우 10만원이며, 여기에는 사업주와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이 모두 포함되어 있음. 개정안은 초기창업자인 청년창업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므로 두루누리 사업의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은 제외함
- 5) 개정안의 지원대상자가 운영하는 사업의 업종에 따라 실제 지원대상자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는 달라질 수 있음

3. 강우로 인해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되지 않고 배출되는 하수의 측정·기록: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020.12.9. 통과)

가. 주요내용

- 강우로 인해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되지 않고 배출되는 하수의 측정·기록

나. 비용추계 결과

- 대안에 따라 공공하수도 운영·관리자가 강우로 인하여 하수처리구역 안의 하수가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되지 아니하고 배출되는 하수의 수량과 수질을 측정·기록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2년 413억 8,900만원, 2026년 1억 2,100만원 등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 동안 총 418억 6,400만원(연평균 83억 7,300만원)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됨

〈대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2~2026년〉

(단위: 백만원)

강우로 인해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되지 않고 배출되는 하수의 측정·기록(안 제34조의10 신설)	2022	2023	2024	2025	2026	합계	평균
수량 모니터링	41,274	—	—	—	—	41,274	8,255
수질 모니터링	115	116	118	120	121	590	118
합계	41,389	116	118	120	121	41,864	8,373

- 주: 1. 수량 모니터링을 위한 유량계 및 제어반 등은 추계 첫해에 일괄 설치
 2. 수질 모니터링을 위한 BOD 분석은 연 3회 실시
 3. 동 추가재정소요는 전액 지방비

다. 재정수반요인

-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 등(안 제10조의2 신설)
 -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려는 자가 공공하수도의 설치를 위하여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이용 가치, 지하의 깊이 및 토지 이용을 방해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상함(제1항)
 - 제1항에 따른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의 기준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2항)
-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및 손괴·방해 행위 금지 등(안 제19조제3항 신설)
 - 공공하수도를 운영·관리하는 자는 강우로 인하여 제15조¹⁾에 따라 공고된 하수처리구역 안의 하수가 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을 포함한다)에 유입되지 아니하고 배출되는 경우, 배출되는 하수의 수량과 수질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기록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함(제3항)

라. 비용추계의 전제

- 본 추계는 안 제19조제3항에 따라 공공하수도 운영·관리자가 강우로 인하여 하수처리구역 안의 하수가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되지 아

1) 법 제15조(사용의 공고 등)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용개시 시기, 배수구역(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그 하수처리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합류식하수관로 및 분류식하수관로의 현황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고, 관계도면을 일반에게 공람하여야 한다.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을 하수관로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의 범위에서 정하되, 하수처리구역의 지정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니하고 배출되는 경우,²⁾ 배출되는 하수의 수량과 수질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기록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추계

- 본 추계에서는 공공하수도관리청, 즉 지방자치단체의 장³⁾이 공공하수처리장별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연간 3회(봄, 여름, 가을) 강우로 인해 배출되는 하수의 수량 및 수질을 모니터링하는 것으로 가정
 - 수량 모니터링에는 유량계와 제어반 등 장치 설치 필요
 - 수질 모니터링에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하 “BOD”) 분석비용 필요

※ 이때 전국 하수처리구역 수(806개소)는 추계기간 동안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안 제10조의2에 따른 공공하수도 설치로 인한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보상비용은 추계대상에서 제외

- 현시점에서는 설치 예정인 공공하수도의 타인 소유 토지 지하부분 사용 여부 및 점유 면적,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 사용하는 토지 지하의 깊이, 토지 이용을 방해하는 정도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곤란

2) 법 제19조제2항에 따르면 공공하수처리시설,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는 하수처리구역 안의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않고 배출하여서는 아니 되나, 강우·사고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하수처리구역 안의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거치지 않고 배출할 수 있음. 이는 강우 시 유량이 증가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처리과정을 거쳐 하수를 방류하기 힘들다는 점을 고려한 규정이나, 현재 강우 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거치지 않고 하수가 배출되어 하천의 주된 오염원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임

(자료: 환경노동위원회,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정부 제출(의안번호 제2102090호), 2020.9.)

3) 법 제18조(공공하수도관리청)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이 경우 공공하수도에 대한 공공하수도관리청별 관리범위에 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② 공공하수도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관할구역에 걸쳐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관리하여야 할 공공하수도의 시설 또는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적용⁴⁾

□ 대안 부칙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으로 함

마. 비용추계 상세 내역

1) 추계의 대상 및 방법

□ 추계의 대상은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강우로 인하여 관할 하수처리구역 안의 하수가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되지 않고 배출되는 하수의 수량과 수질 모니터링 비용

- 수량 모니터링: 유량계 및 제어반 등 설치 비용
- 수질 모니터링: 각 하수처리구역별 강우 배출 하수 BOD 분석 비용

□ 추계 방법

- 수량 모니터링 비용은 전국 하수처리구역 수 806개소(19년 기준)에 유량계 및 제어반 등⁵⁾ 설치비용을 곱하여 추계
 - － 유량계 및 제어반 등 설치비용: 5,010만원⁶⁾ (20년 기준)
(유량계 3,010만원/대, 제어반 등 설치 2,000만원/대)

4)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

(단위: %)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소비자물가상승률(CPI)	0.5	1.0	1.2	1.2	1.3	1.4	1.4

5) 유량계의 전력공급 및 정보전송을 위한 시스템제어, UPS, 모뎀, 배선 공사 포함

6) 유량계 및 제어반 설치비용은 기획재정부 등록 전문가격조사기관인 (사)한국물가정보에서 발행한 「종합물가정보」(20.12월호) 참고 (환경부 제출자료)

- ※ 이때, 유량계 및 제어반은 추계기간 첫해인 2022년에 일괄 설치되는 것으로 가정하며,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 적용
- 수질 모니터링 비용은 전국 하수처리구역 수에 연간 분석횟수(3회) 및 BOD 분석비용 단가를 곱하여 추계
 - 연간 분석횟수: 3회
- ※ 수질 모니터링 횟수는 연간 3회(봄, 여름, 가을)로 계절별 강수량 추이를 감안하여 정한 것임⁷⁾
- BOD 분석비용 단가: 46,550원/회⁸⁾ (20년 기준)
- ※ 이때, 추계기간 동안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 적용

〈비용추계 산식〉

$$\begin{aligned} \text{추가재정소요}_t &= \text{강우로 인하여 배출되는 하수의 수량 및 수질 모니터링 비용}_t \\ &= \text{수량 모니터링 비용}_{t=2022}^{1)} + \text{수질 모니터링 비용}_t^{2)} \end{aligned}$$

이때, t 는 추계연도: 2022~2026년

- 1) 수량 모니터링 비용 $_{t=2022}$ = 유량계 및 제어반 설치비용 $_t^{a)}$ × 하수처리구역 수 $_t^{b)}$
 ※ 유량계 및 제어반 설치비용은 2022년에 일괄 설치
 a) 유량계 및 제어반 설치비용: 5,010만원/대 (2020년 기준)
 - 유량계 3,010만원/대, 제어반 설치 2,000만원/대

7) 최근 10년 간 계절별 강수량 추이

(단위: mm)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년 합계	1,444.90	1,622.60	1,479.10	1,162.90	1,173.80	949	1,272.50	967.8	1,386.90	1,171.90
봄	302.9	256.9	256.5	264.3	215.9	223.2	312.8	118.6	368.1	173.9
여름	692.6	1,053.60	770.6	567.5	599.8	387.1	446.2	609.7	586.5	493
가을	307.6	225.5	363.5	231.2	293.1	247.7	381.6	172.5	351.2	448.4
겨울	98.7	45.6	139.3	59.9	76.9	109.1	108.1	75.6	66.5	168.1

주: 1. 강수량: 비나 눈, 우박 등과 같이 구름으로부터 땅에 떨어져 내린 강수의 양
 2. 강우량: 비의 경우에는 우량 또는 강우량이라고도 하며, 단위는 mm로 표시
 자료: e-나라지표, 강수량 추이 (출처: 기상청 기상연보)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01

8) 한국환경공단, 연구원, 대학교 등 전문분석기관의 최근 BOD 분석 비용 평균

※ 유량계 및 제어반 설치비용은 기획재정부 등록 전문가가격조사기관인 (사)한국물가정보에서 발행한 「종합물가정보」(‘20.12월호) 참고 (환경부 제출자료)
- 유량계 및 제어반 설치비용 단가에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 적용

b) 하수처리구역 수_t: 806개소

※ 환경부 제출자료

2) 수질 모니터링 비용_t = 연간 측정 횟수^{a)} × BOD 분석 비용_t^{b)} × 하수처리구역 수_t^{c)}

a) 연간 측정 횟수: 3회

※ 계절별 강수량 추이를 고려하여 봄, 여름, 가을에 각 1회씩 측정

b) BOD 분석비용_t: 46,550원/회 (2020년 기준)

- BOD 분석비용 단가에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 적용

※ 한국환경공단, 연구원, 대학교 등 전문분석기관의 최근 BOD 분석 비용 평균(환경부 제출자료)

c) 하수처리구역 수_t: 806개

- 하수처리구역 수는 추계기간 동안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환경부 제출자료

2) 강우로 인해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되지 않고 배출되는 하수의 측정·기록 (안 제19조제3항 신설)

가) 수량 모니터링

□ 수량 모니터링 비용은 전국 하수처리구역 수에 유량계 및 제어반 등 설치비용을 곱하여 추계

○ 하수처리구역 수: 806개소(‘19년 기준)

○ 유량계 및 제어반 설치비용: 5,010만원/대⁹⁾ (‘20년 기준)

9) 유량계 및 제어반 설치비용은 기획재정부 등록 전문가가격조사기관인 (사)한국물가정보에서 발행한 「종합물가정보」(‘20.12월호) 참고 (환경부 제출자료)

－ 유량계 3,010만원/대, 제어반 설치 2,000만원/대

※ 이때, 유량계 및 제어반 등은 추계기간 첫해인 2022년에 일괄 설치하는 것으로 가정하며,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 적용

□ 추계 결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하수처리구역에 수량 모니터링을 위한 유량계 및 제어반 등을 설치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2년 첫 해에 412억 7,4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

〈수량 모니터링 비용 추계: 2022~2026년〉

(단위: 백만원, 개소)

	2022	2023	2024	2025	2026	합계
유량계 및 제어반 등 설치비용 단가(A)	51	—	—	—	—	—
하수처리구역 수(B)	806	—	—	—	—	—
수량 모니터링 비용 (C=A×B)	41,274	—	—	—	—	41,274

주: 유량계 및 제어반 등은 추계 첫해에 일괄 설치하는 것으로 가정

나) 수질 모니터링

□ 수질 모니터링 비용은 전국 하수처리구역 수에 연간 분석횟수 및 BOD 분석비용 단가를 곱하여 추계

－ 연간 분석횟수: 3회

－ BOD 분석비용 단가: 46,550 원/회¹⁰⁾ (‘20년 기준)

※ 이때, 추계기간 동안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 적용

10) 한국환경공단, 연구원, 대학교 등 전문분석기관의 최근 BOD 분석 비용 평균

- 추계 결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하수처리구역에 수질 모니터링을 위해 BOD 측정분석을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2년 1억 1,500만원 등 추계기간 5년 동안 5억 9,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

〈수질 모니터링 비용 추계: 2022~2026년〉

	2022	2023	2024	2025	2026	합계
연간 측정횟수(A, 회)	3	3	3	3	3	—
BOD 분석비용 단가(B, 원)	47,580	48,151	48,777	49,459	50,152	—
하수처리구역 수(C, 개소)	806	806	806	806	806	—
수질 모니터링 비용 (D=A×B×C, 백만원)	115	116	118	120	121	590

바. 참고자료: 유량계 제어반 설치비 및 BOD분석비용(환경부 제출자료)

- 설치비
- 「하수관로 운영관리시스템 구축 시범사업(울진, 옥천군)(2018)」 용역 수행 시 산정된 유량계 및 제어반* 설치금액 약 2,000만원
 - * 유량계의 전력공급 및 정보전송을 위한 시스템제어, UPS, 모뎀, 배선 공사포함
- BOD 분석비용
- 환경측정대행업협회 측정수수료 단가 BOD의 경우 39,200원으로 공표 (환측협 수수료 공표 2015-1호)
 - ※ 2015년 이후 새롭게 공표된 자료 없음
 - 최근 분석전문기관의 측정분석수수료 조사자료



유량계



제어반 외관



제어반 내부



시스템제어부



모뎀



UPS(무정전전원공급장치)
Uninterruptible Power
Supp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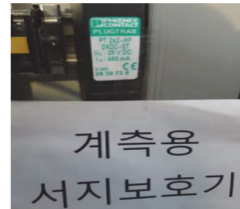


전원용
서지보호기



UPS용
서지보호기

배선 등



계측용
서지보호기

구 분	BOD분석 수수료(원)	비 고
한국환경공단	46,500	비과세 사업장 〈환경 시험·검사 및 측정·분석 운영예규 (한국환경공단규정 제226호)〉
OO엔지니어링	39,200	VAT포함
OO대학교	40,000	비과세 사업장
OOOOOO연구원(KTR)	60,500	VAT포함
평균	46,550	

※ 국립환경과학원 문의 결과 일반항목 분석비용에 관한 별도 고시는 하지 않음

V 국방·보훈·보상·법제사법 분야

1. 6·25전쟁 참전 비정규군 공로자 공로금 지급 등: 「6·25전쟁 참전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2021.03.24. 본회의 의결)

가. 주요내용

-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 설치·운영
- 비정규군 공로자 공로금 지급
- 비정규군 공로자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

나. 비용추계 결과

- 비정규군 공로자 및 그 유족에게 공로금을 지급하는 등의 경우 2022년 153억 5,000만원, 2026년 7억 8,000만원 등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총 471억 9,400만원(연평균 94억 3,900만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개정안에 따른 비용추계 결과〉

(단위: 백만원)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합계	연평균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 위원회 설치·운영	300	302	305	307	310	1,524	305
비정규군 공로자 공로금 지급	15,000	15,000	10,000	5,000	420	45,420	9,084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	50	50	50	50	50	250	50
합계	15,350	15,352	10,355	5,357	780	47,194	9,439

다. 재정수반요인

-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 설치·운영(안 제4조)
 - 공로자 또는 그 유족의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
- 비정규군 공로자 공로금 지급(안 제5조)
 - 제정안은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로자로 인정된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고, 비정규전을 수행한 기간, 형태 및 그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공로금을 지급하도록 규정
-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안 제18조)
 - 정부는 공로자 또는 그 유족 등으로 구성된 단체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라. 비용추계의 전제

- 비정규군에 대한 보상금의 산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비정규군 공로자 및 그 유족에게 일괄적으로 공로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¹⁾
- 본 추계에서는 동법 제정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최대 5년으로 가정하고, 국방부 소관의 보상 법률 중 유사 입법례

1) 제19대국회 국방위원회 제안 「6·25참전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정문헌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수정안」(2015. 7. 7.) 참조

라고 할 수 있는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및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의 운영사례를 참고하여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소요를 추계

- 제정안 부칙에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것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으로 함

마. 비용추계 상세 내역

1) 추계의 대상 및 방법

- 제정안에 따라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비정규군 공로자 및 그 유족에게 보상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공로금·인건비 등 추가재정소요가 예상

〈비용추계 산식〉

$$\text{추가재정소요} = \text{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비용}_t^{1)} + \text{공로금 등 지급 비용}_t^{2)}$$

이때, t 는 2022~2026년

- 1)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비용 $_t$ = 위원회수당 $_t$ + 인건비 $_t$ + 운영비 $_t$
 - 2) 공로금 등 지급 비용 = 공로금 $_t$ (대상인원 $_t \times 1,000$ 만원) + 비정규군 공로자 및 그 유족 단체 지원비용(연 5천만원)
- ※ 대상인원 $_t$: 4,542명(추정 생존자 3,256명 + 유족 보상 신청 추정인원 1,286명)을 연도별로 세분

2)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 설치·운영

- 비정규군 공로자는 6·25전쟁 기간 동안 외국군 소속이거나 국군이 아닌 신분으로 유격 및 첩보수집 등의 비정규전을 수행한 사람으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공로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함
 -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이 법의 보상대상인 비정규군 공로자는 외국군 소속으로 첩보수집 등의 비정규전을 수행한 부대인 KLO(주한연락처: Korea Liaison Office)²⁾와 미공군 소속 첩보부대³⁾, 자생적으로 조성된 구월산 유격대 등이 있음
 - 이들을 포함한 다수의 유격대가 전쟁 중 미국 8240부대에 소속되었다가 휴전 후 한국군 8250부대로 전환되었고, 국방부는 비정규군 공로자를 총 18,994명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중복 보상자를 제외하고 13,890명이 이 법안의 적용 대상임
 - 18,994명 중 위패봉안자(3,928명), 특별상이 기장 수여자(737명), 전상자 명부(439명) 인원은 국가유공자로 보상금 또는 유족연금을 받고 있어 안 제19조에 따른 중복 보상 금지에 따라 이 법안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 제정안은 공로자 또는 그 유족의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함)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

2) 미국 극동군사령부가 1949. 6. 북한의 정부기관, 군 및 산업기관에 침투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등의 첩보활동을 위하여 정보참모부에 설치

3) 6·25전쟁 시 국군 소속 장병과 함께 첩보활동을 전개한 미공군 제6004항공정보대를 가리키며 1953년 제6006항공정찰정보대로 개편

〈6·25전쟁 참전 당시 비정규군 공로자 현황〉

구 분	인 원	비 고
8250부대로 전환자 (장교)	753명	1954.2.26(국방부 특별명령 제39호) 육군편입 시 장교 신분으로 임관된 8240부대 간부
8250부대로 전환자 (부사관/병)	12,595명	1953.8.10(일반명령 제219호) 8240부대에서 8250부대로 편입된 부사관 및 병
위패봉안자	3,928명	유격대 시절 전투 시 순직하여 국립묘지에 봉안된 인원
특별상이 기장 수여자	737명	유격대 시절 부상자들에게 1953.10.8. (일반명령 제225호) 기장을 수여한 인원
전상자 명부	439명	육군 편입이후 군병원에 입원했던 전상(戰傷) 장애자
종군복무자	542명	8250부대로 편입될 때까지 복무하지 않고 도중에 이탈된 자로서 1962년부터 1966년까지 종군사실이 확인된 자
합 계	18,994명	-

자료: 국방부

- 본 추계에서는 동법 제정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최대 5년으로 가정하고, 국방부 소관의 보상 법률 중 유사 입법례라고 할 수 있는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 및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의 운영사례를 참고하여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소요를 추계하면 다음 표와 같음
-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지원기구인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의 인원은 2019년 12월 기준 22명(군인 18명, 기간제 4명)이고,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을 제외한 기관운영비는 2019년도 기준 약 5억원임⁴⁾
-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는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와 비교하여 위원 및 운영인력 축소(15명)로 설치·운영 비용 절감

4) 기간제 인건비(110-02) 연 2억원(월 기준 1,660만원: 총 4명 × 416만원), 운영비 연 1억 8,000만원(일반수용비, 업무추진비, 여비, 장비유지비 등), 위원회 수당 연 1억 2,000만원(월 기준 1,000만원: 위원장 100만원, 위원 45만원)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 15명,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 9명
- 위원회 수당: 연 5,000만원 [월 기준: 420만원(위원장 100만원, 위원 45만원)]
- 인건비(계약직): 2022년 연 1억원(월 기준 830만원: 총 2명 × 416만원)
- 운영비: 연 1억 5,000만원(일반수용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비용 추정: 2022~2026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 계
위원회 수당	50	50	50	50	50	250
인건비	100	102	105	107	110	524
운영비	150	150	150	150	150	750
합 계	300	302	305	307	310	1,524

주 1. 위원회 수당, 운영비는 추계기간 동안 일정하다고 가정

2. 인건비(기간제 2명)는 국회예산정책처 전망(2020.11.) 2018~2020년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 (2.40%) 적용

자료: 국방부

3)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금 등 지급

- 제정안은 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로자로 인정된 사람에게는 비정규전을 수행한 기간, 형태 및 그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공로금을 지급하도록 규정
- 그러나 보상금의 산정을 위한 비정규군 공로자의 개별 활동기간, 공적 등의 확인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제정안에서 규정하는 유격대와 그 활동 시기 및 공적이 유사한 백골병단⁵⁾의 경우 1인당 1,000만원의 위로금 성격의

‘공로금을 지급받았음을 참고하여 본 추계에서도 비정규군 공로자 및 그 유족에게 일괄적으로 1,000만원의 공로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

□ 6·25전쟁 당시 비정규군 공로자 총 13,890명 중에서 공로금 지급대상 인원은 추정 생존자 3,256명과 추정 유족인원 1,286명을 합산한 4,542명임

○ 2020년 11월 기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6·25전쟁 참전유공자로서 현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 중에서 유격군으로 등록된 사람이 3,256명임

○ 6·25전쟁 당시 비정규군 공로자 총 13,890명 중에서 추정 생존자 3,256명을 제외한 10,634명에서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유족이 공로금을 신청할 확률로 12.1%⁶⁾를 적용하면 추정 유족인원은 1,286명이 됨

□ 본 추계에서는 위원회의 사실조사에 필요한 기간, 재심의, 소송 등 다른 변수는 고려하지 아니하고, 국방부가 추정한 대상인원(본인 및 유족)에 대해 추계기간 동안 공로금을 모두 지급하되, 국가 예산의 범위 및 위원회의 연간 심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다음 표와 같이 연간 지급인원을 나누어 공로금을 지급한다고 가정

5) 한국전쟁 당시 육군본부 직할결사대 제11, 12, 13 연대 소속으로 적진 후방지역에서 적군 후방교란을 위한 특수작전 수행자(‘백골병단’이라 함) 817명 중 당시 신원확인이 가능한 94명(당시 생존자 87명, 유가족 7명)에 대하여 군인 신분 인정과 보상을 위하여 입법되었고, 특별법 제정 후 군인신분으로 전환된 생존자 119명에 대하여 1인 평균 1,000만원의 공로금이 지급되었음(6·25참전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2016. 7. 18. 윤후덕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서 참조)

6) 국방부가 제시한 6·25전쟁 당시 군 첩보부대 운용인원(3,862명) 중에서 유족보상인원 467명(12.1%)을 그 산출근거로 함(제334회국회 국방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5. 6. 25.) 및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5. 7. 1.) 회의록 참조)

〈공로금 지급액 추정: 2022~2026년〉

(단위: 명, 백만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 계
대상인원(A)	1,500	1,500	1,000	500	42	4,542
보상단가(B)	10	10	10	10	10	-
공로금 지급액 (=A×B)	15,000	15,000	10,000	5,000	420	45,420

주: 보상단가는 1,000만원으로 추계기간 동안 일정하다고 가정

자료: 국방부

- 한편 제정안은 정부로 하여금 공로자 또는 그 유족 등으로 구성된 단체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유사 입법례인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북자 가족으로 구성된 단체 또는 6·25전쟁 납북사건 및 납북자연구단체에 대해 2019년 연 1억원의 경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본 제정안에서는 경비가 아닌 사업비 목적으로 지원이 가능함에 따라 비정규군 공로자 또는 그 유족으로 구성된 단체에 추계기간 동안 매년 5,000만원씩 지원한다고 가정하면 재정지원 비용은 다음 표와 같음

〈관련단체 재정지원 비용 추정: 2022~2026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합계
관련단체 재정지원	50	50	50	50	50	250

자료: 국방부

2. 고엽제수당 유족 승계, 사망일시금 지급, 수송시설 이용지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1.01.25 발의)

가. 주요내용

- 고엽제수당 유족 승계, 사망일시금 지급, 수송시설 이용지원

나. 비용추계 결과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유족(배우자)이 수당을 승계하는 등에 필요한 추가재정소요는 2022년 109억원, 2026년 428억원 등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총 1,295억원(연평균 259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단위: 백만원)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합 계
수당 승계 및 사망일시금 지급	4,417	11,150	18,749	27,220	36,798	98,333
수송시설 이용지원	6,480	6,365	6,240	6,105	5,953	31,143
합 계	10,897	17,514	24,989	33,325	42,751	129,47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재정수반요인

□ 수당 승계 및 사망일시금 지급

- 현행법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¹⁾와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²⁾의 경우 장애 등급에 따른 수당의 지급 외에 그 유족에 대한 별다른 지원이 없음
- 이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장애등급에 따른 수당 및 사망일시금을 지급

□ 고궁 등의 이용지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유족에게 고궁·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이용 또는 할인 지원

□ 수송시설의 이용지원

- 상이등급 미달 고엽제후유증환자³⁾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게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고, 국가는 수송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지급

- 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란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으로서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로 정의하고 있다.
-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서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란 제4조와 제7조제5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 및 제8조에 따라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로 인정된 자의 자녀(월남전에 참전한 날 이후 또는 1967년 10월 9일부터 1972년 1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한 날이나 고엽제살포업무에 참가한 날 이후에 잉태되어 출생한 자녀를 말한다) 중 제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로 정의하고 있다.
-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보상 등) ②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사람 중 그 장애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0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로 보고 같은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지원을 한다.

라. 비용추계의 전제

- 개정안에서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수당을 받을 권리가 승계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본 추계에서는 배우자에 대한 승계만을 고려하고, 직계비속, 직계존속은 없다고 가정하여 추계함
- 개정안에 따른 고엽제수당의 유족(배우자) 승계 시 당해연도 배우자 승계인원은 실제 연중(1월~12월) 불규칙하게 발생하지만 이를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본 추계에서는 사망으로 인한 배우자 승계는 연중 고루 발생한다고 보아 당해연도에 한해 고엽제수당 배우자 승계분을 6개월만 수급하는 것으로 가정함
- 안 제8조의3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유족에 대하여도⁴⁾ 고궁·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하여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 국가 수입의 감소가 예상되나, 수입감소액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 개정안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유족에 대해서 고궁 등 이용을 지원할 경우, 어느 정도의 인원이 고궁 등을 실제 이용하는지 예측하기 어려우나,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 연령은 65세 이상 고령자가 대부분으로 예상되어(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평균연령은 74세)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제도로써 공공시설 무임 또는 할인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추가재정소요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3(고궁 등의 이용지원)에 따르면, 상이등급 미달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는 고궁·능원·전쟁기념관 및 국·공립 공원·박물관·미술관·수목원·휴양림 등을 무료로 이용하도록 지원하고 있음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를 적용⁵⁾
-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추계에서는 법안의 심사기간 및 예산 확보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으로 함

마. 비용추계 상세 내역

1) 추계의 대상 및 방법

- 추가재정소요의 추계대상은 수당을 받고 있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사망시 수당의 유족 승계 및 사망일시금 별도 지급,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미달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수술시설 이용료 지원에 따른 비용항목임
 - 첫째, 수당 유족 승계 시 소요비용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사망자 수를 추정한 후, 여기에 통계청 유배우자율 적용하여 유족(배우자)수를 추정하고, 이들을 장애등급별(고도, 중등도, 경도)로 구분한 후, 여기에 장애등급별 수당을 곱하여 추정
 - 둘째, 사망일시금은 위에서 추정된 사망자 수에 국가보훈처의 ‘사망일시금’사업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망일시금 지급단가를 곱하여 추정
 - 셋째,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미달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수술시설 이용료 지원은 최근 3년간 국가유공자에 대한 수술시설 이용지원 정부보조액 현황 자료를 통하여 1인당 지원단가를 산출한 후 지원대상자 수에 곱하여 추정

5)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소비자물가상승률(CPI)	0.5%	1.0%	1.2%	1.2%	1.3%	1.4%	1.4%

〈비용추계 산식〉

추가재정소요 = 수당 승계¹⁾ + 사망일시금²⁾ + 수송시설 이용요금 면제·할인³⁾

- 1) 수당 승계 = 대상자 × 지급단가 × 12개월
 - 대상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사망자 중 유족(배우자) 수로 통계청 유배우자율을 적용하여 추정
 - 유족에게 승계되는 월 수당단가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의 80% 수준(2019년 보훈보상금 예산 각목명세서 기준)으로 추정되어 이를 적용하고, 고도, 중등도, 경도로 구분하여 최근 5년간 연평균인상률 4.1% 적용
- 2) 사망일시금 = 사망자 × 지급단가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사망인원은 통계청 사망률 적용하여 추정
 - 사망일시금은 전몰군경유족 등의 사망일시금 지급단가 112.7만원으로 가정
- 3) 수송시설 이용요금 면제·할인 = 대상자 × 지원단가
 -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기준 미달자는 2020년 수치를 동일하게 유지
 -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통계청 남자 사망률을 적용하여 추정
 -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는 최근 5년간 연평균상승률을 적용하여 추정
 - 지원단가는 최근 3년간 수송시설별(버스, 철도, 여객선) 이용 정부보조액 현황 자료를 참고하여 추정

2) 수당 승계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중 수당지급 대상자(장애등급 판정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수당을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함
- 개정안에 따른 지원 대상자로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는 평균연령이 44세로 나타나 사망 가능성이 낮다고 보이므로 추계대상에서 제외하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누적 유족 수를 추정한 후, 고엽제 수당을 곱하여 산출한 결과 추계첫해인 2022년 31억원으로 예상됨

□ 개정안에 따른 대상자 및 지급단가와 소요비용은 다음과 같이 추정함

가) 대상자

□ 개정안에 따른 경우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이 지급받던 수당을 본인 사망 시 그 유족이 승계⁶⁾하게 되는데, 본 추계에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사망자 수 및 유족 수는 다음과 같이 추정함

□ (사망자 수) 최근 5년간(2016~2020년)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증가하고 있으나 증감률은 감소추세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연령별 현황자료(2020년 12월 말 기준)에 통계청의 연령별 남자 사망률을 적용하여 고엽제후유의증 사망자 수를 추정함

- 2020년 12월 말 기준,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수는 58,100명, 51,604명, 137명임
- 고엽제후유증환자의 경우 상이등급 판정자(58,100명)는 국가유공자인 전상군경, 공상군경에 등록되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망 시 유족이 보상금 등을 이미 승계 받고 있음
-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는 최근 5년간 증가하고 있어, 추계기간 동안 사망에 따른 유족은 없을 것으로 가정함
- 개정안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604명 중 병급자를 제외한 35,848명이며, 이들의 평균연령은 74세로서 유족은 배우자만 생존한다고 가정하고, 미성년직계비속, 직계존속은 없다고 가정함

6) 동 개정안 제7조의3제5항 후단에서, 수당 및 사망일시금의 지급 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7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조항은 상속 순위에 대해 같은 법 제5조를 다시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부모, 조부모, 미성년 제매(弟妹)까지 승계될 수 있음

〈고엽제후유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추이〉

(단위: 명, %)

		2016	2017	2018	2019	2020	연평균 증가율 (%)
인원수	고엽제후유증	52,575	55,330	57,919	59,473	58,100	2.5
	고엽제후유의증	50,881	51,446	51,706	51,665	51,604	0.4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94	107	119	128	137	9.9
전년대비 증가율 (%)	고엽제후유증		5.2	4.7	2.7	-2.3	
	고엽제후유의증		1.1	0.5	-0.1	-0.1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13.8	11.2	7.6	7.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사망자 추정〉

(단위: 명)

	2022	2023	2024	2025	2026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사망자 수	1,187	1,262	1,338	1,416	1,49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유족 수)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사망으로 수권자가 되는 배우자는 2020년 기준 고엽제수당을 지급받는 전체 고엽제후유의증환자(35,848명) 수에 연령별 유배우자율(통계청)을 곱하여 배우자 수를 구한 후, 이를 부부 연령차이 3세⁷⁾를 고려하여 배치한 후 여기에 통계청의 여자 사망률을 곱하여 연도별 대상자를 추정한 결과 2022년 906명으로 예상됨

7)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배우자 간에는 연령차이가 있을 것인데, 본 추계에서는 통계청의 인구동향 조사 중 『2019년 혼인·이혼 통계(2020.3)』의 혼인연령 차이가 최근 11년간 평균 2.7세로 나타나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과 배우자의 연령 차이는 3세로 가정하여 추정함

- 최근 5년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장애등급별 현황 분포를 보면, 가장 최근인 2020년의 장애등급 분포 비율인 고도 28.3%, 중등도 16.6%, 경도 55.0%를 적용하여 향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연간 사망자도 이와 같은 분포라고 가정하여 추계함

〈평균 초혼 연령차이〉

(단위: 세)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평균
남자	31.6	31.8	31.9	32.1	32.2	32.4	32.6	32.8	32.9	33.2	33.4	32.4
여자	28.7	28.9	29.1	29.4	29.6	29.8	30	30.1	30.2	30.4	30.6	29.7
연령차	2.9	2.9	2.8	2.7	2.6	2.6	2.6	2.7	2.7	2.8	2.8	2.7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2019년 혼인·이혼 통계(2020.3)』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남자 연령별 유배우자율〉

연령	전체인원 (a)	유배우자인원 (b)	유배우자율 (b/a)
합 계	23,876,421	12,147,308	50.9%
15세미만	3,559,471	-	-
15~19세	1,460,008	714	0.0%
20~24세	1,287,157	16,546	1.3%
25~29세	1,534,965	156,842	10.2%
30~34세	1,816,228	791,229	43.6%
35~39세	1,908,119	1,237,750	64.9%
40~44세	2,126,950	1,541,522	72.5%
45~49세	2,131,098	1,657,056	77.8%
50~54세	2,077,081	1,696,103	81.7%
55~59세	1,912,252	1,607,247	84.0%
60~64세	1,340,877	1,154,290	86.1%
65~69세	1,006,014	871,976	86.7%
70~74세	784,163	673,340	85.9%
75~79세	540,654	453,272	83.8%
80~84세	266,497	209,084	78.5%
85세 이상	124,887	80,337	64.3%

자료: 통계청 인구센서스(2015)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사망자의 배우자 누적인원 추정〉

(단위: 명)

	2022	2023	2024	2025	2026
2022	906	892	877	860	841
2023		968	954	939	921
2024			1,023	1,007	989
2025				1,078	1,059
2026					1,178
누적인원	906	1,860	2,854	3,883	4,989

주: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연령별 사망자 수에 통계청의 연령별 유배우자 비율을 곱하여 수당 승계 배우자를 산출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별 현황〉

(단위: 명, %)

		2016	2017	2018	2019	2020
고엽제 후유의 증환자	고도	12,045	11,691	11,375	10,996	10,317
	중등도	4,330	4,854	5,346	5,841	6,063
	경도	21,087	20,830	20,683	20,418	20,059
분포(%)	고도	32.2	31.3	30.4	29.5	28.3
	중등도	11.6	13.0	14.3	15.7	16.6
	경도	56.3	55.7	55.3	54.8	55.0

자료: 국가보훈처(2021)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개정안에 따라 수당을 승계하는 누적 유족인원 추정〉

(단위: 명)

		2022	2023	2024	2025	2026
전년도 배우자			892	1,831	2,805	3,811
당해연도 배우자		906	968	1,023	1,078	1,178
배우자 승계인원 (전년도)	고도		253	518	794	1,079
	중등도		148	305	467	634
	경도		491	1,008	1,544	2,098
배우자 승계인원 (당해연도)	고도	257	274	290	305	334
	중등도	151	161	170	179	196
	경도	499	533	563	593	64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지급단가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고도, 중등도 및 경도로 구분되고, 2021년 현재 장애등급에 따라 지급되는 월 수당액 단가는 489~1,010천원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장애등급별 월수당 지급액 현황〉

(단위: 천원)

		2017	2018	2019	2020	2021	연평균 증가율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	고도	859	902	934	981	1,010	4.1%
	중등도	634	666	689	723	745	4.1%
	경도	416	437	452	475	489	4.1%

자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별표 2]

- 개정안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수당을 승계하여 지급하는 경우, 월 수당액은 다음과 같이 추정함
- 2019년 보훈보상금 예산 각목명세서 기준으로 본인 대비 유족 수당(1인당)은 80%⁸⁾로 추정되므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월 수당액에 80%를 적용한 값으로 가정함. 이때 향후 수당 인상률을 지난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인 4.1%를 적용하여 추정함

8) 전물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1인당 월보상금은 148만원이고, 유족의 보상금은 118만원으로 본인대비 80%로 나타남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승계 수당 추정〉

(단위: 천원)

		2022	2023	2024	2025	2026
현행 수당 (a)	고도	1,052	1,095	1,140	1,188	1,237
	중등도	776	808	841	875	911
	경도	509	530	552	575	599
승계 수당 추정 (b=a×80%)	고도	841	876	912	950	989
	중등도	621	646	673	700	729
	경도	407	424	442	460	47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추가재정소요

- 승계되는 유족 수에 지급 수당액을 적용하여, 고엽제후유의증수당 승계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면 추계첫해인 2022년 3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수당의 유족 승계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2	2023	2024	2025	2026	합 계
배우자 승계인원(전년도) (명, a)	고도		253	518	794	1,079	
	중등도		148	305	467	634	
	경도		491	1,008	1,544	2,098	
배우자 승계인원 (당해연도) (명, b)	고도	257	274	290	305	334	
	중등도	151	161	170	179	196	
	경도	499	533	563	593	648	

		2022	2023	2024	2025	2026	합 계
월 승계수당 (천원, c)	고도	841	876	912	950	989	
	중등도	621	646	673	700	729	
	경도	407	424	442	460	479	
승계수당 소요액 (백만원, $c=a \times c \times 12 + b \times c \times 6$)	고도	1,297	4,100	7,259	10,790	14,792	
	중등도	562	1,772	3,148	4,677	6,405	
	경도	1,220	3,855	6,834	10,156	13,916	
	합계	3,079	9,727	17,240	25,624	35,113	90,784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3) 사망일시금

- 개정안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시금을 지급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2년 13억원을 비롯해 향후 5년간 7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현황) 현행 보훈 관련 법률에 따라, 독립유공자 본인이 사망하는 경우 사망일시금과 사망조위금이 지급되고, 국가유공자 중 신체 희생이 있는 전·공상 군경 본인 및 그 유족이 사망하는 경우에도 사망일시금이 지급되고 있음

9) 사망일시금 지급단가

대상별	지급액(천원)	비고
애국지사(본인)	1,127~3,268	훈격에 따라 차등 지급
애국지사 유족	1,127~2,261	훈격에 따라 차등 지급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자	1,704	-
상이 2급이하 유족연금 비승계자	1,444	-
상이 2급이하 유족연금 승계자	1,127	-
전몰군경유족 등	1,127	-

자료: 국가보훈처(2021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II-1), 115쪽)

- (대상자) 개정안에서는 사망일시금 지급 대상으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경우, 평균 연령이 44세로 나타나 추계기간 동안 사망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되어 추계대상에서 제외함
- (지급단가) 현행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사망일시금 중 전몰군경유족 등에게 지급되는 1,127,000원을 개정안에 따라 지급되는 사망일시금으로 가정하고, 최근 5년간 지급단가는 동결되었던 것을 감안하여 추계 기간 동안 동일하게 유지함
- (소요비용) 추정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연간 사망자 수에 사망일시금을 곱하면,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2년 13억원을 비롯해 향후 5년간 7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사망일시금 지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2	2023	2024	2025	2026	합 계
사망인원 (명, a)	1,187	1,262	1,338	1,416	1,495	
지급단가 (천원, b)	1,127	1,127	1,127	1,127	1,127	
사망일시금 (c=a×b, 백만원)	1,338	1,422	1,508	1,596	1,685	7,54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4) 수송시설 이용지원

가) 대상자

- 개정안에 따른 수송시설 이용지원 대상자는 ① 고엽제후유증 등급기준 미달자, ② 수당을 받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③ 수당을 받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이하 “고엽제환자등”)임
- 고엽제환자등에게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요금을 무료로 제공하거나 할인하고, 국가는 이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며, 개정안에 따른 대상자는 다음과 같이 추정함
- 개정안에 따른 지원 대상은 2020년 12월말 기준으로 고엽제후유증 등급기준 미달자 12,619명과 수당을 지급받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604명,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137명을 합한 64,360명을 추가대상인원으로 보며, 추계기간 동안 다음과 같이 추정함
 - 고엽제후유증 등급기준 미달자는 최근 5년간 증감추세가 뚜렷하지 않아 2020년 12,619명을 동일하게 유지함¹⁰⁾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604명은 통계청 연령별 남자사망률을 적용하여 추정
 -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는 증가추세로 나타나 최근 5년간 연평균증가율 9.9% 적용하여 추정

10) 고엽제후유증 등급기준 미달자는 2016년 24,892명, 2017년 12,570명, 2018년 12,648명, 2019년 12,598명, 2020년 12,619명임

〈고엽제후유(의)증 등록 현황: 2020년〉

(단위: 명)

	고엽제후유증	고엽제후유의증	고엽제후유증 2세
등급자	58,100	51,604	137
등급기준미달자	12,619	-	-

주: 음영표시한 부분이 수송시설 이용지원 대상자

자료: 국가보훈처(2020년 12월말 기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수송시설 이용지원 대상자 추정〉

(단위: 명)

	2022	2023	2024	2025	2026
고엽제후유증등급기준 미달	12,619	12,619	12,619	12,619	12,619
고엽제후유의증	48,290	46,473	44,547	42,508	40,356
고엽제후유증2세	181	199	219	241	265
합 계	61,090	59,291	57,385	55,368	53,24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지원단가

- 현재 수송시설 이용에 대한 지원은 개별 보훈 관련 법률¹¹⁾에 근거하여 독립유공자,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 및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등 초고령 또는 신체장애로 이동에 제약이 있는 애국지사 및 상이 국가유공자에 한하여 이루어지고 있음
- 개정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수송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법 시행령에 규정될 공공기관의 범위에 따라 추계금액의 차이가 클 것으로 예상됨

1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수송시설의 이용지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6조(수송시설의 이용지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8조(수송시설의 이용지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3조(수송시설의 이용지원)에 근거함

- 다만 본 추계에서는, 현재 국가보훈처가 국가유공자 등의 수송시설 이용 시에 해당 사업자에게 보조하고 있는 민영버스, 고속철도 및 내항여객선 이용의 경우에 한하여 추계하고, 그 밖에 국제 여객선이나 항공기 이용의 경우에는 각 사업자가 국가유공자 예우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그 지원내용도 상이하여 자료수집에 한계가 있으므로, 추계대상에서 제외함
- (현황) 국가유공자 등의 최근 3년간(2017~2019년) 민영버스·고속철도·내항여객선 등 수송시설별로 이용지원 대상 국가유공자 현황, 정부보조액 현황 및 1인당 정부보조액은 다음 표와 같음
 - 국가유공자가 시내버스·시외버스·고속버스를 무료 또는 감면 이용하는 경우에는 버스이용 계약(국가보훈처↔전국버스연합회)에 따라 국가보훈처가 전국버스연합회에 보조하고 있음
 - 국가유공자가 고속철도(KTX와 SRT)를 이용하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의 운임정산 협약서」 등에 따라 국가보훈처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고, 그 외 열차(새마을, 무궁화호 및 광역 전철)는 「공익서비스(PSO) 보상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
 - 국가유공자가 내항여객선을 무료 또는 감면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용보호협정서(국가보훈처↔여객선사업자)에 따라 국가보훈처가 여객선사업자에 보조하고 있음

<국가유공자 등 수송시설별 무료 또는 할인 이용액 현황>

	수송시설	실인원 (a, 명)	지원 비용 (b, 백만원)	보조금 (c, 백만원)	연간 1인당 보조금 지원액 (d=c/a, 원)	버스대비 이용비중 (%)
2017	민영버스	119,081	21,190	7,378	61,958	
	고속철도	40,530	7,841	2,359	58,204	34.0
	내항여객선	2,486	105	105	42,237	2.1
2018	민영버스	117,716	20,988	8,116	68,946	
	고속철도	41,397	7,754	2,359	56,985	35.2
	내항여객선	2,351	107	107	45,513	2.0
2019	민영버스	116,579	19,597	9,587	82,236	
	고속철도	40,437	7,688	2,403	59,426	34.7
	내항여객선	2,225	97	97	43,596	1.9
평균	민영버스	117,792	20,592	8,360	71,047	
	고속철도	40,788	7,761	2,374	58,205	34.6
	내항여객선	2,354	103	103	43,782	2.0

주: 1. 대상인원에는 국가유공자인 애국지사, 전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6·18자유상
 이자, 5·18민주부상자가 포함되며, 수송시설 이용시 동반 보호자가 포함되지 아니한 숫자임

2. 민영버스의 지원인원은 실제 이용인원이 산출하기 어려워 감면대상 인원임

자료: 국가보훈처 및 국토교통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수송시설 및 이용지원 대상자별 운임 감면률>

수송시설 종류	지원 대상	지원 내용	비고
철 도	애국지사, 상이국가유공자 5.18민주부상자	연간 6회 무임 7회 이후 50% 할인	애국지사 및 1~2급상이(장해)자 동반보호자1인포함
지 하 철	애국지사, 상이국가유공자 5.18민주부상자	무임	애국지사 및 1급상이(장해)자 동반보호자1인포함

수송시설 종류	지원 대상	지원 내용	비고
고속버스	애국지사, 상이1~5급, 1~7급 5·18부상자	50%	애국지사 및 1급상이(장해)자 동반보호자1인포함
	상이6~7급, 8~14급 5·18부상자	30%	
시내버스	애국지사, 상이국가유공자, 5·18부상자	무임	애국지사 및 1급상이(장해)자 동반보호자1인포함
시외버스 농어촌버스	애국지사, 상이1~5급, 1~7급 5·18부상자	70%	애국지사 및 1급상이(장해)자 동반보호자1인포함
	상이 6~7급, 8~14급 5·18부상자	30%	
내 향 여 객 선	애국지사, 상이국가유공자(1~5급) 5·18민주부상자 (장해1~7등급)	무임	애국지사 및 1급상이(장해)자 동반보호자1인포함
	상이국가유공자(6~7급) 5·18민주부상자 (장해 8~14등급)	50%	
국 내 선 항 공 기	애국지사, 상이국가유공자 5·18민주부상자	50%	
	기타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30%	

자료: 국가보훈처(2021)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수송시설별 지원단가) 고엽제환자등이 국가유공자등의 이용행태와 동일하게 버스·철도·내향여객선 등을 이용한다고 가정하여 예상되는 수송시설별 지원단가는 아래와 같이 추정됨

- (1인당 보조금) 민영버스의 경우 최근 3년간 계속 증가하고 있어 2019년 82,236원을 기준으로 국회예산정책처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고, 고속철도 및 내항여객선은 증감추세가 뚜렷하지 않아 3개년 평균값 58,205원, 43,782원을 기준으로 국회예산정책처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
- (이용인원) 고속철도는 버스 이용 대비 34.6%, 내항여객선은 2.0%를 전체 고엽제한자등에 적용하여 고속철도 및 버스 이용인원으로 추정함

다) 추가재정소요

- 각 수송시설 별로 추정된 대상자에 버스·철도·내항여객선 등 수송시설 별 대상자 및 연간 보조금 지원액을 곱하여 추정한 보조금은 다음과 같음

〈고엽제한자등에 대한 수송시설 이용 지원 시 추가재정소요〉

		2022	2023	2024	2025	2026	합 계
민영 버스	고엽제한자등(명, a)	61,090	59,291	57,385	55,368	53,240	
	1인당 연간 지원액(b, 원)	84,475	85,489	86,600	87,813	89,042	
	소요비용(c=a×b, 백만원)	5,161	5,069	4,970	4,862	4,741	24,802
고속 철도	고엽제한자등(명, d=a×34.6%)	21,155	20,532	19,872	19,174	18,437	
	1인당 연간 지원액(e, 원)	59,790	60,507	61,294	62,152	63,022	
	소요비용(f=d×e, 백만원)	1,265	1,242	1,218	1,192	1,162	6,079
내항 여객선	고엽제한자등(명, g=a×2.0%)	1,220	1,185	1,146	1,106	1,064	
	1인당 연간 지원액(h, 원)	44,783	45,320	45,909	46,552	47,204	
	소요비용(i=g×h, 백만원)	55	54	53	51	50	263
합계 (c+f+i, 백만원)		6,480	6,365	6,240	6,105	5,953	31,143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3. 치료명령 및 보호관찰 대상자 확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1.02.12. 발의)

가. 주요내용

- 치료명령 및 보호관찰 대상 범위 확대

나.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치료명령대상자를 확대하는 등에 필요한 추가재정소요는 2022년 6억 6,500만원, 2026년 7억 5,000만원 등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총 35억 8,900만원(연평균 7억 1,800만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
 - 단,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실시에 따른 재정소요가 제외된 금액으로, 동 재정소요를 포함할 경우 합계는 더 커질 수 있음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2~2026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합계
국비지원 치료비	185	280	284	288	292	1,329
보호관찰관 인건비 등	480	432	441	449	458	2,260
합계	665	712	725	737	750	3,589

다. 재정수반요인

- 치료명령 및 보호관찰 대상 범위 확대
 - 다음의 표와 같이 심신장애인 등으로서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에게도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치료를 받게 하도록 치료명령대상자를 확대

-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은 자비부담이 원칙이나,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9 및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① 기초생활수급자, ② 차상위 계층 ③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따른 위기에 처한 자에게는 국가가 비용을 지원해줄 수 있음
- 따라서 개정안에 따라 치료대상자의 수가 늘어나는 경우 국비 지원 금액이 증가될 수 있음
- 개정안¹⁾에 따라 치료명령을 부과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병과하도록 하고 있어 보호관찰 대상자의 수가 확대될 수 있음

〈치료명령 대상 범위 확대 관련 현행법 및 개정안 비교〉

치료명령 부과 가능자	
현행법	개정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u>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u> 를 받은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u>선고유예·집행유예 또는 금고 이상의 실형</u> 을 받은 자
1. 심신장애인	1. 심신장애인
2. 알코올 중독자	2. 알코올 중독자
3. 마약 중독자	3. 마약 중독자

□ 검사의 치료명령 청구 및 법원의 치료명령 부과 시에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 실시

- 검사가 법원에 치료명령을 청구하거나 법원에서 치료명령을 부과할 때 등에 정신건강의학과 등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함

1)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44조의5(치료명령의 판결 등) ③ 법원은 제1항의 치료를 명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병과하여야 하고, 보호관찰기간은 치료기간으로 한다.

라. 비용추계의 전제

-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에 소요되는 비용은 추계에서 제외
 - 개정안에 따라 검사나 판사 등이 치료명령의 청구 및 부과에 있어 전문의에게 진단이나 감정을 의뢰하는 경우 진단비나 감정료 등의 비용이 발생
 - 그런데 현 시점에서 진단 의뢰 건수 및 구체적인 의뢰 내용 등을 추정하기 어려우므로 전문의의 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추계에서 제외
- 개정안에 따라 늘어나는 치료명령 부과자의 수 및 국비지원 치료비는 현행 치료명령 부과율 및 1인당 국비지원 치료비를 참고하여 추정
 - 개정안에 따라 심신장애인 등으로서 범죄를 저질러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에게도 치료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치료명령 부과자의 수가 늘어날 것임
 - 이에 따라 늘어나는 치료명령 부과자의 수는 심신장애인 등으로서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는 자의 수에 현행 치료명령 부과율²⁾을 곱하여 추정
 - 또한 치료명령 부과자 중 국비가 지원되는 인원 및 지원 금액은 현행 치료 대상자 중 국비가 지원되는 비율 및 1인당 지원 금액을 참고하여 추정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를 적용³⁾
- 개정안 부칙에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것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으로 함

2) 현행 심신장애인 등으로서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받는 자 중 실제 치료명령이 부과되는 자의 비율

3)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소비자물가상승률(CPI)	0.5%	1.0%	1.2%	1.2%	1.3%	1.4%

마. 비용추계 상세 내역

1) 추계의 대상 및 방법

- 추가재정소요의 추계대상은 치료 대상자 중 국비 지원자에 대한 치료 지원비와 보호관찰관 증원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

〈비용추계 산식〉

추가재정소요 = 국비 지원자에 대한 치료 지원비¹⁾ + 보호관찰관 증원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²⁾

1) 국비지원 치료비: 국비 지원자 증가 인원 × 1인당 평균 치료 지원비

2) 보호관찰관 인건비 등: 공무원 인건비 + 기관부담금 + 기본경비 + 자산취득비

2) 국비지원 치료비

- 개정안에 따라 늘어나는 치료 대상자의 수는 현재의 치료명령대상자에게 부과되고 있는 치료명령 부과율 등을 고려하여 추정
 - 현재 심신장애인이거나 마약중독자로서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선고 유예나 집행유예를 받은 자 중 실제 치료명령을 부과 받는 자의 비율은 다음의 표와 같이 각각 54%와 1.2%임

〈현재 치료명령대상자에게 실제 치료명령이 부과되는 비율〉

(단위: 명, %)

구분	치료명령 대상 인원 ¹⁾ (A)	실제 치료명령 부과인원 (B)	실제 치료명령 부과율 (C=B/A)
심신장애인	803명	436명	54%
마약중독자	1,575명	19명	1.2%

주1) 심신장애인 및 마약중독자로서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집행유예를 받은 자(법무부는 알코올 중독자로서 형의 선고유예·집행유예를 받은 자에 대한 통계는 파악하기 어렵고, 알코올 중독자의 경우 심신장애인으로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포함되는 때도 있다고 하므로 알코올 중독자에 대한 통계는 제외함)

자료: 법무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따라서 현재 심신장애인 등으로서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는 인원
에 앞선 치료명령 부과율을 곱하여 추정한 연 평균 치료 대상자 증가인
원은 다음의 표와 같이 1,049명으로 추정됨

〈현재 치료명령대상자에게 실제 치료명령이 부과되는 비율〉

(단위: 명)

구분		최근 3년간 연 평균인원 (A)	현행 치료명령 부과율 (B)	개정안에 따라 늘어나는 치료자 수 (C=A×B)
심신장애인 등으로서 실형을 선고 받는 자	심신장애인	1,902	54%	1,027
	마약중독자	1,819	1.2%	22
합 계		3,721	-	1,049

자료: 법무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또한 현행 치료 대상자의 평균 치료기간은 1년 6개월이므로 이를 고려한 연도별 치료 대상자의 수는 다음의 표와 같이 추정됨

〈연도별 치료 대상자의 수〉

(단위: 명)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치료 대상자의 수	1,049	1,574	1,574	1,574	1,574

자료: 법무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국비지원이 필요한 인원은 연도별 치료인원에 현행 국비지원 비율을 곱하여 추정
 - 현재 치료에 소요되는 경비는 자비 부담이 원칙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는 국가에서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체 치료인원 대비 국비가 지원되는 인원 비율은 15.3%임
 - 따라서 개정안에 따라 늘어나는 치료자 중 국비지원이 필요한 인원은 다음의 표와 같이 추정됨

〈연도별 치료 대상자의 수〉

(단위: 명, %)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연도별 치료인원(A)	1,049	1,574	1,574	1,574	1,574
국비지원인원 비율(B)	15.3	15.3	15.3	15.3	15.3
국비지원 인원 (C=A×B)	161	241	241	241	241

자료: 법무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추가로 소요되는 국비지원 치료비는 증가되는 연도별 국비지원 인원수에 현재의 1인당 평균 지원금액을 곱하여 추정
- 최근 국비지원자에게 지원되는 1인당 평균 치료비는 다음의 표와 같이 111만 8,745원임

〈현행 1인당 평균 치료비 지원금액〉

(단위: 원)

구 분	2018년	2019년	연평균
1인당 평균 지원금액	1,138,089	1,099,400	1,118,745

주: 2020년도의 경우 1인당 평균 치료비 지원금액은 68만원으로 크게 감소하였는데, 이는 코로나바 이러스 확산으로 인하여 치료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치료비가 감소한 것이라고 하므로 2020년도 지원금액은 통계에서 제외함

자료: 법무부

- 따라서 개정안에 따라 증가되는 국비지원 치료비는 늘어나는 치료 대상자 중 국비지원이 필요한 인원 1인당 평균 국비지원 치료비를 곱한 후,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다음의 표와 같이 추정함

〈개정안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국비지원 치료비〉

(단위: 명)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합계
국비지원이 필요한 인원(A)	161	241	241	241	241	1,125
1인당 국비지원 치료비(B)	1,149	1,163	1,178	1,195	1,211	-
전체 국비지원 치료비(C=A×B)	185,023	280,283	283,927	287,901	291,932	1,329,06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3) 보호관찰관 인건비 등

- 증원이 필요한 보호관찰관 인원은 현행 보호관찰관 1인당 관리하는 보호관찰대상자의 수에 개정안에 따라 늘어나는 보호관찰대상자의 수를 고려하여 추정
 - 현재 보호관찰관 1인당 관리하는 보호관찰대상자의 수는 다음의 표와 같이 118명임

〈보호관찰관 1인당 관리하는 보호관찰대상자의 수(2020년말 기준)〉

(단위: 명)

구분	보호관찰소 개수	보호관찰관 수 (A)	보호관찰대상자 수 (B)	1인당 관리대상자 수 (B/A)
보호관찰	57개소	1,658	196,208	118

자료: 법무부

- 그런데, 개정안에 따라 늘어나는 연 평균 보호관찰대상자는 앞선 1,574명⁴⁾ 이므로 증원이 필요한 보호관찰관은 13명(1,574명/118명)으로 추정됨
- 한편, 증원되는 13명은 전국 57개의 보호관찰소에 분산배치 될 것이므로 이들에 대한 사무실은 기존 사무실을 사용함으로써 사무실 리모델링 등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함
- 증원되는 보호관찰관 13명은 9급 공무원으로 신규채용하는 것으로 가정
 - 2021년 검찰직 9급의 봉급(2호봉 기준)과 수당 등⁵⁾을 더한 연간 보수는 2,689만원임

4) 치료명령부와 시 보호관찰을 병과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늘어나는 치료대상자 수와 보호관찰 대상자의 수가 같음

5)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정근수당, 시간 외 근무수당(10시간)

- 이 값에 최근 3년간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1.83%) 및 기관부담금·기본경비 및 자산취득비를 반영한 2022~2026년도의 추가인건비 등은 다음의 표와 같음

〈개정안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국비지원 치료비〉

(단위: 명, 천원)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합계
인건비 (1인당 인건비×13명)	356	362	369	376	383	1,846
기관부담금 ¹⁾	46	47	49	50	52	244
기본경비 ²⁾	22	22	23	23	24	114
자산취득비 ³⁾	56	-	-	-	-	56
합계	480	432	441	449	458	2,260

주: 1)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공무원연금에 대한 기관부담금으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비율⁶⁾ 적용
 2) 2021년도 법무부의 인건비 대비 기본경비 비율인 6.2%를 적용
 3) 국회예산정책처가 산출한 2022년 자산취득비는 1인당 429만원으로, 동년도에 일괄 투입되는 것으로 가정

6) 기관부담금 비율

(단위: %)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건강보험	3.54	3.66	3.77	3.90	4.00
장기요양보험	0.408	0.421	0.434	0.449	0.461
공무원연금	9.00	9.00	9.00	9.00	9.00
합 계	12.95	13.08	13.20	13.35	13.46

4. 동반휴직제도 및 육아휴직: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03.24. 본회의 의결)

가. 주요내용

- 배우자 동반휴직제도 도입 및 단기복무 장교 및 부사관 육아휴직 허용 등

나. 재정수반 요인

- 복무연장자의 연장복무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산입(안 제7조제6항 신설)
 - 개정안¹⁾은 단기복무 장교·부사관이 복무를 연장할 경우 그 연장된 복무기간을 의무복무기간²⁾에 산입함에 따라 복무연장 중 휴직 후 복귀 시 복귀자에 대한 인건비 등의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
- 장성급 장교에 대한 별도정원의 근거규정 신설(안 제16조의2제3항 및 제4항 신설)
 - 개정안은 현재 정원 범위에서 운용하고 있는 장성급 장교에 대해서도 국가공무원과 같이 별도정원의 운용이 가능하도록 함에 따라 승진 인사로 인한 인건비 등의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

1) 동 대안은 2020년 7월 2일 정부가 제출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1341호), 2020년 9월18일 김민기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3007호), 2020년 11월 26일 김병기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5790호) 및 2020년 12월 21일 장제원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6792호)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하여 국방위원회가 2021년 2월 23일 제안한 것임

2) 단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3년(육군 3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출신장교는 6년)이며, 단기복무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은 4년임(「군인사법」 제7조제1항 제4호 및 제7호)

- 복무기간이 연장된 단기복무 장교 및 부사관도 육아휴직 대상에 포함(안 제48조제3항)
 - 개정안은 기존에 여군(단기복무자, 장기복무자 전원)과 장기복무 군인에게만 허용되었던 육아휴직을 연장된 단기복무 남군에게도 허용하는 내용으로 육아휴직 수당 등의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
- 배우자와 동반하는 휴직사유 신설(안 제48조 및 제49조)
 - 개정안은 장기복무 장교, 준사관 및 장기복무 부사관이 외국에서 근무·유학·연수하는 배우자와 동반하여 휴직할 수 있는 ‘배우자 동반 휴직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휴직 대체 인력 인건비 등의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

다. 미첨부 근거규정

-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라. 미첨부 사유

1) 복무연장자의 연장복무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산입(안 제7조제6항 신설)

- 개정안은 단기복무 장교·부사관이 복무를 연장할 경우 그 연장된 복무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함에 따라 복무연장 중 휴직 후 복귀 시 복귀자에 대한 인건비 등의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
 - 개정안은 단기복무자가 연장된 복무기간 중에 휴직하는 경우 해당 휴직기간이 의무복무기간으로 가산되는 내용임

-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개정안으로 인해 복무연장 중 휴직 후 복귀 시 복귀자에 대한 인건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만큼 신규 획득 인력소요가 줄어 들에 따라 추가되는 인건비 소요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
- 이러한 추가재정소요액을 추계하기 위해서는 향후 연간 단기복무자 중 복무연장자 수, 그 중 휴직인원 수, 연중 휴직인원 복귀자 수 및 휴직인원 1인당 인건비 등에 관한 정보가 필요함

〈추가재정소요 산식〉

$$\text{추가재정소요액} = \sum_{t=2022}^{2026} [(\text{연중 휴직인원 복귀자 수}_t \times \text{휴직인원 1인당 복귀자 연간 인건비}_t) - (\text{연중 휴직인원 복귀자 수}_t \times \text{신규 인력 1인당 연간 인건비}_t)]$$

- 그러나 현 시점에서 단기복무 장교·부사관 복무연장자의 연장복무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는 개정안에 따른 대상인원 증가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없어 자료에 근거한 객관적인 추계가 불가능함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인건비 증가액을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2) 장성급 장교에 대한 별도정원의 근거규정 신설 (안 16조의2제3항 및 제4항 신설)

- 현행법은 장성급 장교는 정원에 따라 지정된 직위에 보직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장군인력을 정원 범위 내에서만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은 현재 정원 범위에서 운용하고 있는 장성급 장교에 대해서도 국가공무원과 같이 별도정원의 운용이 가능하도록 함에 따라 승진 인사로 인한 인건비 상승 등의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
 - 장성급 장교에 대해 별도정원 운용 시 파견 등으로 인한 공석 자리에 승진 인사를 통해 새로 장성급 장교를 추가로 보직할 수 있으므로 승진으로 인한 보수 상승분 등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 최근 3년간 장성급 장교의 파견 등 인원 현황은 다음 표와 같음

〈장성급 장교 파견 등 인원 현황: 2018~2020년〉

(단위: 명)

구 분(군인사법시행령 제14조의3)	2018	2019	2020
1. 외국파견 부대의 직위	1	1	1
2.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임시로 채용되는 직위	-	-	-
3. 다른 국가기간에 파견되는 직위	3	3	3
4. 특수목적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조직된 기구의 직위	2	3	3
5. 국방개혁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위	3	2	2
6. 연수 및 교육을 위하여 파견되는 직위	11	6	20
7. 전역준비를 위한 3개월 이내의 임시직위	37	62	47
합 계	57	77	76

주 1. 장성급 장교의 인사는 1년에 2번(전반기, 하반기) 있음

2. 1호 ~ 3호의 3개 직위가 별도정원으로 증가하는 인원임. 4호 ~ 5호는 행정안전부 및 인사혁신처와 협의를 통해 운용이 가능하고, 6호 ~ 7호는 6개월 미만으로 운용되는 직위로 해당사항 없음

자료: 국방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

- 그러나 장성급 장교 파견 등의 인원은 매년 전·후반기 장성급 장교 인사 시 인력운영상 필요한 직위로 매년 파견 등 인원 현황이 불규칙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추계기간 동안 장성급 장교의 파견 등 인원, 파견 당시 계급, 신규 승진으로 인한 보수 상승분 등을 예측하는 것은 어려움

〈추가재정소요 산식〉

$$\begin{aligned} \text{추가재정소요액} = & \sum_{t=2022}^{2026} [(\text{별도정원 장성급 장교 파견 인원}_t \times \text{공석 승진자 1인당 연간} \\ & \text{인건비}_t) - (\text{별도정원 장성급 장교 파견 인원}_t \times \text{공석 승진자 승진 전} \\ & \text{기준 1인당 연간 인건비}_t)] \end{aligned}$$

- 다만, 연수 및 교육을 위하여 파견되는 직위와 전역준비를 위한 3개월 이내의 임시직위는 비교적 단기 파견 직위이므로 이를 별도정원 운용 대상에서 제외하면 개정안에 따라 별도정원으로 보아 운영할 수 있는 장성급 장교 파견 등 인원은 연간 10명 이내로 판단되므로 전체 금액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인건비 증가액을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3) 복무기간이 연장된 단기복무 장교 및 부사관도 육아휴직 대상에 포함 (안 제48조제3항)

- 개정안은 기존에 여군(단기복무자, 장기복무자 전원)과 장기복무 군인에게만 허용되었던 육아휴직을 연장된 단기복무 남군에게도 허용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에 따라 연장복무중인 남군 육아휴직자가 발생하는 경우 육아휴직 수당 등의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
- 군인 육아휴직 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 수당 지급됨
 - 육아휴직 수당(기본): 0~3개월(본봉의 80%/최대 150만원), 4~12개월(본봉의 50%/최대 120만원)
 - 동일자녀 부모 모두 휴직 시(두번째 시행자만 해당): 0~3개월(월봉급액/최대 250만원), 4~12개월(본봉의 50%/최대 120만원)
 - 한부모 휴직 시: 0~3개월(월봉급액/최대 250만원), 4~6개월(본봉의 80%/최대 150만원), 7~12개월(본봉의 50%/최대 120만원)
- 2019년 6월 1일 기준 복무연장 중인 군인은 총 17,254명으로 남군은 15,853명, 여군은 1,401명이며, 복무연장 여군 중 육아휴직한 군인은 178명임

〈복무구분별 육아휴직 군인·군무원 인원 현황(2019년 6월 1일 기준)〉

(단위: 명)

구 분	군 인				군무원(B)	합 계(A+B)
	장기복무자	연장복무자	단기복무자	소 계(A)		
여 성	984	178	58	1,220	249	1,469
남 성	676	-	-	676	75	751
합 계	1,660	178	58	1,896	324	2,220

자료: 국방부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

- 이러한 추가재정소요액을 추계하기 위해서는 향후 남군 연장복무자 15,853명 중 육아휴직 인원 및 휴직인원 1인당 육아휴직 수당 등에 관한 정보가 필요함

〈추가재정소요 산식〉

$$\text{추가재정소요액} = \sum_{t=2022}^{2026} [\text{남군 연장복무자 육아휴직자 수}_t \times \text{휴직인원 1인당 연간 육아휴직 수당}_t]$$

- 그러나 현 시점에서 개정안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복무연장 군인 중 기혼유자녀 남군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가 없고, 육아휴직 기간 만큼 복무기간이 가산됨에 따라 남군 복무연장자 중 육아휴직 희망자 증가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없어 자료에 근거한 객관적인 추계가 불가능함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육아휴직 수당 증가액을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4) 배우자와 동반하는 휴직사유 신설(안 제48조 및 제49조)

- 개정안은 장기복무 장교, 준사관 및 장기복무 부사관이 외국에서 근무·유학·연수하는 배우자와 동반하여 휴직할 수 있는 ‘배우자 동반 휴직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휴직 대체 인력 인건비 등의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

- 개정안은 공무원에게만 허용되었던 배우자와 동반하는 휴직 사유를 군인에게도 신설하는 내용으로 봉급과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지 않음
 - 다만, 휴직자를 대체할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추가될 수 있으나, 이는 휴직자에게 별도의 봉급과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실질적인 추가재정소요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
- 이러한 추가재정소요액을 추계하기 위해서는 향후 연간 배우자 동반 휴직 군인 수, 휴직 대체인력 1인당 인건비 등에 관한 정보가 필요함

〈추가재정소요 산식〉

$$\text{추가재정소요액} = \sum_{t=2022}^{2026} [\text{배우자 동반휴직 군인 수}_t \times \text{휴직 대체인력 1인당 연간 인건비}_t]$$

- 그러나 현 시점에서 배우자 동반휴직 제도 도입에 따른 대상인원 증가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없어 자료에 근거한 객관적인 추계가 불가능함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휴직 대체 인력 인건비 증가액을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VI 안전 · 행정분야

1. 보험목적물 대상 확대: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12.15. 발의)

가. 주요내용

- 보험목적물 대상에 소기업 사업장의 건축물과 시설물 추가

나. 비용추계 결과

- 보험목적물에 소기업 사업장의 건축물과 시설물을 추가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2년 47억 4,700만원, 2026년 50억 400만원 등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총 243억 5,700만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

〈개정안에 따른 비용추계 결과: 2022~2026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합계
소기업 업체 수 (A, 개소)	10,148	10,148	10,148	10,148	10,148	-
평균 지원비용(B, 원)	467,793	473,406	479,561	486,275	493,082	-
추가재정소요 (A×B, 백만원)	4,747	4,804	4,867	4,935	5,004	24,357

다. 재정수반요인

- 보험목적물 대상에 소기업 사업장의 건축물과 시설물 추가
 - 풍수해보험이 담보할 수 있는 보험의 목적물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¹⁾에 따른 소기업이 운영하는 건축물과 시설물을 추가
 - － 현행법에 따라 풍수해보험료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있어 개정안에 따라 보험목적물 대상이 확대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 예상

라. 비용추계의 전제

- 소상공인을 제외한 소기업을 대상으로 추계
 - 소상공인은 상시근로자 5~10인 미만의 소기업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소기업 업체 수에는 소상공인이 포함되어 있음
 - 다만, 소상공인은 현행법에 따라 보험목적물에 이미 포함되어 있어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본 추계에서는 소상공인을 제외한 소기업을 대상으로 추계(이하에서 ‘소기업’은 소상공인을 제외한 소기업을 뜻함)

- 개정안에 따른 소기업의 풍수해보험 가입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율은 소상공인의 풍수해보험 가입 사례를 참고하여 추정
 - 소상공인 상가 및 공장은 현행법에 따라 보험목적물에 포함되어 있어 풍수해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고 있음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를 적용²⁾
- 개정안 부칙에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것을 고려하여, 추계 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으로 함

마. 비용추계 상세 내역

1) 추계의 대상 및 방법

- 추가재정소요의 추계대상은 소기업 사업장의 건축물과 시설물에 대하여 풍수해보험료를 지원하는 비용

〈비용추계 산식〉

$$\text{추가재정소요} = \text{풍수해보험 가입 소기업 업체 수}^{1)} \times \text{평균 지원 비용}_t^{2)}$$

이때, t 는 추계연도(2022~2026년)

2)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소비자물가상승률(CPI)	0.5%	1.0%	1.2%	1.2%	1.3%	1.4%

- 1) 풍수해보험 가입 소기업 업체 수는 연간 10,148개소로 추정되고 추계기간 동안 동일한 것으로 가정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소기업(소상공인 제외) 업체 수는 454,059개소이고, 이 중 풍수해보험 가입이 필요한 업체 수는 202,964개소(업체 수 중 44.6%)로 추정되지만 가입률 5%(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률)를 적용하면 10,148개소
- 2) 평균 지원비용_t = 평균 지원비용_{t-1}^{a)} × (1 + 소비자물가상승률_t^{b)})
 - a) 평균 지원비용은 2021년 기준 462,246원으로 추정
 ※중소벤처기업부 자료에 따르면, 소기업(소상공인 제외)의 평균 매출액은 소상공인 대비 6배인 점을 고려하여 풍수해보험료도 소상공인 대비 6배 높은 것으로 가정(2021년 기준 소상공인 풍수해보험료는 평균 130,578원(행정안전부 2021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 참고)이므로 소기업 풍수해보험료는 783,468원으로 추정)
 ※행정안전부의 소상공인 풍수해보험료에 대한 지원 비율은 59%(국가 50%, 지방 9%)이므로 462,246원(=783,468원×59%)
 - b)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적용

2) 소기업 풍수해보험료 지원

- 개정안에 따라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소기업 업체 수는 연간 10,148개소로 추정
 -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소기업 업체 수는 454,059개소³⁾
 - 소기업 중에 침수 피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풍수해보험 가입이 필요한 업체 수는 44.9%⁴⁾에 해당하는 202,964개소로 추정

3) 소상공인은 상시근로자 5~10인 미만의 소기업을 말하기 때문에 통계청의 소기업 업체 수에는 소상공인 업체수가 포함되어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업체 수는 소기업 3,690,297개소, 소상공인 3,236,238개소이다. 소상공인은 이미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므로 이들을 제외한 소기업 454,059개소(=3,690,297개소-3,236,238개소)이 개정안에 따라 풍수해보험 가입이 가능해짐

4) 행정안전부 2021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소상공인 업체 중 풍수해보험 가입이 필요한 업체 비율이 44.9%(=1,446,495개소 ÷ 3,236,238개소)로 추정

- 여기에 풍수해보험 가입률을 5%⁵⁾로 가정하여 적용하면, 개정안에 따라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는 소기업 업체 수는 10,148개소로 추정되며 추계 기간 동안 동일한 것으로 가정

□ 평균 지원비용은 2022년 467,793원, 2026년 493,082원으로 추정

- 중소벤처기업부 자료에 따르면, 소기업(소상공인 제외)의 평균 매출액은 소상공인 대비 6배인 점을 고려하여 풍수해보험료도 소상공인 대비 6배 높은 것으로 가정
- 2021년 기준 소상공인 풍수해보험료는 평균 130,578원(행정안전부 2021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 참고)이므로 개정안에 따라 소기업 풍수해보험료는 783,468원으로 추정
- 행정안전부의 소상공인 풍수해보험료에 대한 지원 비율은 59%(국가 50%, 지방 9%)이므로 평균 지원비용은 2021년 기준 462,246원(=783,468원×59%)
- 추계기간 동안 평균 지원비용은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따라 상승

〈풍수해보험료 평균 지원비용 추정〉

(단위: 원)

구 분	2022	2023	2024	2025	2026
풍수해보험료 평균 지원비용	467,793	473,406	479,561	486,275	493,08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5) 행정안전부 2021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소상공인 업체 중 풍수해보험 가입률로 5%를 적용하고 있음. 이 가입률은 정책적 목표로 설정한 것이며, 소상공인의 풍수해보험 가입 실적과 다를 수 차이가 있으며, 추후에 가입 실적과 관련한 자료가 축적되면 실제 가입률을 활용할 예정

2. 소방공무원 예방접종 실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20.9.28. 발의)

가. 주요내용

- 소방공무원 예방접종 실시

나. 비용추계 결과

- 소방공무원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1년 23억 5,900만원, 2025년 11억 2,300만원 등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총 63억 2,500만원(연평균 12억 6,500만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

〈개정안에 따른 비용추계 결과〉

(단위: 백만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합계
A형간염	874	66	71	78	85	1,174
B형간염	137	10	11	12	13	183
독감	681	742	808	881	960	4,072
파상풍	667	50	55	59	65	896
합계	2,359	868	945	1,030	1,123	6,325

다. 재정수반요인

□ 소방공무원 예방접종 실시

-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감염병으로 인한 소방활동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에게 필요한 예방접종을 실시
 - － 소방청에 따르면, 현재 일부 시·도에서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독감 등의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시·도 예방접종 비용은 기편성된 다른 사업 예산(소방공무원 건강검진 예산)을 활용
 - － 따라서 개정안에 따라 소방공무원에게 감염병 대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 예상

라. 비용추계의 전제

- 소방공무원에게 A형간염, B형간염, 독감, 파상풍 등 4종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¹⁾
 - A형간염 및 B형간염은 항체검사 후 음성일 경우 예방접종이 가능하므로 항체검사 비용이 소요될 수 있으나, 소방청에서 실시하는 특수건강검진이나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직장인 건강검진 등을 통하여 A형간염 및 B형간염 항체 보유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항체검사 비용은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
- 예방접종은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백신비용만 소요되며 예방접종 시행비용은 발생하지 않음

1) 「성인 예방접종 가이드」(질병관리본부, 2012.11) 및 소관 부처의 의견 참고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를 적용²⁾
- 개정안 부칙에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것을 고려하여, 추계 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으로 함

마. 비용추계 상세 내역

1) 추계의 대상 및 방법

- 추가재정소요의 추계대상은 전체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비용

〈비용추계 산식〉

$$\text{추가재정소요} = \sum_t \sum_i (\text{대상자 수}_{i,t}^{1)}) \times 1\text{인당 백신비용}_{i,t}^{2)})$$

이때, t 는 추계연도(2021~2025년), i 는 항목(1=A형간염, 2=B형간염, 3=독감, 4=파상풍)

1) 대상자 수는 예방접종 항목별로 상이

- A형간염·B형간염: 항체가 음성인 경우에만 예방접종 실시. 추계기간 첫해인 2021년도에는 전체 소방공무원 수, 2022년도부터는 신규 소방공무원 수의 각각 20%
- 독감: 매년도 전체 소방공무원 수와 동일
- 파상풍: 파상풍은 10년에 1회 실시하므로 추계기간 첫해인 2021년도에는 전체 소방공무원 대상으로, 2022년도부터는 신규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

※소방공무원 수는 추계기간 동안 최근 5년(2015~2019년) 평균 증가율 7.4%에 따라 증가

2)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소비자물가상승률(CPI)	0.5%	1.0%	1.2%	1.2%	1.3%	1.4%

- 2) 1인당 백신비용 = 1인당 백신비용_{*i, t-1*}^{a)} × (1 + 소비자물가상승률_{*t*}^{b)})
- a) 2020년 기준 A형 간염 66,760원(2회 접종), B형 간염 10,480원(3회 접종),
독감 10,410원, 파상풍 10,190원(질병관리청 자료)
- b)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적용

2) 소방공무원 예방접종 실시

- 소방공무원 수는 추계기간 동안 최근 5년(2015~2019년) 평균 증가율 7.4%에 따라 증가하고 신규 소방공무원 수는 전년대비 증가한 인원으로 가정
- 소방통계연보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체 소방공무원 수는 55,964명

〈소방공무원 수 추정〉

(단위: 명)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전체 소방공무원	64,553	69,330	74,460	79,971	85,888
신규 소방공무원	-	4,777	5,130	5,511	5,917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예방접종 항목별로 대상자 수에 차이가 있는데 A형간염과 B형간염은 항체가 음성인 경우에만 접종하고 독감은 전체 소방공무원, 파상풍은 10년에 1회 접종
- A형간염 및 B형간염은 항체가 음성인 경우에만 예방접종이 필요하므로, 추계기간 첫해인 2021년도에는 전체 소방공무원 수, 2022년도부터는 신규 소방공무원 수의 각각 20%

- 독감은 전체 소방공무원 대상으로 매년 1회 실시하고, 파상풍은 10년에 1회 실시하므로, 추계기간 첫해인 2021년도에는 전체 소방공무원 대상으로, 2022년도부터는 신규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

〈예방접종 대상 소방공무원 수 추정〉

(단위: 명)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A형간염	12,911	955	1,026	1,102	1,183
B형간염	12,911	955	1,026	1,102	1,183
독감	64,553	69,330	74,460	79,971	85,888
파상풍	64,553	4,777	5,130	5,511	5,917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1인당 백신비용³⁾은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예방접종비용 공고(2020.9.14.)³⁾를 참고하고, 추계기간 동안 소비자 물가상승률 적용

〈1인당 백신비용 추정〉

(단위: 원)

구 분	2021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A형간염	67,695	68,642	69,603	70,647	71,707
B형간염	10,627	10,775	10,926	11,090	11,257
독감	10,556	10,704	10,853	11,016	11,181
파상풍	10,333	10,477	10,624	10,783	10,94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3) A형간염은 6~12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 B형간염은 0, 1, 6개월 일정으로 3회 접종하여야 하므로, 동 예방접종의 경우 2년에 걸쳐 실시할 수 있으나, 본 추계에서는 해당 연도에 예방접종을 모두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예방접종 비용 단가 중 A형간염은 2회 접종 비용, B형간염은 3회 접종 비용임

3.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01.22. 발의)

가. 주요내용

- 소방안전교부세율을 60%로 상향

나. 비용추계 결과

- 소방안전교부세율을 60%로 상향하는 경우 추가 지방재정수입은 2022년 1,329억원, 2026년 4,648억원 등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총 1조 2,108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추계

〈개정안에 따른 비용추계 결과〉

(단위: 억원)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합계
소방안전 교부세율 인상에 따른 지방재정 수입 변화	소방안전 교부세 증가분(①)	3,052	3,025	2,998	2,972	2,946	14,993
	보통·특별교 부세 감소분(②)	-587	-582	-577	-572	-567	-2,885
	합 계(③=①+②)	2,465	2,443	2,421	2,400	2,379	12,108

다. 재정수반요인

-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
 -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을 현행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45%에서 60%로 상향 조정

라. 비용추계의 전제

- 국회예산정책처의 가장 최근 내국세수 전망(2020.12)¹⁾을 바탕으로 지방교부세율 인상에 따른 이전재원 증가분을 추정
- 개정안 부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이 법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으로 함

마. 비용추계 상세 내역

1) 추계의 대상 및 방법

- 개정안의 추계 대상은 소방안전교부세율 상향 조정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의 증가분과 보통·특별교부세의 감소분임

〈비용추계 산식〉

$$\text{추가재정소요} = \sum_t (\text{소방안전교부세 증가액}_t^{1)}) - \text{보통·특별교부세 감소액}_t^{2)})$$

이때 t는 추계연도(2022~2026년)

$$1) \text{소방안전교부세 증가액: } \sum_t (\text{소방안전교부세 재원}_t^{1)}) \times \text{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분}_t)$$

• 소방안전교부세 재원: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

• 개별소비세 수입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적용

$$2) \text{보통·특별교부세 감소액: } \sum_t (\text{담배 대상 개별소비세}_t^{1)}) \times \text{소방안전교부세 인상분}_t \times \text{보통교부세율}_t)$$

1) 2020년 세법 개정안을 반영

2) 소방안전교부세 증가액 - (지방재정 증가)

- 개정안은 소방안전교부세율을 현행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45%에서 2022년에 60%로 인상
- 국회예산정책처의 재정전망에 따르면 개정안의 대상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수입은 2022년 2조 346억원, 2026년 1조 9,637억원 등으로 전망
- 소방안전교부세 재원에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률을 곱하여 소방안전교부세 증가분을 산출

〈소방안전교부세 증가분: 2022~2026년〉

(단위: 억원)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개별소비세 담배분(①)	20,346	20,166	19,988	19,812	19,637
소방안전교부세 인상률(%), (②)	15	15	15	15	15
소방안전교부세 증가분(③=①×②)	3,052	3,025	2,998	2,972	2,94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3) 보통·특별교부세 감소액 - (지방재정 감소)

- 현행 보통·특별교부세 재원은 내국세 총액에서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45%를 제외한 금액의 19.24%임
- 개정안에 따라 내국세 총액에서 제외하는 개별소비세 담배분이 2022년 60%로 인상됨에 따라 보통·특별교부세 재원이 감소

- 국회예산정책처의 재정전망에 따르면 개정안의 대상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수입은 2022년 2조 346억원, 2026년 1조 9,637억원 등으로 전망
 - 현행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은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45%임
 - 개정안은 소방안전교부세율을 2022년부터 60%로 인상
-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분에 보통교부세율(19.24%)을 곱하여 보통·특별교부세 감소분을 산출

〈보통·특별교부세 감소분: 2022~2026년〉

(단위: 억원)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개별소비세 담배분(①)	20,346	20,166	19,988	19,812	19,637
소방안전교부세 인상률(%), (②)	15	15	15	15	15
보통·특별교부세 감소분 [③=①×②×19.24%(지방교부세율)]	-587	-582	-577	-572	-567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021 법안 비용추계 이해와 사례 II

법안 비용추계 사례

제2장 수입법안



I 소득세 분야

1. 월세 세액공제율 인상: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02.03. 발의)

가. 주요내용

- 월세 세액공제율 인상
 - 근로소득자의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경우 현행 10%에서 20%로, 총급여액 5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 현행 12%에서 24%로 인상

나. 비용추계 결과

- 월세세액공제의 공제율을 상향조정함에 따라 2023년 1,855억원, 2027년 3,607억원 등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13,294억원(연평균 2,659억원)의 소득세 수입 감소 예상

〈개정안에 따른 비용추계 결과〉

(단위: 억원)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합계	연평균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 상향	-1,855	-2,191	-2,587	-3,055	-3,607	-13,294	-2,659

다. 재정수반요인

- 월세 세액공제율 인상
- 근로소득자의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경우 현행 10%에서 20%로, 총급여액 5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 현행 12%에서 24%로 인상함에 따라 소득세수의 감소가 예상됨

〈월세세액공제 제도 현행법 및 개정안 비교〉

제도	현행	개정안
자격조건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자 제외)	현행과 같음
공제방식	1년간 월세액의 10%	1년간 월세액의 20%
	1년간 월세액의 12% (총급여액 5천5백만원 이하인 자, 다만,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인 자 제외)	1년간 월세액의 24% (현행과 같음)
한도	750만원	850만원

라. 비용추계의 전제

- 개정안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법 시행 이후 월세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 2022년 귀속소득에 대한 세수효과는 2023년부터 발생(징수기준)
 - － 근로소득세 세수효과는 2022년 귀속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시행되는 2023년에 발생
- 세수 효과는 가장 최근 실적인 국세통계연보의 2019년 귀속 근로소득연말정산 신고현황 자료를 이용하여 추계

- 향후 5년간 세수효과는 최근 월세 세액공제액 증가율의 둔화추세를 반영하여 2018~2019년 월세 세액공제액 증가율(18.1%)을 따를 것으로 가정
 - 최근 월세 세액공제액 증가율 둔화 추이를 감안하여 2019년 증가율을 따를 것으로 가정
 - 월세 세액공제액 증가율(%): ('16) 23.5 →('17) 23.6 →('18) 25.1 →('19) 18.1
- 월세 세액공제율 인상에 따른 행태변화는 반영하지 않음

마. 비용추계 상세 내역

1) 추계의 대상 및 방법

- 국세통계연보 상의 1인당 월세 세액공제 공제대상금액에 공제율 인상분(12%p, 10%p)을 적용한 후, 세액공제 인원수를 곱하여 2019년 기준 세수효과 추계
 - 세수 효과는 가장 최근 실적인 국세통계연보의 2019년 귀속 근로소득연말 정산 신고현황 자료를 이용하여 추계
 - 총급여구간별 월세세액공제 인원, 1인당 평균 공제대상금액 및 세액공제 금액 자료 이용
 - 개정안에 따라 소득세의 감소가 예상되므로 결정세액이 있는 자들을 대상으로 추계
 - 개정안에 따른 총급여구간별 1인당 추가 세액공제액이 현행 기준 1인당 결정세액 보다 클 경우 결정세액만큼 세액공제 받는 것으로 가정
 - 현행 기준 총급여구간별 1인당 평균 월세세액공제 대상 금액(70만원~380

만원)이 공제한도(750만원)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공제한도 100만원 인
상으로 인한 추가 세수효과는 없는 것으로 가정

2) 상세 내역

- (제도 개요)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¹⁾인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자 제외)에 대하여 1년간 월
세액(한도 750만원)의 10~12%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
로서 2014년 신설
- 총급여액이 5천5백만원(종합소득 4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 세액공제율
12%, 총급여액이 5천5백만원 초과~7천만원(종합소득 6천만원) 이하인
경우 세액공제율 10% 적용
- (감면 실적) 2014~2019년 동안 월세세액공제 적용 인원은 연평균
20% 증가, 세액공제액은 연평균 25.1% 증가

〈월세 세액공제 감면 실적〉

(단위: 명, 백만원, %)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연평균
적용인원	214,158	269,855	320,665	383,267	453,336	532,365	391,898
(증가율)		(26.0)	(18.8)	(19.5)	(18.3)	(17.4)	(20.0)
세액공제액	50,256	66,128	81,111	99,577	130,433	154,022	106,254
(증가율)		(31.6)	(22.7)	(22.8)	(31.0)	(18.1)	(25.1)

주: 결정세액이 없는 자를 포함한 기준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1) 세대주가 월세 세액공제 및 주택자금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 (추계 결과)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 인상에 따른 세수 감소액은 2019년 기준 955억원으로 예상됨
- 총급여액 1,000~1,500만원 이하 구간과 1,500~2,000만원 구간에서 1인당 공제세액 추가분이 각각 14만원과 11만원으로 1인당 결정세액(1만원 및 6만원)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1인당 결정세액을 해당 구간의 1인당 세액공제액 추가분으로 적용
 - 현행 기준 총급여구간별 1인당 평균 월세세액공제 대상 금액(70만원~380만원)이 공제한도(750만원)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공제한도 100만원 인상으로 인한 추가 세수효과는 없는 것으로 가정

〈월세 세액공제율 인상에 따른 세수효과: 2019년 기준〉

(단위: 명, 백만원, %)

총급여 규모	현행			개정 후			
	인원	1인당 공제 대상금액	1인당 세액공제 금액 ¹⁾	1인당 세액공제 추가 대상금액	1인당 결정 세액	1인당 세액공제 추가금액	총 세수변화
	A	B	$C=B \times 10 \sim 12\%$	$D=B \times 10 \sim 12\%_p$	E	$F = \min(D, E)$	$G=F \times A$
합계	268,165	3.1	0.36	0.36	3.4	-	-95,455
1천만 이하	-	-	-	-	0.9		
1.5천만 이하	7	0.7	0.14	0.14	0.01	0.01	-0
2천만 이하	827	0.9	0.11	0.11	0.06	0.06	-53
3천만 이하	18,374	1.4	0.16	0.16	0.19	0.16	-2,982
4천만 이하	70,807	2.7	0.32	0.32	0.64	0.32	-22,986
4.5천만 이하	47,602	3.2	0.38	0.38	1.15	0.38	-18,200
5천만 이하	42,674	3.3	0.40	0.40	1.52	0.40	-17,117
6천만 이하	58,206	3.5	0.39	0.39	2.16	0.39	-22,772
8천만 이하	29,668	3.8	0.38	0.38	3.76	0.38	-11,345

주: 1) 결정세액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

- 향후 5년간 세수효과는 최근 월세 세액공제액 증가율 둔화 추이를 감안하여 2019년 증가율(18.1%)을 따를 것으로 가정

〈2016~2019년 월세세액공제액 증가 추이〉

(단위: 백만원,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16~2019 평균
월세세액공제액 ¹⁾	52,264	64,621	80,873	95,492	73,313
(증가율)	(23.5%)	(23.6%)	(25.1%)	(18.1%)	(22.6%)

주: 1) 결정세액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소득세법 일부개정 법률안」 (2021.02.03. 발의)

가. 주요내용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인상하고, 공제한도를 현행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인상

나. 비용추계 결과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소득공제율을 인상함에 따라 2023년 639억원, 2027년 1,294억원 등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4,689억원 (연평균 938억원)의 소득세 수입 감소 예상

〈개정안에 따른 비용추계 결과〉

(단위: 억원)

	2023	2024	2025	2026	2027	합계	연평균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율 인상	-639	-762	-909	-1,085	-1,294	-4,689	-938

다. 재정수반요인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인상하고, 공제한도를 현행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인상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제도 현행법 및 개정안 비교〉

제도	현행	개정안
자격조건	무주택 세대주 (세대주가 주택자금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현행과 같음
공제방식	연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	연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50%
한도	300만원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금액과의 합계액 기준)	400만원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금액과의 합계액 기준)

라. 비용추계의 전제

- 개정안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법 시행 이후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 2022년 귀속소득에 대한 세수효과는 2023년부터 발생(징수기준)
 - － 근로소득세 세수효과는 2022년 귀속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시행되는 2023년에 발생
- 향후 5년간 세수효과는 2014~2019년 동안 결정세액 있는 자의 주택 임차차입금 공제금액 연평균 증가율(19.3%)을 따를 것으로 가정
-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확대에 따른 행태변화는 반영하지 않음

마. 비용추계 상세 내역

1) 추계의 대상 및 방법

- 총급여(종합소득) 규모별로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율 인상 전/후의 1인당 과세표준에 한계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1인당 결정세액 감소분을 산출한 후 적용 인원을 곱한 값을 합산하여 총 세수감소분 추계
 - 총급여규모별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적용자의 인원, 공제금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결정세액 자료 이용
 - 현행 공제율 기준 1인당 공제금액을 기준으로 공제율 확대(10%p)에 따른 추가 공제금액 산정
 - 개정안에 따라 소득세의 감소가 예상되므로 결정세액이 있는 자들을 대상으로 추계
 - 개정안에 따른 총급여구간별 1인당 추가 세액공제액이 현행 기준 1인당 결정세액 보다 클 경우 결정세액만큼 세액공제 받는 것으로 가정

2) 상세 내역

- (제도 개요)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주¹⁾인 근로소득자가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하는 경우 그 금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제도

1) 세대주가 월세 세액공제 및 주택자금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 다만, 주택청약저축에 대한 소득공제금액과 합산하여 300만원 한도 적용

$$\text{소득공제금액} = \text{Min}\{(\text{주택청약저축 납입액} + \text{국민주택규모의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times 40\%, 300\text{만원}\}$$

- (감면 실적) 2015~2019년 동안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적용 인원은 연평균 15.2% 증가, 공제금액은 연평균 15.5% 증가
 - 적용 인원은 증가하는 추세이며, 1인당 공제액의 변화는 크지 않음

〈주택임차차입금 공제 인원 및 공제 금액: 2014~2019년〉

(단위: 명, 백만원, %)

	2015	2016	2017	2018	2019	연평균
적용인원	434,743	476,724	525,604	623,775	766,302	565,430
(증가율)	(11.7)	(9.7)	(10.3)	(18.7)	(22.8)	(15.2)
공제금액	666,704	738,449	818,126	984,064	1,187,580	878,985
(증가율)	(18.1)	(10.8)	(10.8)	(20.3)	(20.7)	(15.5)
1인당 공제액	1.5	1.5	1.6	1.6	1.5	1.6
(증가율)	(5.8)	(1.0)	(0.5)	(1.4)	(-1.8)	(0.3)

주: 결정세액이 없는 자를 포함한 기준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주택임차차입금 공제 적용자(56.8만명) 중 주택청약저축 공제 적용자는 약 20%(11.5만명)이며, 두 공제금액의 합계액은 0.8~2.9백만원 수준

〈주택임차차입금 공제 현황, 2019년 귀속〉

(단위: 명, 백만원)

총급여구간	주택임차차입금 공제					1인당 총공제 금액 ²⁾
	공제 인원	공제 금액 (1인당)	과세 표준 (1인당)	결정 세액 (1인당)	주택청약 저축 공제금액 ¹⁾ (1인당)	
총 계	568,094	1.6	29.5	2.6	0.4	1.7
1천만원이하	-	-	-	-	-	-
1.5천만원 이하	3	1.3	3.5	0.0	0.00	1.3
2천만원 이하	2,158	0.8	5.5	0.0	0.02	0.8
3천만원 이하	53,462	1.1	9.5	0.1	0.05	1.1
4천만원 이하	111,153	1.2	15.8	0.4	0.09	1.3
4.5천만원 이하	68,407	1.4	20.2	0.9	0.10	1.5
5천만원 이하	67,289	1.6	23.5	1.3	0.11	1.7
6천만원 이하	103,886	1.8	28.7	1.9	0.11	1.9
8천만원 이하	102,526	2.0	40.0	3.6	0.07	2.1
1억원 이하	35,619	2.2	57.1	7.0	0.00	2.2
2억원 이하	21,845	2.3	89.6	15.5	0.00	2.3
3억원 이하	1,274	2.5	197.4	53.5	0.00	2.5
5억원 이하	391	2.6	323.6	102.3	0.00	2.6
10억원 이하	72	2.7	573.9	202.5	0.00	2.7
10억원 초과	9	2.9	1,489.4	587.7	0.00	2.9

주: 1)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적용자의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금액

2)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적용자의 주택임차차입금 공제금액과 주택청약저축 공제금액의
합계액

1. 결정세액이 있는 자에 대한 주택임차차입금 공제 내역

자료: 국세청

- (추계 방법) 2019년 기준 세수효과를 추계한 후 주택임차차입금 소득 공제액 연평균 증가율을 적용하여 개정 후 5년간의 세수효과 추계
-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확대에 따른 세수 감소액은 2019년 기준 315 억원으로 예상됨
 - － 개정안에 따른 총급여구간별 주택임차차입금과 주택청약저축의 소득공제금액 합계액이 개정안의 공제한도(400만원)를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확대에 따른 세수효과, 2019년 귀속>

(단위: 백만원)

총급여구간	1인당							세수효과 H=G×인원 ³⁾
	현행 공제 금액 ¹⁾	추가 공제 금액 ²⁾	총 공제 금액	현행 과세 표준	개정안 과세 표준	산출 세액 변동분	결정 세액 변동분	
	A	B	C=A+B	D	E=D-B	F	G	
총 계	1.7	-	-	-	-	-	-	-31,535
1천만원 이하	-	-	-	-	-	-	-	-
1.5천만원 이하	1.3	0.33	1.7	3.5	3.2	-0.02	-0.01	0
2천만원 이하	0.8	0.19	1.0	5.5	5.4	-0.01	-0.01	-14
3천만원 이하	1.1	0.27	1.4	9.5	9.2	-0.02	-0.01	-528
4천만원 이하	1.3	0.30	1.6	15.8	15.5	-0.05	-0.03	-3,391
4.5천만원 이하	1.5	0.36	1.9	20.2	19.9	-0.05	-0.04	-2,673
5천만원 이하	1.7	0.39	2.1	23.5	23.1	-0.06	-0.05	-3,047
6천만원 이하	1.9	0.44	2.3	28.7	28.3	-0.07	-0.05	-5,542
8천만원 이하	2.1	0.51	2.6	40.0	39.5	-0.08	-0.07	-6,722
1억원 이하	2.2	0.55	2.8	57.1	56.5	-0.13	-0.13	-4,704
2억원 이하	2.3	0.59	2.9	89.6	89.0	-0.21	-0.21	-4,483
3억원 이하	2.5	0.63	3.2	197.4	196.8	-0.24	-0.24	-305
5억원 이하	2.6	0.65	3.3	323.6	323.0	-0.26	-0.26	-102
10억원 이하	2.7	0.68	3.4	573.9	573.2	-0.28	-0.28	-20
10억원 초과	2.9	0.72	3.6	1489.4	1488.6	-0.32	-0.32	-3

주: 1) 주택임차차입금 공제금액과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 합산 금액

2) 주택임차차입금 공제율 확대(10%p)로 인한 추가 공제 금액

3) 총급여구모별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적용자 총 568,094명

자료: 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향후 5년간 세수효과는 2014~2019년 동안 결정세액 있는 자의 주택임차차입금 공제금액 연평균 증가율(19.3%)을 따를 것으로 가정

〈2016~2019년 결정세액 있는 자의 주택임차차입금 공제액 증가 추이〉

(단위: 백만원,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16~2019 평균
주택임차차입금 공제액 ¹⁾	525,130	604,850	736,768	923,523	697,568
(증가율)	(14.9)	(15.2)	(21.8)	(25.3)	(19.3)

주: 1) 결정세액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3.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율 인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2020.07. 23. 발의)

가. 주요내용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율 인하 등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율을 현행 대비 60% 인하고, 2019년 소득분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2019년 소득분에 한하여 기납부가산세를 환급

나. 비용추계 결과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율을 인하하고 2019년 소득분에 대한 기납부 가산세를 환급할 경우, 2020년 15억원, 2024년 18억원 등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총 87억원(연평균 17억원)의 소득세 수입 감소 예상

〈개정안에 따른 비용추계 결과〉

(단위: 억원)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누적	연평균 ¹⁾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율 인하	-	-18	-18	-18	-18	-72	-18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환급	-15	-	-	-	-	-15	-15
합 계	-15	-18	-18	-18	-18	-87	-17

주: 1) 세수효과가 발생한 기간 동안의 연평균 금액을 나타냄

다. 재정수반요인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율 인하 및 2019년 소득분에 대한 가산세 미부과 등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율을 인하하고, 2019년 소득분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2019년 소득분에 한하여 기납부가산세를 환급함에 따라 소득세수의 감소 예상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율 비교〉

구 분		현 행 ¹⁾	개정안	비고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일반	0.5%	0.2%	현행 대비 60%인하
	제출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제출	0.25%	0.1%	
불분명 또는 기재 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0.5%	0.2%	

주: 1) 2019년 소득분에 대해서는 현행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50%를 가산세액으로 부과함

라. 비용추계의 전제

- 개정안이 2020년 중 통과되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을 전제함
 - 2021년 1월 1일 이후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 － 2020년 하반기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부터 적용
 - * 2021년 1월 말까지 제출해야함
 - 개정안 부칙에 따른 2019년 소득분의 가산세 환급은 2020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
- 비용추계 기간 동안 2019년 기준 가산세액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국세청이 제공한 2019년 가산세 통계자료 이용

마. 비용추계 상세 내역

- (제도 개요) 지급명세서 또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 등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하지 않은 지급금액의 일정비율로 가산세 부과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율〉

구 분		지급명세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일반	1%	0.5%
	제출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제출	0.5%	0.25%
불분명 또는 기재 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1%	0.5%

- (현황) 개인사업자에 대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불성실 가산세액은 2019년 기준 약 15억원
 - 2019년의 경우 계산된 가산세액의 50%를 가산세로 부과함에 따라 실제 가산세액은 30억원
- (추계 방법) 2019년 가산세액 실적치를 기준으로 가산세율 인하(60%) 및 2019년 가산세 환급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
 - 2019년 기준 가산세액(30억원)이 향후에도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가산세율 인하에 대한 세수효과는 2021년부터 발생
 - 세수효과 = 30억원×60%=18억원
 - 2019년 발생 소득분에 대한 가산세 환급은 2020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

4. 상가임대료 인하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 (2020.12.24. 발의)

가. 주요내용

- 상가임대료 인하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공제율을 70%(현행 50%)로 인상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제한을 받은 경우는 임대료 인하액의 85%, 집합금지를 받은 경우는 임대료 인하액의 100%를 조치기간에 한하여 세액공제

나. 재정수반 요인

-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인상 및 적용기한 연장
 -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를 인하여 지급 받는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70%(현행 50%)를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공제
 - 현행 적용기한(2020.1.1.~2020.6.30.)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제한을 받은 경우는 임대료 인하액의 85%, 집합금지를 받은 경우는 임대료 인하액의 100%를 조치기간에 한하여 세액공제

다. 미첨부 근거규정

-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라. 미첨부 사유

- 개정안은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기한을 '21년 말까지 연장하고 공제율을 70%로 인상하며, 집합금지 혹은 집합제한 조치를 받은 임차인에 대해 임대료 인하 시 조치기간동안 최대 100% 공제율을 적용함으로써 소득세와 법인세의 감소 예상
-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액을 추계하기 위해서는 향후 임대료를 인하할 임대인의 수와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예측이 필요함

〈재정수입 변화 추계 산식〉

- 재정수입 감소액 = [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 수₂₀₂₁ × 임대료 인하액₂₀₂₁ × 70%]
- 그러나 향후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할 임대인의 수와 임대료 인하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워 개정안으로 인한 소득세와 법인세의 감소 규모를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음
 -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소상공인 임차사업장은 216만개이며, 월임대료는 평균 77~122만원 수준

〈소상공인 임차사업장 수 및 임차비용〉

(단위: 만개, 만원)

전체	임차사업장 수			임차비용		
	월임대료 납부 사업체 수		전세 등의 기타방식	유보증금		무보증금
	유보증금	무보증금		보증금	월임대료	월임대료
216	186	13	17	2,201	122	77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18년 기준 소상공인실태조사」, 2019. 12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

-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 방안’(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¹⁾에 따르면, 2020년 10월 말 기준 약 5,915명의 전통시장·상점가 임대인이 4.3만여개 점포의 임대료를 인하
- 그러나 이러한 자료만으로는 향후 임대료를 인하할 임대인의 수와 임대료 인하 규모를 추정하기에 한계가 있음

〈민간 부문의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현황〉

(단위: 명, 개)

전통시장 (407곳)		상점가 (58곳)		기타 (개별상가 등, 251곳)		계	
임대인	대상점포	임대인	대상점포	임대인	대상점포	임대인	대상점포
3,328	29,367	692	6,921	1,895	6,689	5,915	42,977

주: 1. 2020년 10월 31일 기준

2. 전통시장 및 상점가와 일반 상점 중 파악 가능한 일부 상점에 대해 조사

자료: 관계부처합동,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 방안」 보도자료, 2020. 11. 12.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액을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1) 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 방안」 2020. 11. 12.

II 법인세 분야

1. 법인세율 변경: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2021.01.25. 발의)

가. 주요내용

- 비수도권에 본사가 소재하고 있는 법인에 대한 법인세율 인하

나. 비용추계 결과

- 본사가 수도권 밖에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인하된 법인세율을 적용함에 따라 법인세는 2022년 0.5조원, 2026년 6.9조원 등 2022년에서 2026년까지 5년간 총 26.5조원(연평균 5.3조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 법인세〉

(단위: 조원)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누적	연평균
비수도권 소재 내국법인의 법인세율 인하 (안 제55조제1항)	-0.5	-6.1	-6.4	-6.6	-6.9	-26.5	-5.3

다. 재정수반요인

- 본사 소재지에 따라 법인세율 이원화(안 제55조제1항)
 - 비수도권에 본사가 소재하고 있는 내국기업에 대하여 인하된 법인세율 적용

법인세율 개정안

〈현행〉			〈개정안〉		
과세표준	초과누진세율		본사 소재지	과세표준	초과누진세율
2억원 이하	10%	⇒	수도권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22%
				3천억원 초과	25%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22%		비수도권	2억원 이하	5%
3천억원 초과	25%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0%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12%
				3천억원 초과	15%

라. 비용추계의 전제

- 2022년 귀속소득 분부터 변경된 법인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전제하고, 세수효과는 징수기준에 따라 2022~2026년까지 집계
 - 2022년 귀속소득에 대한 세수효과는 징수기준에 따라 2023년부터 발생
 - 단, 중간예납 정산을 고려할 경우 2022년에 세수효과 일부 발생 가능
- 비수도권 본사 소재지 법인에 대한 법인세율 인하 세수효과는 다음의 가정을 통해 추계
 - 2019년 신고기준 과세표준 구간별 기업수가 향후에도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과표 구간별 1기업당 과세표준은 국회예산정책처의 법인세 전망 증가율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가정
- 산출세액 대비 공제·감면수준이 동일한 비율을 유지할 것으로 가정

□ 법인세율 변화에 따른 기업의 행태변화는 미고려

- 세율 변동에 따라 본사 소재지를 이동하거나 투자·생산 등 기업의 행태가 변화할 경우, 비용추계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음

마. 비용추계 상세 내역

1) 추계의 대상 및 방법

- 과표 구간별로 비수도권 소재기업의 1기업당 과세표준을 전망한 후, 변화된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1기업당 산출세액 차이를 계산
 - 국세청에 소재지별 법인세 상세자료를 요청하여 추계에 활용
 - － 비수도권 소재 기업에 대한 세율인화 효과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지역별·과표구간별로 구분된 상세자료가 필요하지만, 현재 국세통계연보에는 해당 자료가 미비하므로 요청을 통해 자료 파악
 - 향후 1기업당 과세표준액은 국회예산정책처 법인세 전망치 증가율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가정하며, 현행·개정안 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과표 구간별로 1기업당 산출세액 차이를 계산
- 과표구간별 기업수를 곱하여 전체 산출세액 및 총부담세액 변화분 추계

- 1인당 산출세액 차이에 기업수를 곱하여 전체 산출세액 변화분 계산
 - 산출세액 변화분에 ‘총부담세액/산출세액’ 비중을 적용하여 공제·감면 반영
- 최종적인 납부시기를 고려하여 연도별 세수효과 배분
- 세율변화 세수효과 중 첫해연도에 영향을 주는 부분은 7.8%, 나머지는 다음연도 세수에 영향

〈비용추계 산식〉

△개정안에 따른 세수변화

$$= \Sigma (\Delta 1 \text{기업당 산출세액 변화} 1) \times \text{기업수} 2) \times \text{총부담세액/산출세액} 3) \times \text{납부시기 배분} 4)$$

1) 1기업당 산출세액 변화 = 1기업당 과세표준 × (t1 - t0)

이때, t0는 현행 법인세율이며 t1은 개정안의 세율 (※초과누진세율이므로 과표 구간별 계산)

비수도권 소재지 법인세율 개정안

	과세표준	현행	개정안
비수도권	2억원 이하	10%	5%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	10%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22%	12%
	3천억원 초과	25%	15%

2) 2019년 신고기준 과표구간별 기업수가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

3) 총부담세액/산출세액 비중

비수도권 소재기업의 산출세액 대비 총부담세액 비중(81.7~89.6%) 적용

4) 납부시기 배분

세수효과 중 첫해연도에 영향을 주는 부분은 ‘가결산 신고 중간예납분(7.8%)’ 한정

2) 비수도권 소재지 내국법인에 대한 법인세율 인하(안 제55조제1항)

- (법인세 신고현황) 2019년 법인세 신고기준(2018년 귀속) 비수도권 소재 기업 가운데 과세표준이 0 이상인 법인은 17.5만개이며, 이들이 신고한 과세표준은 82.6조원, 1기업당 과세표준은 4.7억원임

〈법인세 과세표준 규모별 신고 현황: 2019년 신고법인 기준(2018년 귀속)〉

(단위: 개, 백만원)

본사 소재지	과세표준	기업수(개)	과세표준 (백만원)	1기업당 과세표준 (백만원)
비수도권	2억원 이하	136,675	7,325,673	54
	2억원~200억원 이하	37,988	36,478,704	960
	200억원~3,000억원 이하	396	26,510,730	66,946
	3,000억원 초과	16	12,262,735	766,421
	계	175,075	82,577,842	472

주: 과세표준이 “0”이거나 “음수”인 기업 제외한 수치임

자료: 국세청, 제공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과세표준 전망) 비수도권 소재 기업의 1기업당 과세표준이 국회예산 정책처의 법인세 전망¹⁾ 증가율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가정하여 전망

1) 거시경제변수 회귀모형 등을 통해 1차 기준선을 전망하고, 추가적으로 주요정책변화 요인을 반영하여 최종적인 전망액 산출

〈향후 1기업당 과세표준 전망(귀속연도 기준): 비수도권 소재 기업〉

(단위: 억원)

과세표준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억원 이하	0.4	0.5	0.5	0.5	0.5
2억원~200억원 이하	8	8	9	9	9
200억원~3,000억원 이하	541	567	593	619	646
3,000억원 초과	6,194	6,490	6,789	7,089	7,401

주: 2020년 이후, NABO의 법인세 전망 증가율 적용

- (1기업당 산출세액) 비수도권 소재 기업의 1기업당 과세표준에 개정안의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 산출세액 변화분 추계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1기업당 산출세액 변화(귀속연도 기준): 비수도권 소재 기업〉

(단위: 억원)

과세표준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억원 이하	-0.02	-0.02	-0.02	-0.02	-0.03
2억원~200억원 이하	-0.68	-0.71	-0.75	-0.79	-0.83
200억원~3,000억원 이하	-70	-73	-75	-78	-81
3,000억원 초과	-905	-935	-965	-995	-1,026

- 1법인당 산출세액 변화분에 과세표준 구간별 기업수(2019년 신고기준)를 곱하여 전체 산출세액 변화분 추계

〈전체 산출세액 변화(귀속연도 기준): 비수도권 소재 기업〉

(단위: 억원)

과세표준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억원 이하	-2,960	-3,102	-3,245	-3,388	-3,537
2억원~200억원 이하	-25,683	-27,090	-28,516	-29,944	-31,428
200억원~3,000억원 이하	-27,722	-28,744	-29,781	-30,819	-31,898
3,000억원 초과	-14,485	-14,958	-15,437	-15,917	-16,416
합 계	-70,850	-73,894	-76,979	-80,068	-83,279

□ 산출세액 대비 총부담세액 비중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적용하여 공제 감면에 따른 부담세액 변화분 추계

- (2019년 신고기준) 비수도권 소재기업의 산출세액 대비 총부담세액 비중
 - － 2억원 이하: 88.8%
 -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81.7%,
 - －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89.6%,
 - － 3,000억원 초과: 86.3%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부담세액 변화(귀속연도 기준): 비수도권 소재 기업〉

(단위: 원)

과세표준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억원 이하	-2,629	-2,754	-2,882	-3,009	-3,141
2억원~200억원 이하	-20,985	-22,134	-23,300	-24,466	-25,680
200억원~3,000억원 이하	-24,830	-25,745	-26,674	-27,603	-28,570
3,000억원 초과	-12,496	-12,905	-13,318	-13,732	-14,163
합 계	-60,940	-63,538	-66,174	-68,810	-71,554

- (법인세 납부시점 배분) 법인세가 실제 국고에 귀속되는 시기를 고려하여 세수효과 기간을 반영
- 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당해 소득에 대해 8월 중간예납과 다음해 3월 확정신고를 통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므로, 이를 반영
 - 중간예납세액 비중(34.6%)과 가결산 비율(22.6%) 비율을 감안하면, 세수 변화 가운데 $7.8\%(=34.6 \times 22.6\%)$ 가 첫해연도 세수에 영향
 - 총부담세액에서 중간예납액이 차지하는 비중: 2015~2019년 평균 34.6%
 - 중간예납 납부금액 중 '가결산 기준' 비율: 2015~2019년 평균 22.6%

〈법인세 납부시점 배분〉

납부시점 귀속시점	2022	2023	2024	2025	2026
2022	(중간예납)				
2023		(중간예납)			
2024			(중간예납)		
2025				(중간예납)	
2026					(중간예납)

2. 최저한세율 변경: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0.07.17. 발의)

가. 주요내용

- 중소기업·일반기업(과표 100억 이하) 최저한세율 인하

나. 비용추계 결과

- 중소기업과 일반기업 과세표준 100억원 이하 구간의 최저한세율(현행 7%, 10%)을 각각 5%, 8%로 2%p씩 인하하고자 함에 따라 법인세는 2021년 49억원, 2025년 599억원 등 2021년에서 2025년까지 5년간 총 2,130억원(연평균 426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법인세〉

(단위: 억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누적	연평균
최저한세율 인하 (안 제132조제1항)	-49	-494	-511	-529	-599	-2,130	-426

다. 재정수반요인

- 과표 100억원 이하 일반기업 및 중소기업의 최저한세율 인하(안 제 132조 제1항)
 - 과세표준 100억원 이하인 일반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현행 10%에서 8%로 인하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현행 7%에서 5%로 인하하고자 함에 따라 법인세수의 감소가 예상됨

〈최저한세율 추이〉

	중소기업	일반기업(100억원 이하)
2012	7%	10%
2013	7%	10%
2014~(현행)	7%	10%
개정안	5%	8%

라. 비용추계의 전제

- 2020년 중 개정안이 통과되어 2021년 귀속소득 분부터 개정안이 적용되는 것으로 전제하고, 세수효과는 징수기준에 따라 집계
 - 개정안의 부칙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개정안을 적용하는 것으로 추계
 - 2021년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수감소효과는 2022년부터 발생(징수기준)
- 본 비용추계는 다음의 가정을 통해 추계
 - (A영역) 중소기업 유효세율이 5%보다 낮을 경우, 개정 전에 ‘과세표준 × 최저한세율 7%’의 세금을 납부하다가, 개정 후에는 ‘과세표준 × 최저한세율 5%’의 세금을 납부하므로, 세수효과는 ‘과세표준 × 최저한세율 변화분 2%p’임
 - (B영역) 중소기업 유효세율이 5%보다 높지만 7%보다 낮은 기업은 개정 전에는 최저한세 적용을 받지 않다가, 개정 후에는 최저한세 적용을 받으므로, 세수효과는 ‘과세표준 × (7% - 유효세율)’임¹⁾

1) 엄밀히 하면, 최저한세를 적용하는 경우와 적용하지 않는 경우의 세율을 어디에 곱하는지, 이 어디가 다름.

- (C영역) 과표 100억원 이하 구간에서 유효세율이 8%보다 낮은 기업은 개정 전에 ‘과세표준 × 최저한세율 10%’의 세금을 납부하다가, 개정 후에는 ‘과세표준 × 최저한세율 8%’의 세금을 납부하므로, 세수효과는 ‘과세표준 × 최저한세율 변화분 2%p’임
- (D영역) 과표 100억원 이하 구간에서 유효세율이 8%보다 높지만 10%보다 낮은 기업은 개정 전에는 최저한세 적용을 받지 않다가, 개정 후에는 최저한세 적용을 받으므로 세수효과는 ‘과세표준 × (10% - 유효세율)’임

<중소기업 유효세율별 최저한세 적용여부>

유효세율:	5		7
〈최저한세 적용여부 및 세수효과〉			
현행	적용O	적용O	적용X
개정안	적용O	적용X	적용X
세수효과	[A] 과표×2%p	[B] 과표×(7%－유효세율)	없음

<과표 100억원 이하 구간에서의 유효세율별 최저한세 적용여부>

유효세율:	8		10
〈최저한세 적용여부 및 세수효과〉			
현행	적용O	적용O	적용X
개정안	적용O	적용X	적용X
세수효과	[C] 과표×2%p	[D] 과표×(10%－유효세율)	없음

- A~D 영역에 해당하는 법인의 과표와 유효세율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최저한세 대상 기업은 모두 A, C 영역에 해당한다고 가정하고 추정하였으며, 이는 비용추계의 과대추정을 가져올 수 있음
- 향후 과세표준 증가율은 2020년은 국회예산정책처의 법인세 증가율 전망, 2021년 이후는 국회예산정책처의 경상 GDP 증가율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가정
- 세법 개정에 따른 법인들의 행태 변화가 없다고 가정
- 최저한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감소 규모추정에 있어서 최저한세 미적용 금액의 이월공제 가능성 등의 한계가 있음

마. 비용추계 상세 내역

1) 과세표준 100억원 이하 일반기업

- 최저한세율 적용기업의 부담세액과 과세표준 추정
 - 최저한세 부담액 자료만 존재하기 때문에, 각 연도의 과세표준은 ‘총부담세액/해당연도의 명목 최저한세율’로 추정
 - 2018년 신고기준 과표 100억원 이하 최저한세 적용 일반기업의 법인세 부담액은 730억원이며, 최저한세율(10%)을 이용해 추정한 과세표준은 약 7,296억원임

〈최저한세 적용기업의 부담세액과 과세표준 추정(신고연도 기준)〉

(단위: 억원)

과표	부담세액(A)					과세표준 추정(B)				
	2014	2015	2016	2017	2018	2014	2015	2016	2017	2018
합 계	869	789	693	705	730	8,686	7,890	6,927	7,053	7,296
1억 이하	6	6	7	6	9	58	56	74	65	91
2억 이하	13	14	16	12	21	135	136	157	119	211
5억 이하	29	28	29	25	38	286	282	294	251	378
10억 이하	36	42	37	55	63	357	417	370	548	635
20억 이하	99	102	78	59	92	993	1,020	783	594	919
50억 이하	233	226	239	79	223	2,333	2,263	2,393	793	2,234
100억 이하	443	357	286	225	283	4,428	3,565	2,855	2,251	2,829

주: A열은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자료이며, B열은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추정한 수치임

□ 향후 과세표준 및 소득귀속기준 세수효과 전망

- 최저한세 적용 일반기업의 과세표준은 2021년 6,221억원에서 2025년 7,146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해당 과표에 유효세율 변화분(-2%p)을 곱하여 세수변화 규모를 추계한 결과, 2021~2025년 연평균 134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

〈향후 과세표준 전망: 과표 100억 이하 일반기업〉

(단위: 억원)

과세표준	2021	2022	2023	2024	2025
합계	6,221	6,451	6,671	6,904	7,146
1억 이하	78	80	83	86	89
2억 이하	180	186	193	199	206
5억 이하	322	334	346	358	370
10억 이하	541	561	580	600	621
20억 이하	783	812	840	870	900
50억 이하	1,905	1,975	2,042	2,114	2,188
100억 이하	2,412	2,502	2,587	2,677	2,771

〈개정안에 따른 세수감소 전망: 과표 100억원 이하 일반기업〉

(단위: 억원)

과세표준	2021	2022	2023	2024	2025	누적	연평균
합계	-124	-129	-133	-138	-143	-668	-134
1억 이하	-2	-2	-2	-2	-2	-8	-2
2억 이하	-4	-4	-4	-4	-4	-19	-4
5억 이하	-6	-7	-7	-7	-7	-35	-7
10억 이하	-11	-11	-12	-12	-12	-58	-12
20억 이하	-16	-16	-17	-17	-18	-84	-17
50억 이하	-38	-40	-41	-42	-44	-204	-41
100억 이하	-48	-50	-52	-54	-55	-259	-52

- (법인세 징수기간 배분) 12월 결산법인 기준 개정안에 따라 3월 확정 신고 후, 8월 중간예납을 하므로 실제 세수가 국고에 귀속되는 시기에 법인세수 변화를 반영
- 법인세 징수기간을 고려할 경우, 과세표준 100억원 이하 일반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현행 10%에서 8%로 인하함에 따라, 2021~2025년 동안 558억원(연평균 111억원)의 법인세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

〈일반기업 최저한세율 인하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단위: 억원)

	2021	2022	2023	2024	2025	합계	연평균
법인세	-13	-129	-134	-139	-143	-558	-111

2) 중소기업

- 향후 과세표준 및 세수효과 전망
 - 최저한세 적용 중소기업의 과세표준은 2021년 1조 7,520억원에서 2025년 2조 124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해당 과세표준에 유효세율 변화분(-2%p)을 곱하여 세수변화 규모를 추계한 결과, 2021~2025년 연평균 376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

〈향후 과세표준 전망: 중소기업〉

(단위: 억원)

과세표준	2021	2022	2023	2024	2025
합계	17,520	18,169	18,786	19,444	20,124
1억 이하	2,773	2,876	2,974	3,078	3,186
2억 이하	3,892	4,036	4,173	4,319	4,470
5억 이하	4,351	4,512	4,665	4,828	4,997
10억 이하	1,998	2,071	2,142	2,217	2,294
20억 이하	1,727	1,791	1,852	1,917	1,984
50억 이하	1,700	1,763	1,823	1,887	1,953
100억 이하	495	513	531	549	568
200억 이하	325	337	348	360	373
500억 이하	260	270	279	289	299

〈개정안에 따른 세수감소 전망: 중소기업〉

(단위: 억원)

과세표준	2021	2022	2023	2024	2025	누적	연평균
합계	-350	-363	-376	-389	-402	-1,881	-376
1억 이하	-55	-58	-59	-62	-64	-298	-60
2억 이하	-78	-81	-83	-86	-89	-418	-84
5억 이하	-87	-90	-93	-97	-100	-467	-93
10억 이하	-40	-41	-43	-44	-46	-214	-43
20억 이하	-35	-36	-37	-38	-40	-185	-37
50억 이하	-34	-35	-36	-38	-39	-183	-37
100억 이하	-10	-10	-11	-11	-11	-53	-11
200억 이하	-6	-7	-7	-7	-7	-35	-7
500억 이하	-5	-5	-6	-6	-6	-28	-6

□ 세금징수기준 세수효과

- 법인세 징수기간을 고려할 경우, 중소기업의 최저한세율을 현행 7%에서 5%로 인하함에 따라 2021~2025년 동안 1,572억원(연평균 314억원)의 법인세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

〈중소기업 최저한세율 인하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단위: 억원)

	2021	2022	2023	2024	2025	합계	연평균
법인세	-36	-365	-377	-390	-404	-1,572	-314

3) 세수효과 합계

- 중소기업과 일반기업 과세표준 100억원 이하 구간의 최저한세율(현행 7%, 10%)을 각각 5%, 8%로 2%p씩 인하하고자 함에 따라 법인세는 2021년 49억원, 2025년 599억원 등 2021년에서 2025년까지 5년간 총 2,130억원(연평균 426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최저한세율 인하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단위: 억원)

	2021	2022	2023	2024	2025	합계	연평균
중소기업 법인세	-36	-365	-377	-390	-404	-1,572	-314
100억원 이하 일반기업 법인세	-13	-129	-134	-139	-143	-558	-111
합 계	-49	-494	-511	-529	-599	-2,130	-426

3.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11.20.발의)

가. 주요내용

-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등 개별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항목을 통합투자세액공제로 일원화

나. 비용추계 결과

-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등 개별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항목을 통합투자세액공제로 일원화할 경우 법인세 및 소득세는 2022년 6조 9,755억원, 2026년 8조 5,672억원 등 2022년에서 2026년까지 5년간 총 40조 754억원(연평균 8조 151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 2022년은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에 따른 세수감소와 기존 개별 투자세액공제 폐지에 따른 세수증가 효과가 모두 작용
 - 2023년 이후는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에 따른 세수감소효과만 작용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 법인세 및 소득세〉

(단위: 억원)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누적	연평균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등(A+B)	-69,755	-79,715	-81,865	-83,746	-85,672	-400,754	-80,151
- 법인세(A)	-65,477	-75,008	-77,031	-78,801	-80,613	-376,930	-75,386
- 소득세(B)	-4,278	-4,707	-4,834	-4,945	-5,059	-23,824	-4,765

다. 재정수반요인

□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안 제24조)

- 모든 시설투자에 대해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10%의 세액공제 적용
 - 기존에는 일부 특정 시설투자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적용
 - 공제율: 기본공제 10% + 추가공제 3%
 - ※ 추가공제는 해당 과세연도 투자액이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액 초과시 초과분에 적용

□ 중소기업 등의 투자세액공제 폐지(안 제5조)

-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투자세액공제를 폐지
 - 공제율: (중소기업) 3%, (중견기업) 2%
 - ※ 단, 고용재난지역 등 위기지역의 경우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5%의 공제율 적용

□ 특정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폐지(안 제25조)

-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연구시험용 및 직업훈련용 시설 등 특정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폐지
 - 공제율: (중소기업) 7~10%, (중견기업) 3~5%, (대기업) 1~3%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공제율: 2021년 기준〉

구 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연구시험용 및 직업훈련용 시설 · 에너지 절약 시설	7%	3%	1%
안전시설·생산성 향상 시설	10%	5%	1%
환경 보전 시설· 근로자 복지증진 시설	10%	5%	3%

주: 2021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5%, 2020년 12월 31일까지 대기업 2%로 한시 상향

- 의약품 품질관리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 폐지(안 제25조의4)
 -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의약품 품질관리개선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폐지
 - 공제율: (중소기업) 6%, (중견기업) 3%, (대기업) 1%
-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세액공제 폐지(안 제25조의5)
 -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의약품 품질관리개선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폐지
 - 공제율: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7%, (대기업) 5%
- 초연결 네트워크구축 시설투자세액공제 폐지(안 제25조의7)
 - 2020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초연결 네트워크구축 시설투자세액공제를 폐지
 - 공제율: 기본공제율 2% + (전년대비 고용증가율 × 1/5)만큼 공제율 적용 (최대 3%)

라. 비용추계의 전제

- 개정안은 2021년 귀속소득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전제하며, 세수효과는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로 인한 세수감소 효과와 기존 개별 투자세액 공제 폐지로 인한 세수증가 효과의 합으로 산출
 -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안은 2021~2025년간 귀속소득분에 적용되며 징수 기준에 따라 2022~2026년간 세수효과를 산출
 - 기존에 존재하던 개별 투자세액공제 폐지안은 2021년 귀속소득까지만 적용되며, 2022년 이후 귀속소득분에는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로 인한 세수효과만 적용
 - － 초연결 네트워크구축 시설투자세액공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항목으로, 폐지에 따른 세수효과는 2021년 이후 귀속소득분에 영향을 주지 않음

〈개정안에 따른 연도별 세수효과 증감 여부〉

귀속연도 (세수효과 발생연도)	2021 (2022)	2022 (2023)	2023 (2024)	2024 (2025)	2025 (2026)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안 제24조)	-	-	-	-	-
중소기업 등의 투자세액공제 폐지 (안 제5조)	+				
특정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폐지(안 제25조)	+				
의약품 품질관리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 폐지(안 제25조의4)	+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세액공제 폐지(안 제25조의5)	+				
초연결 네트워크구축 시설투자세액공제 폐지(안 제25조의7)	0				

주: 부호는 각 항목별 연도별 세수효과의 부호를 나타내며, 0는 세수효과가 없음을 의미

-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에 따른 세수효과 추정을 위해 향후 연도별 총 설비투자액은 NABO의 설비투자 증가율 전망(2020. 9.)에 따라 증가한다고 가정
 - 총 설비투자액은 민간설비투자 실적치(2019년 기준)에 설비투자 증가율 전망에 따라 증가한다고 가정
 - 단, 2025년 설비투자 증가율은 2024년 수준을 유지한다고 가정

〈향후 설비투자 증가율: 2020~2025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설비투자 증가율(명목)	3.6	2.6	4.4	2.7	2.3	2.3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1년 및 중기 경제전망」, 2020. 9.

- 기존 개별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폐지에 따른 세수효과는 2020년 실적에 2020년, 2021년의 NABO의 설비투자 증가율 전망(2020. 9.)에 따라 증가한다고 가정
 - 기존 개별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2021년 귀속소득분까지 적용되므로, 폐지에 따른 세수효과는 2022년 한 해에만 발생
 - 2022년의 세수효과는 개별 특정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2020년 실적(잠정치)에 2020년, 2021년 설비투자 증가율을 적용하여 계산
 - 2020년 실적은 2019년 귀속소득분에 기인하므로, 2020년 설비투자 증가율 적용
- 총 설비투자액이 아닌 개별기업의 설비투자액의 추이에 대한 자료가 부재한 관계로 개정안의 통합투자세액공제에는 최저한세 및 추가세액 공제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마. 비용추계 상세 내역

1)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의 세수효과

-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에 따른 세수효과는 ‘연도별 총 설비투자액 × 공제율(10%) × 세부담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의 비중’으로 추계
 - 총 설비투자액에 대한 세액공제 규모를 구한 후, 실질적으로 소득세 및 법인세 부담이 있는 개인 및 법인의 비중을 고려하여 세수효과 추계
- (총 설비투자액) 민간설비투자 실적액(2019년)에 NABO의 설비투자 증가율 전망(2020.9)을 적용하여 추계
 - 2019년 기준 민간설비투자 실적은 137.9조원 수준
 - 향후 연도별 총 설비투자액은 NABO의 설비투자 증가율 전망(2020. 9.)에 비례하여 증가한다고 가정

〈총 설비투자액 추계: 2019~2026년〉

(단위: 조원, %)

구 분	2019 (실적)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총설비투자액 ¹⁾	137.9	142.9	146.6	153.0	157.1	160.7	164.4
설비투자 증가율 ²⁾	-	3.6	2.6	4.4	2.7	2.3	2.3

주: 1) 2019년 기준 민간설비투자 실적은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DB의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이후 설비투자 전망은 NABO의 설비투자 증가율 전망(2020.9.)을 이용

2) 설비투자 증가율은 NABO의 「2021년 및 중기 경제전망」의 자료 이용

자료: 한국은행 경제정보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추계

- (총 설비투자 규모에 대한 세액공제액 추정) 연도별 총 설비투자액에 공제율 10%를 적용하여 총 설비투자액에 대한 세액공제 규모를 추정

〈총설비투자액에 대한 세액공제 규모 추정: 2021~2025년, 귀속연도 기준〉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총설비투자액(A, 조원)	146.6	153.0	157.1	160.7	164.6
통합투자세액공제액 (A×10%, 억원)	146,573	153,009	157,136	160,746	164,443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NABO 경제전망(2020.9.)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추계

- (세목별 세액공제액 구분) 총 설비투자액에 대한 세액공제 규모를 세목별 비중을 적용하여 추계
 - 세목별 비중은 2020년 기준 개별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법인세와 소득세 공제액 비중을 적용
 - － 세목별 평균 비중: (법인세) 96.5%, (소득세) 3.5%

〈세목별 세액공제 구분: 2021~2025년, 귀속연도 기준〉

(단위: 억원)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세액공제	법인세	141,443	147,653	151,636	155,120
	소득세	5,130	5,355	5,500	5,626
합 계	146,573	153,009	157,136	160,746	164,443

자료: 한국은행 경제정보시스템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추계

- (세수효과) 개정안의 세액공제액에 「2020년 국세통계연보」상 실제 세 부담이 있는 비중을 적용하여 추계
 - (법인세) 법인세 공제액에 세부담이 있는 기업의 비중을 적용
 - － 법인세 신고 법인 중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 비중(19년 신고 기준): 50.8%
 - (소득세) 소득세 공제액에 세부담이 있는 인원의 비중을 적용
 - － 종합소득세 사업자 신고 인원*중 산출세액이 있는 인원 비중(19년 신고 기준): 87.9%
 - ※ 종합소득세 신고인원에서 비사업자와 단순경비율신고자를 차감한 인원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에 따른 세수변화: 2022~2026년〉

(단위: 억원)

구 분		2022 (2021) ¹⁾	2023 (2022)	2024 (2023)	2025 (2024)	2026 (2025)
세액공제	법인세(A)	141,443	147,653	151,636	155,120	158,688
	소득세(B)	5,130	5,355	5,500	5,626	5,756
세수효과	법인세 (A×50.8%)	-71,853	-75,008	-77,031	-78,801	-80,613
	소득세 (B×87.9%)	-4,509	-4,707	-4,834	-4,945	-5,059
합 계		-76,362	-79,715	-81,865	-83,746	-85,672

주: 1) 연도는 세수효과 발생연도 기준으로 ()안은 해당 세수효과의 바탕이 되는 소득의 귀속연도

2) 기존 개별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폐지의 세수효과

- 기존 개별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폐지에 따른 세수효과는 2020년 각 투자세액공제 실적(잠정치)에 2020년, 2021년 설비투자 증가율 전망을 적용하여 추계
 - 기존 개별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일몰기한에 따라 2021년 귀속소득분까지 적용되므로 2022년 세수효과에 한정하여 영향
 - 2022년 세수효과는 2020년 세액공제 실적(잠정치)에 2020년, 2021년의 설비투자 증가율을 적용하여 계산
 - － 2020년 세액공제액은 2019년 귀속소득분에 기인하므로, 2020년, 2021년의 증가율을 적용
- (2020년 각 투자세액공제액 잠정치) 개별 시설투자 세액공제의 2020년 조세지출 실적(잠정치)은 법인세 5,997억원, 소득세 218억원 수준

〈항목별 투자세액공제 규모: 2020년 기준〉

(단위: 억원)

구 분	중소기업 등의 투자세액공제	특정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²⁾	의약품 품질관리개선 시설투자세액공제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투자세액공제	계
조항	「조특법」 ¹⁾ §5	「조특법」 §25	「조특법」 §25의4	「조특법」 §25의5	
법인세	796	4,994	203	4	5,997
소득세	172	46	-	-	218

주: 1. 2020년 투자세액공제액 감정치는 2019년 귀속연도 소득분에서 기인

1) 「조특법」은 「조세특례제한법」을 의미

2) 특정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는 「조특법」 제25조제1항~제6항의 투자세액공제액의 합계
자료: 정부, 「2021년도 조세지출예산서」

- (세수효과) 2020년 세액공제액 감정치에 2021년 설비투자 증가율을 적용하여 기존 개별 투자세액공제 폐지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
- 설비투자 증가액 전망(NABO, 2020.9): '20년 3.6%, '21년 2.6%
 - 개정안이 적용되는 2021년 귀속소득분의 투자세액공제 폐지에 따른 세수효과는 2022년에 발생

〈기존 개별 투자세액공제 폐지에 따른 세수변화: 2022년〉

(단위: 억원)

구 분	2020 (2019)	2021 (2020)	2022 (2021)
법인세	5,997	6,215	6,376
소득세	218	226	232
합 계	6,215	6,440	6,608

주: 연도는 세수효과 발생연도 기준으로 ()안은 해당 세수효과의 바탕이 되는 소득의 귀속연도

III 재산과세 분야

1.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 인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09.16. 발의)

가. 주요내용

- 상속세 및 증여세의 세율 인하

나. 비용추계 결과

- 상속세 및 증여세의 세율을 인하하는 경우 2021년 2조 8,350억원, 2025년 3조 3,678억원 등 2021년에서 2025년까지 총 15조 5,032억원 (연평균 3조 1,006억원)의 세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추계

〈개정안에 따른 비용추계 결과〉

(단위: 억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합계	연평균
상속세	-8,681	-9,080	-9,489	-9,897	-10,312	-47,459	-9,492
증여세	-19,669	-20,573	-21,520	-22,445	-23,365	-107,573	-21,515
합계	-28,350	-29,654	-31,009	-32,342	-33,678	-155,032	-31,006

다. 재정수반요인

- 상속세 및 증여세의 세율 인하
 - 개정안에 따라 상속세의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다음의 표와 같이 인하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의 세수감소 예상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상속세율은 동법 제56조 증여세의 세율과 연동되어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

〈개정안에 따른 상속세 세율 조정〉

(단위: %)

과세표준	현행 세율	개정안 세율
1억원 이하	10	5
5억원 이하	1천만원 + 1억초과 20	5백만원 + 1억초과 10
10억원 이하	9천만원 + 5억초과 30	4천5백만원 + 5억초과 20
30억원 이하	2억 4천만원 + 10억초과 40	1억 4천5백만원 + 10억초과 30
30억원 초과	10억 4천만원 + 30억초과 50	7억 4천5백만원 + 30억초과 40

라. 비용추계의 전제

- 향후 5년간 추가적인 제도변화는 없는 것으로 전제
- 추계기간 중 상속세율 변화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결정세액은 현행 1인당 상속세 및 증여세액에 개정안에 따른 세율변화분을 차감하여 산정한 후 상속세 및 증여세의 증가율에 비례하여 증가한다고 가정

-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액은 2018년 기준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의 증가는 국회예산정책처 전망(「2021년 총수입 예산안 분석」) 이용
 - 2019년 및 2020년은 최근 3년간 연평균 증가율(상속세 5.5%, 증여세 12.9%) 적용

〈최근 3년간 상속세 및 증여세의 연평균 증가율〉

(단위 : 억원, %)

구 분	2018	2019	2020	연평균 증가율
상속세	28,315	31,542	37,097	5.5
증여세	45,274	51,749	57,767	12.9

주. 2020년은 8월까지 국제정수실적 진도비(상속세 61.7%, 증여세 68.2%)에 따른 추정액

〈향후 5년간 상속세 및 증여세의 증가율 추정〉

(단위 : %)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상속세	4.9	4.6	4.5	4.3	4.2
증여세	5.0	4.6	4.5	4.3	4.1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2021년도 총수입예산안 분석」, 2020. 10.

- 신고세액공제 등의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 비례하고, 가산세는 없는 것으로 전제
 - 총결정세액 = 산출세액(과세표준 × 세율) - 세액공제 + 가산세
- 개정안의 시행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인 점을 감안하여
세수효과는 2021년 이후 5개년인 2025년까지 추계

마. 비용추계 상세 내역

1) 추계 방법

- 현행 1인당 상속세 및 증여세액에 개정안에 따른 세율변화분을 차감하여 산정

〈비용추계 산식〉

$$\begin{aligned} \text{세수입 감소예상} &= (\text{개정안에 따른 세율 변화분에 따른 세액}^{1)}) \\ &\quad - \text{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율 적용에 따른 세액}^{2)}) \times \text{증가율}^{3)} \end{aligned}$$

- 1) 1인당 세율 변화분에 따른 세액 × 2018년 기준 상속세(증여세) 부담 인원
- 2) 2018년 기준 상속세(증여세) 부담세액
- 3) 상속세 및 증여세의 해당 연도 증가율(전망치)

2) 추계 상세 내역

- 2018년 기준 현행 1인당 과세표준 구간별 상속세 및 증여세액과 개정안(세율인하)에 따른 세수감소액 산정, 이후 증가율을 적용하여 추계 기간의 세수감소액을 추정
- 2018년 기준 1인당 상속세 과세표준액
 - 과표구간별 1인당 상속세는 1억원 이하는 약 5천만원·30억원 초과는 약 100.6억원, 증여세의 경우 1억원 이하 약 3천만원·30억원 초과는 약 146.5억원을 나타내고 있음

〈과표구간별 1인당 평균 과표액 : 2018년 기준〉

(단위: 명, 억원)

과세표준 구간	상속세			증여세		
	인원수 (A)	과세표준 (B)	1인당 평균 과세표준 (C=B/A)	인원수 (A)	과세표준 (B)	1인당 평균 과세표준 (C=B/A)
1억원 이하	1,512	795	0.5	109,202	38,119	0.3
5억원 이하	3,261	9,126	2.8	39,706	91,535	2.3
10억원 이하	1,518	11,440	7.5	7,086	49,319	7.0
30억원 이하	1,237	21,303	17.2	3,228	51,810	16.1
30억원 초과	474	47,683	100.6	1,199	175,696	146.5

주 1. 증여세 인원수는 결정건수

2. 과세표준 가운데 결정금액(상속세 4,854억원, 증여세 -1,342억원)은 과표구간별 비중에 따라 배분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9.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개정안(서울인하)에 따라 과표구간별 1인당 세수감소분

- 상속세의 경우 1억원 이하는 약 2백만원·30억원 초과는 8.7억원이며,
증여세는 1억원 이하 약 1백만원, 30억원 초과는 2.19억원으로 추정

〈개정안에 따른 1인당 세수감소분〉

(단위: 억원)

과세표준 구간	1인당 평균 과세 표준 (C)	산출세액		세액공제 (F)		결정세액		세수 감소분 (I=H-G)
		현행 (D=C× 현행세율)	개정안 (E=C× 개정세율)	현행	개정안	현행 (G=D-F)	개정안 (H=E-F)	
상 속 세	1억원 이하	0.5	0.05	0.03	0.02	0.02	0.03	-0.02
	5억원 이하	2.8	0.46	0.23	0.11	0.01	0.35	-0.13
	10억원 이하	7.5	1.65	0.95	0.37	0.33	1.28	-0.66
	30억원 이하	17.2	5.28	3.61	0.94	0.77	4.34	-1.50
	30억원 초과	100.6	45.7	35.69	10.66	9.35	35.04	-8.70

과세표준 구간		1인당 평균 과세 표준 (C)	산출세액		세액공제 (F)		결정세액		세수 감소분 (I=H-G)
			현행 (D=C× 현행세율)	개정안 (E=C× 개정세율)	현행	개정안	현행 (G=D-F)	개정안 (H=E-F)	
증 여 세	1억원 이하	0.3	0.03	0.02	0	0.00	0.03	0.02	-0.01
	5억원 이하	2.3	0.36	0.18	0.09	0.04	0.27	0.14	-0.13
	10억원 이하	7	1.5	0.84	0.52	0.28	0.98	0.56	-0.42
	30억원 이하	16.1	4.8	3.27	1.96	1.31	2.84	1.96	-0.88
	30억원 초과	146.5	68.67	54.07	54.38	41.97	14.29	12.10	-2.19

주. 세율은 누진세율 적용

□ 서울변화에 따른 총세수 감소분(2018년 기준)

- 2018년 기준 과표구간별 1인당 세수감소분에 인원수를 곱하여 산정된
총세수감소분은 상속세 7,435억원, 증여세 1조 4,696억원으로 추정

〈서울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분 : 2018년 기준〉

(단위: 명, 억원)

과세표준 구간		1인당 세수감소분 (K)	인원수 (A)	총세수 감소분 (L=K×A)
상 속 세	1억원 이하	0.02	1,512	30
	5억원 이하	0.13	3,261	424
	10억원 이하	0.66	1,518	1,002
	30억원 이하	1.50	1,237	1,856
	30억원 초과	8.70	474	4,124
	소계	-	-	7,435
증 여 세	1억원 이하	0.01	109,202	1,092
	5억원 이하	0.13	39,706	5,162
	10억원 이하	0.42	7,086	2,976
	30억원 이하	0.88	3,228	2,841
	30억원 초과	2.19	1,199	2,626
	소계	-	-	14,696

□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 인하로 인한 향후 세수감소액

- 2018년 기준 세율변화에 따른 총세수 감소분에 향후 5년간 증가율을 적용하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상속세 4조 7,459억원, 증여세 10조 7,573억원의 세수감소 예상
- － 향후 5년간 증가율 : 상속세 4.9 ~ 4.2%, 증여세 5.0 ~ 4.1%

〈개정안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총결정세액 변화〉

(단위: 억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합계
상속세	-8,681	-9,080	-9,489	-9,897	-10,312	-47,459
증여세	-19,669	-20,573	-21,520	-22,445	-23,365	-107,573

2.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과세표준 및 세율인하, 세액공제 확대 등: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2020.07.16.발의)

가. 주요내용

-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과세표준 및 세율을 인하하고,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세액공제를 확대하며, 세 부담 상한비율을 인하

나.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이하 중부세) 주택분 과세표준 및 개인에게 적용되는 세율이 인하되는 등의 경우, 국세 수입은 2021~2025년 5년간 총 16조 4,103억원(연평균 3조 2,821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 2021년 이후 공시가격 상승률은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2020.11.)의 전국평균 현실화율 상승에 따라 전망
 - 단, 시세는 2020년 기준을 반영하여 향후 시세상승 또는 하락에 따라 본 비용추계는 과대·과소추정의 가능성이 있음

〈개정안에 따른 비용추계 결과: 종합부동산세 등〉

(단위: 억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누적	연평균
주택분 세율 인하 등 (A+B)	-26,354	-30,766	-32,293	-35,657	-39,032	-164,103	-32,821
- 종합부동산세(A)	-21,963	-25,638	-26,911	-29,715	-32,528	-136,753	-27,350
- 농어촌특별세(B)	-4,393	-5,127	-5,382	-5,943	-6,506	-27,350	-5,470

다. 재정수반요인

- 종부세의 주택분 과세표준 및 개인에게 적용되는 세율 인하와 1주택 장기보유자 세액공제율 인상, 세부담 상한비율 인하는 국세수입 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 종부세는 인별 공시가격 합산액에 과세기준액 등을 반영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후, 세율을 적용한 값에 기납부재산세액, 세액공제액, 세부담 상한 초과액을 감하여 과세

$$\text{종부세액} = \{(\text{공시가격 합산액} - \text{과세기준액}) \times \text{공정시장가액비율}\} \times \text{세율}$$

과세표준

- 기납부재산세액 공제 - 1주택자 세액공제(고령자 · 장기보유)
- 세부담 상한 초과액

- 주택분 과세기준액 인상 및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를 통한 과세표준 인하 과정에서 국세수입 감소가 예상(안 제8조제1항)
 - 과세기준액 인상: (1세대 1주택자) 현행 9억원 → 개정안 12억원
(그 외) 현행 6억원 → 개정안 9억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80%로 인하하여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2021년 15%p, 2022년 이후 20%p 인하됨에 따라 국세수입 감소가 예상

〈현행 및 개정안의 공정시장가액비율〉

(단위: %, %p)

	현행(A, 시행령 규정)	개정안(B, 법률규정)	
			B - A
2021	95	80	-15
2022 이후	100	80	-20

- 개인의 주택분 세율은 현행 대비 2주택 이하 0.1~1.0%p, 3주택 이상 0.7~3.5%p 인상하여 국세수입 감소가 예상(안 제9조제1항)

〈현행 및 개정안의 개인 주택분 세율〉

(단위: %, %p)

과표	2주택 이하 *조정대상지역 2주택 제외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포함		
	현행(A)	개정안(B)	B-A	현행(A)	개정안(B)	B-A
3억원 이하	0.6	0.5	0.1	1.2	0.5	0.7
3~6억원	0.8		0.3	1.6		1.1
6~12억원	1.2	0.75	0.45	2.2	1.0	1.2
12~50억원	1.6	1.0	0.6	3.6	1.5	2.1
50~94억원	2.2	1.5	0.7	5.0	2.0	3.0
94억원 초과	3.0	2.0	1.0	6.0	2.5	3.5

- 1주택 장기보유자 세액공제율은 현행 대비 10~20%p 인상으로 국세수입 감소가 예상(안 제9조제7항)
(장기보유자 세액공제율) 현행 20~50% → 개정안 30~70%

〈현행 및 개정안의 고령자·장기보유자 세액공제율〉

(단위: %, %p)

장기보유자	공제율			고령자	공제율
	현행(A)	개정안(B)			현행 · 개정안
		B-A			
5~10년	20	30	10	60~65세	20
10~15년	40	50	10	65~70세	30
15~20년	50	60	10		
20년 이상		70	20	70세 이상	40

- 세부담 상한비율 인하로 국세수입 감소가 예상되나 분석자료의 한계상 유의미한 세수효과가 나타나지 않음(안 제10조)
- (2주택 이하* 보유자) 현행 150% → 개정안 130%
(3주택 이상* 보유자) 현행 300% → 개정안 200%
* 조정대상지역은 1주택/2주택 이상으로 구분
- 분석자료의 한계상 보유세 추정치의 연간 증가율이 세부담 상한비율보다 낮아서 세부담 상한 초과액은 미미한 수준으로 추정

라. 비용추계의 전제

- (자료) 개정안에 따른 비용추계는 국세청에서 제공받은 2018년 중부세 주택분 자료를 바탕으로 함
 - 개인의 지역별·과세표준별 종합부동산세 실적자료, 과세표준별 보유 주택수 비중자료, 주택분 고령자·보유기간별 세액공제 실적자료 등
 - (지역) 17개 광역시·도, (과세표준) 1,000만원이하부터 100억원초과 등 21개 구간
※ 조정대상지역 관련정보는 없음
- (공시가격 상승률) 2018~2020년까지는 지역별 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을 반영하며, 향후 공시가격 상승률은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른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이하 ‘공시가격 현실화율’) 전망을 이용하여 적용
 - 공시가격 상승률은 시장요인 및 정책요인이 함께 반영되어 예측이 어려움
 - 공시가격 상승률은 시세의 변동 뿐만 아니라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승 등의 정책요인에도 영향

- 2018~2020년 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주소지에 납세자가 납세대상인 주택을 보유한다고 가정하고 해당지역별 표준단독주택·개별단독주택·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의 가중평균(가중치: 호수) 값을 적용
-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2020.11.)에 따라 2020년 기준 공동주택 69.0%, 단독주택 53.6%인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각각 2030년, 2035년까지 90%로 상승시키기 위해 향후 전국평균 현실화율 전망을 발표
 -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평균 현실화율 상승률 전망의 가중평균(가중치: 호수)값을 이용해 현재 시세가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공시가격 상승률을 계산하여 적용
 - 이에 따라, 추계기간중 연평균 공시가격 상승률은 2.2~4.6% 수준으로 적용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른 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전망〉

(단위: %)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승률) ¹⁾	공동주택	69.0	70.2	71.5	72.7	75.8
		-	(1.7)	(1.9)	(1.7)	(4.3)
	단독주택	53.6	55.9	58.1	60.4	63.9
		-	(4.3)	(3.9)	(4.0)	(5.8)
가중평균 ²⁾		-	2.3	2.3	2.2	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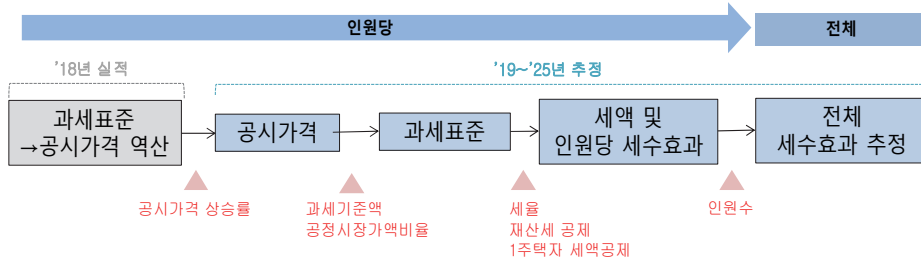
주: 1)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공시가격/시세)로, 상승률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에서 기인하며, 이 때 시세변동은 고려하지 않음

2) 가중평균의 가중치는 2020년 기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호수

자료: 국토교통부 발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과세표준 및 세율 인하) 중부세의 지역별·과표별 실적자료를 바탕으로, 과세표준 및 세율 인하로 인한 인원당 세수효과를 추정하고, 과세대상 인원수를 곱하여 전체 세수효과 추정
- 주택분은 개인과 법인 각각에 대해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는 4개 그룹으로 구분한 후, 인원당 세수효과 및 전체 세수효과 추정
 - 1주택/2주택 일반지역/2주택 조정대상지역/3주택 이상 등 4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추정
 - ※ 1주택자는 모두 현행 과세기준액 9억원 등을 적용받는 단독소유인원임을 가정
 - 2016년 이후 행정구역내 전 지역이 지속적으로 조정대상지역인 서울시, 세종시만 추계기간동안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할 것으로 가정
 - 인원당 세수효과: 2018년 4개 그룹의 인원당 공시가격을 추정한 후, 향후 인원당 공시가격, 과세표준, 산출세액을 추정하여, 현행 및 개정안의 산출세액 차이로 세수효과 산출
 - 전체 세수효과: 4개 그룹별 인원당 세수효과에 인원수를 곱하여 추정
 - ※ 인원은 2018년 실적 기준으로, 인원수 증가로 인한 세수효과는 고려하지 않음

〈과세표준 및 주택분 세율인하 세수효과 추정과정〉



- (1주택 장기보유자 세액공제율 인상) 세액공제 대상자의 나이 및 보유기간별 세액공제 실적자료를 바탕으로 개정안의 공제율 인상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정
 - 2018년 고령자 및 장기보유 합산공제율 구간별 공제실적에 인상율을 적용하여 추정
 - － 세액공제 대상자의 연령 및 보유기간 변동으로 인한 효과는 미반영
 - 향후 세수효과는 최근 5년(2014~2018년)의 주택분 세액공제액의 연평균 증가율이 유지된다고 가정
 - － 2014~2018년간 세액공제액 연평균 증가율: 25.4%

마. 비용추계 상세 내역

- 개인 및 법인의 과세표준 및 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효과와 1주택 장기보유자 세액공제율 인상에 따른 세수효과를 구분하여 추정

1) 과세표준 및 세율인하의 세수효과

- 과세표준 및 세율인하로 인한 세수효과를 개인과 법인으로 구분하여 추정

가) 개인

(1) 2019~2020년 과표구간별 인원당 공시가격 추정

- 2018년 세법개정으로 2019년 이후 1주택/2주택 일반지역/2주택 조정대상지역/3주택 이상자의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이를 4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추정
 - 주택보유수는 2018년 과표구간별 주택보유수 비율을 이용하여 구분

- 2016년 이후 행정구역 전체가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한 서울시와 세종시만 조정대상지역으로 가정
- 2018년 4개 그룹 각각 지역별·과표구간별 인원당 공시가격을 역산한 후, 2019~2020년의 인원당 공시가격을 추정
 - 2018년 지역별·과표구간별 실적자료를 이용하여 1주택/2주택 일반지역 /2주택 조정대상지역/3주택 이상자의 인원당 공시가격을 역산
 - 공시가격 = {과세표준/공정시장가액비율(80%)} + 과세기준액
 - ※ (과세기준액) 1주택자 9억원, 다주택자 6억원
 - 2018년 지역별·과표구간별 인원당 공시가격 추정치를 이용하여 2019~2020년 인원당 공시가격을 추정
 - 공시가격 = 공시가격 추정치('18년) × 공시가격 상승률('19년~'20년)
- 추정결과, 개인 1주택/2주택 일반지역/2주택 조정대상지역/3주택 이상자의 인원당 전국평균 공시가격은 2018년 8.5~12.0억원에서 2020년 8.8~14.2억원으로 상승

〈개인의 인원당 공시가격 추정: 2018~2020년, 그룹별〉

(단위: 만명, 억원)

구분		인원	2018년 공시가격	2019년 공시가격	2020년 공시가격
1주택		12.4	12.0	13.1	14.2
2주택	일반지역	5.3	8.5	8.7	8.8
	조정대상지역	6.9	9.9	11.2	12.7
3주택 이상		13.7	9.5	10.4	11.4

주: 1. 과세대상 주택보유수별 구분은 2018년 실적 기준
 2. 조정대상지역은 서울시와 세종시에만 적용된다고 가정
 3. 2019~2020년 공시가격은 추정된 2018년 공시가격에 2019~2020년 지역별 공시가격 상승률을 적용
 자료: 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2021~2025년 세수효과 추정

- 2021~2025년간 1주택/2주택 일반지역/2주택 조정대상지역/3주택 이상자 각각의 지역별·과표구간별 현행 및 개정안의 인원당 산출세액을 추정하여, 그 차이로 세수효과를 추정
 - 향후 공시가격 상승률은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전망을 이용하여 계산한 값을 반영
 - 지역별·과표별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서 현행 및 개정안의 과세기준액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반영
 - 과세표준 = (공시가격-과세기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 ※ 과세기준액(1주택자/다주택자): 현행 9억원/6억원 → 개정안 12억원/9억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현행 95%(’21년), 100%(’22년 이후) → 개정안 80%(’21년 이후)
 -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서 현행 및 개정안의 세율을 적용하여 추정하여 그 차이로 인원당 세수효과 산출
- 추정된 인원당 세수효과에 2018년 기준 지역별·과표별 납세인원수를 곱하여 전체 세수효과를 추정
 - 추정한 종부세 세수효과를 바탕으로 부가세(surtax)인 농특세(종부세의 20%) 세수효과를 추정
 - 개인의 주택분 과세표준 및 세율인하안의 세수효과는 2021~2025년간 총 15조 962억원(연평균 3조 192억원)으로 추정

〈개인의 과세표준 및 세율인하안의 세수효과 추정: 2021~2025년〉

연도	보유주택수		인원 (만명)	인원당 결정세액 (만원)		세수효과 (만원, 억원)			
				현행	개정안	1인당	종부세	농특세	합계
2021	1주택		12.4	301	50	-251	-20,348	-4,070	-20,348
	2주택	일반	5.3	176	37	-138			
		조정 대상	6.9	1,082	170	-912			
	3주택 이상		13.7	893	146	-747			
2022	1주택		12.4	344	48	-296	-23,441	-4,688	-28,129
	2주택	일반	5.3	202	40	-161			
		조정 대상	6.9	1,227	182	-1,045			
	3주택 이상		13.7	1,012	156	-856			
2023	1주택		12.4	359	45	-314	-24,651	-4,930	-29,582
	2주택	일반	5.3	215	44	-172			
		조정 대상	6.9	1,290	194	-1,095			
	3주택 이상		13.7	1,064	165	-899			
2024	1주택		12.4	405	49	-356	-27,336	-5,467	-32,803
	2주택	일반	5.3	246	52	-194			
		조정 대상	6.9	1,427	221	-1,206			
	3주택 이상		13.7	1,179	187	-992			
2025	1주택		12.4	450	50	-399	-30,026	-6,005	-36,031
	2주택	일반	5.3	278	60	-217			
		조정 대상	6.9	1,567	251	-1,315			
	3주택 이상		13.7	1,296	210	-1,086			
누적							-125,802	-25,160	-150,962
연평균							-25,160	-5,032	-30,192

주: 1. 주택보유수별 구분은 2018년 과표별 주택보유수 인원 기준

2. 조정대상지역은 서울시와 세종시에만 적용된다고 가정

자료: 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나) 법인

(1) 2019~2020년 과표구간별 법인당 공시가격 추정

- 2018년 세법개정으로 2019년 이후 1주택/2주택 일반지역/2주택 조정대상지역/3주택 이상 법인 4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추정
 - 주택보유수는 2018년 과표구간별 주택보유수 비율을 이용하여 구분
 - 2016년 이후 행정구역 전체가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한 서울시와 세종시만 조정대상지역으로 가정
- 2018년 4개 그룹 각각 지역별·과표구간별 인원당 공시가격을 역산한 후, 2019~2020년의 법인당 공시가격을 추정
 - 2018년 지역별·과표구간별 실적자료를 이용하여 1주택/2주택 일반지역/2주택 조정대상지역/3주택 이상 법인의 법인당 공시가격을 역산
 - 공시가격 = {과세표준/공정시장가액비율(80%)} + 과세기준액
 - ※ (과세기준액) 1주택 법인 9억원, 다주택 법인 6억원
 - 2018년 지역별·과표구간별 인원당 공시가격 추정치를 이용하여 2019~2020년 법인당 공시가격을 추정
 - 공시가격 = 공시가격 추정치('18년) × 공시가격 상승률('19년~'20년)
- 추정결과, 그룹별 법인당 전국평균 공시가격은 2018년 10.4~25.5억원에서 2020년 13.3~29.8억원으로 상승

〈법인당 공시가격 추정: 2018~2020년, 그룹별〉

(단위: 만명, 억원)

구분		인원	2018년 공시가격	2019년 공시가격	2020년 공시가격
1주택		0.3	13.1	14.4	15.7
2주택	일반지역	0.1	13.0	13.1	13.3
	조정대상지역	0.2	10.4	11.9	13.4
3주택 이상		0.3	25.5	27.5	29.8

주: 1. 과세대상 주택보유수별 구분은 2018년 실적 기준

2. 조정대상지역은 서울시와 세종시에만 적용된다고 가정

3. 2019~2020년 공시가격은 추정된 2018년 공시가격에 2019~2020년 지역별 공시가격 상승률을 적용

자료: 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2021~2025년 세수효과 추정

□ 2021~2025년간 1주택/2주택 일반지역/2주택 조정대상지역/3주택 이상자 각각의 지역별·과표별 현행 및 개정안의 법인당 결정세액 추정하여, 그 차이로 세수효과를 산출

- 향후 공시가격 상승률은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전망을 이용하여 계산한 값을 반영
- 지역별·과표별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서 현행 및 개정안의 과세기준액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반영

－ 과세표준 = (공시가격-과세기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과세기준액(1주택/다주택): 현행 9억원/6억원 → 개정안 없음

공정시장가액비율: 현행 95%(’21년), 100%(’22년 이후) →

개정안 80%(’21년 이후)

- 지역별·과표별 결정세액은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적용한 후, 재산세 공제 등을 반영하여 추정

- 결정세액 = (과세표준×세율)-(재산세 공제액)-(세부담 상한 초과액)
- 세율은 2020년 개정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현행 및 개정안 모두 2주택 이하 법인 3%, 3주택 이상 법인※ 6% 비례세율 적용
- ※ 조정대상지역은 1주택/2주택 이상으로 구분
- 현행 및 개정안의 인원당 결정세액 차이를 바탕으로 인원당 세수효과를 추정

〈인원당 세수효과 추정과정 예시: 서울지역 법인 1주택 기준, 2021년〉

과세표준 구간		인원 (만명)	'21년 공시 가격 (억원)	현행		개정안		1인당 세수 효과 ⁴⁾ (만원)
				과세 표준 ²⁾ (억원)	결정 세액 ³⁾ (만원)	과세 표준 ²⁾ (억원)	결정 세액 ³⁾ (만원)	
서울	0.1억원 이하	0.01	11.9	11.3	3,168	9.5	2,668	-500
	0.5억원 이하	0.02	12.4	11.7	3,304	9.9	2,782	-522
	⋮							
	80억원 이하	0.0001	117.5	111.6	32,285	94.0	27,187	-5,098
전국	총계 · 평균	0.3	16.1	15.3	4,333	12.9	3,649	-684

주: 1) 2021년 공시가격은 2020년 공시가격에 2.3% 상승을 가정

2) 과세표준은 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비율로 계산

3) 결정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반영한 후, 재산세 공제액 등을 차감하여 계산

4) 세수효과는 현행 및 개정안의 결정세액 차이로 계산

자료: 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동일한 방식으로 2021~2025년의 그룹별 전국평균 법인당 세수효과를 추정한 후, 2018년 납세인원수를 곱하여 전체 세수효과를 추정
- 추정한 종부세 세수효과를 바탕으로 부가세(surtax)인 농특세(종부세의 20%) 세수효과를 추정
- 법인의 주택분 과세표준 인하의 세수효과는 2021~2025년간 총 1조 2,688 억원(연평균 2,538억원)으로 추정

〈법인의 과세표준 인하안의 세수효과 추정: 2021~2025년〉

연도	보유주택수		인원 (만명)	인원당 결정세액 (만원)		세수효과 (만원, 억원)			
				현행	개정안	1인당	종부세	농특세	합계
2021	1주택		0.3	4,333	3,649	-684	-1,569	-314	-1,882
	2주택	일반	0.1	3,726	3,137	-588			
		조정 대상	0.2	7,584	6,386	-1,197			
	3주택 이상		0.3	16,999	14,315	-2,684			
2022	1주택		0.3	4,668	3,734	-934	-2,140	-428	-2,568
	2주택	일반	0.1	4,013	3,211	-803			
		조정 대상	0.2	8,169	6,536	-1,634			
	3주택 이상		0.3	18,312	14,649	-3,662			
2023	1주택		0.3	4,771	3,817	-954	-2,188	-438	-2,625
	2주택	일반	0.1	4,102	3,281	-820			
		조정 대상	0.2	8,350	6,680	-1,670			
	3주택 이상		0.3	18,716	14,973	-3,743			
2024	1주택		0.3	4,991	3,993	-998	-2,289	-458	-2,746
	2주택	일반	0.1	4,291	3,433	-858			
		조정 대상	0.2	8,735	6,988	-1,747			
	3주택 이상		0.3	19,580	15,664	-3,916			
2025	1주택		0.3	5,210	4,168	-1,042	-2,389	-478	-2,866
	2주택	일반	0.1	4,479	3,583	-896			
		조정 대상	0.2	9,118	7,294	-1,824			
	3주택 이상		0.3	20,437	16,349	-4,087			
누적						-10,574	-2,115	-12,688	
연평균						-2,115	-423	-2,538	

주: 1. 과세대상 주택보유수별 구분은 2018년 결정세액 비중을 기준

2. 조정대상지역은 서울시와 세종시에만 적용된다고 가정

자료: 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1주택 장기보유자 세액공제율 인상으로 인한 세수효과

- 1주택 장기보유자 세액공제율 인상에 따른 세수효과 추정
 - 세액공제는 최근 5년 연평균 상승률을 유지한다는 가정하에 개정안에 따른 1주택 장기보유자 세액공제율 10~20%p 인상을 고려하여 세수효과 추정
 - 공시가격이 최근 5년 연평균 상승률을 유지한다고 가정할 때에는 최근 3년 (2014~2018년) 연평균 증가율인 25.4% 증가를 가정
 - 2018년 고령자 및 장기보유 합산공제율 구간별 공제실적에 인상율을 적용하여 추정

가) 2019~2020년 1주택자 세액공제액 추정

- 2018년 실적을 바탕으로 2019~2020년의 1주택자 세액공제액을 추정하면, 2019년 285억원, 2020년 358억원으로 추정
 - 2018년 세법개정으로 1주택자 중 15년 이상 장기보유자의 세액공제율이 10%p 인상
 - 단,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의 세액공제율 중복적용은 70%로 제한
 - 공제율 인상효과를 제외하고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세액공제액 증가율은 최근 5년 연평균 상승률을 유지한다고 가정
 - 최근 5년(2014~2018년) 세액공제액 연평균 증가율: 25.4%

〈주택자 세액공제액 추정: 2019~2020년〉

(단위: %, 억원)

보유 기간별	고령자별	세액공제('18년, 실적)		세액공제('19년~'20년,추정)		
		합산공제율	금액	합산공제율	'19년 금액	'20년 금액
5년 미만	60세~65세	10	1	10	1	1
	65세~70세	20	1	20	2	2
	70세 이상	30	3	30	4	4
5년~10년	60세 미만	20	6	20	8	9
	60세~65세	30	2	30	3	4
	65세~70세	40	2	40	3	3
	70세 이상	50	4	50	5	6
10년~15년	60세 미만	40	15	40	18	23
	60세~65세	50	7	50	8	10
	65세~70세	60	7	60	9	11
	70세 이상	70	13	70	16	20
15년~20년	60세 미만	40	14	50	21	27
	60세~65세	50	9	60	14	17
	65세~70세	60	11	70	15	19
	70세 이상	70	20	70	26	32
20년 이상	60세 미만	40	9	50	14	17
	60세~65세	50	11	60	17	21
	65세~70세	60	16	70	24	30
	70세 이상	70	63	70	79	100
합계		-	213	-	285	358

주: 1. 음영은 2018년 세법개정으로 인한 장기보유 공제율 인상 반영

2. 세액공제 대상자의 연령 및 보유기간 변동으로 인한 효과는 미반영

자료: 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나) 2021~2025년 세수효과 추정

□ 2020년 추정치를 바탕으로 2021년의 현행 및 개정안의 1주택자 세액 공제액을 추정하여 세수효과를 구하면 55억원 수준

- 2020년 세법개정으로 1주택 고령자의 세액공제율이 10%p 인상
 -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의 세액공제의 합산공제율 70%에서 80%로 인상
 - ※ 합산공제율: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 세액공제의 중복적용의 제한선

- 공제율 인상효과를 제외하고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세액공제액 증가율은 최근 5년 연평균 상승률을 유지한다고 가정
- 최근 5년(2014~2018년) 세액공제액 연평균 증가율: 25.4%

〈1주택자 세액공제율 인상안의 세수효과 추정: 2021년 기준〉

(단위: %, 억원)

보유기간	고령자	공제액			세수효과		
		'20년	'21년 현행	'21년 개정안	종부세	농특세	계
5년 미만	60세~65세	1	4	4	-	-	-
	65세~70세	2	4	4	-	-	-
	70세 이상	4	7	7	-	-	-
5년~10년	60세 미만	9	12	17	6	1	7
	60세~65세	4	6	8	2	0.3	2
	65세~70세	3	5	6	1	0.2	1
	70세 이상	6	9	11	2	0.3	2
10년~15년	60세 미만	23	29	36	7	1	9
	60세~65세	10	16	18	3	1	3
	65세~70세	11	16	18	2	0.5	3
	70세 이상	20	29	29	-	-	-
15년~20년	60세 미만	27	34	41	7	1	8
	60세~65세	17	25	29	4	1	4
	65세~70세	19	28	28	-	-	-
	70세 이상	32	46	46	-	-	-
20년 이상	60세 미만	17	22	31	9	2	11
	60세~65세	21	31	35	4	1	5
	65세~70세	30	43	43	-	-	-
	70세 이상	100	143	143	-	-	-
합계		358	507	552	46	9	55

주: 세액공제 대상자의 연령 및 보유기간 변동으로 인한 효과는 미반영

자료: 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2021~2025년 세수효과는 총 453억원으로 추정

- 기간중 세수효과 증가율은 최근 5년의 세액공제율 증가율(25.4%) 적용

〈1주택 고령자 세액공제율 인상안의 세수효과 추정: 2021~2025년〉

(단위: %, 억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누적	연평균
합계	-55	-69	-86	-108	-135	-453	-91
종합부동산세	-46	-57	-72	-90	-113	-377	-75
농어촌특별세	-9	-11	-14	-18	-23	-75	-15

3) 세수효과 종합

- 개정안에 따른 중부세와 부가세(surtax)인 농특세의 세수효과는 다음과 같음
 - 세부담 상한비율 인상에 대한 세수효과는 자료의 한계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음

〈개정안에 따른 비용추계 결과〉

(단위: 억원)

	2021	2022	2023	2024	2025	누적	연평균
합계(A+B)	-26,354	-30,766	-32,293	-35,657	-39,032	-164,103	-32,821
과세표준·	개인	-24,417	-28,129	-29,582	-32,803	-150,962	-30,192
세율인하							
법인	-1,882	-2,568	-2,625	-2,746	-2,866	-12,688	-2,538
공제율 인상	-55	-69	-86	-108	-135	-453	-91
중부세 계(A)	-21,963	-25,638	-26,911	-29,715	-32,528	-136,753	-27,350
과세표준·	개인	-20,348	-23,441	-24,651	-27,336	-125,802	-25,160
세율인하							
법인	-1,569	-2,140	-2,188	-2,289	-2,389	-10,574	-2,115
공제율 인상	-46	-57	-72	-90	-113	-377	-75
농특세 계(B)	-4,393	-5,127	-5,382	-5,943	-6,506	-27,350	-5,470
과세표준·	개인	-4,070	-4,688	-4,930	-5,467	-25,160	-5,032
세율인하							
법인	-314	-428	-438	-458	-478	-2,115	-423
공제율 인상	-9	-11	-14	-18	-23	-75	-15

바. 부대의견

- 추계결과는 2018년 부동산 보유구조가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
 - 보유세 세부담 강화로 인한 보유현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세수효과는 달라지므로 해석에 유의할 필요
- 공시가격의 향후 증가율 수준에 따라 세수규모는 달라질 수 있음
 - 공시가격 상승률은 시장요인(주택가격의 변동성) 뿐만 아니라 시세반영 비율 조정 등 정부정책의 영향도 반영되어 예측이 어려움
 - 2021년 이후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시세변동률에 따른 공시가격의 영향을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향후 시세의 상승·하락에 따라 추계결과는 달라질 수 있음

3.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과세기준액 인상 등: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법률안」 (2020.06.17. 발의)

가. 주요내용

-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과세기준액 인상,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및 법률로 상향 규정
 - 현행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시행령 규정사항

나. 비용추계 결과

- 종합부동산세(이하 중부세) 주택분 과세기준액을 인상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0%로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경우, 국세수입은 2021~2025년 5년간 총 9조 779억원(연평균 1조 8,156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 종합부동산세 등〉

(단위: 억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누적	연평균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액 인상 등 (A+B)	-10,469	-16,413	-18,708	-21,235	-23,955	-90,779	-18,156
- 종합부동산세(A)	-8,724	-13,677	-15,590	-17,696	-19,962	-75,639	-15,130
- 농어촌특별세(B)	-1,745	-2,735	-3,118	-3,539	-3,992	-15,130	-3,026

다. 재정수반요인

- 종합부동산세에서 주택분의 과세기준액을 인상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과 동일하게 하는 과정에서 국세수입 감소가 예상(안 제8조, 제13조)
- 종부세는 공시가격에서 과세기준액 등을 반영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후,
세율을 적용한 값에 기납부재산세액, 세액공제액, 세부담 상한 초과액을
감하여 과세

$$\text{종부세액} = \underbrace{\{(\text{공시가격} \times \text{합산액} - \text{과세기준액}) \times \text{공정시장가액비율}\}}_{\text{과세표준}} \times \text{세율}$$

- 기납부재산세액 공제 - 1주택자 세액공제(고령자·장기보유)

- 세부담 상한 초과액

- 주택분 과세기준액은 현행 대비 3억원씩 인상하여 국세수입 감소가 예상
 - (1주택자) 현행 9억원 → 개정안 12억원
 - (다주택자) 현행 6억원 → 개정안 9억원
- 공정시장가액비율은 90%로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2021년 5%p,
2022년 이후 10%p 인하됨에 따라 국세수입 감소가 예상

〈종합부동산세 일부개정법률안: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단위: %, %p)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및 토지)		
	현행(A, 시행령 규정)	개정안(B, 법률규정)	
			B - A
2021	95	90	△5
2022 이후	100	90	△10

라. 비용추계의 전제

- (자료) 개정안에 따른 비용추계는 국세청에서 제공받은 2018년 중부세 주택분 자료를 바탕으로 함
 - 지역별·과세표준별 종합부동산세 실적자료, 과세표준별 보유주택수 비중자료, 주택분 고령자·보유기간별 세액공제 실적자료 등
 - (지역) 17개 광역시·도 (과세표준) 1,000만원이하부터 100억원초과 등 21개 구간
 - ※ 단, 조정대상지역 관련정보는 없음
- (공시가격 상승률) 최근 3년(2018~2020년)간 연평균 공시가격 상승률의 평균값이 향후에도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공시가격 상승률은 시장요인(주택가격의 변동성) 뿐만 아니라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비율 상승 등 정부정책의 영향도 반영되므로 예측이 어려움
 - (주택) 납세자는 주소지에 납세대상인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최근 3년 해당지역의 표준단독주택·개별단독주택·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의 가중평균(가중치: 호수)만큼 매년 상승한다고 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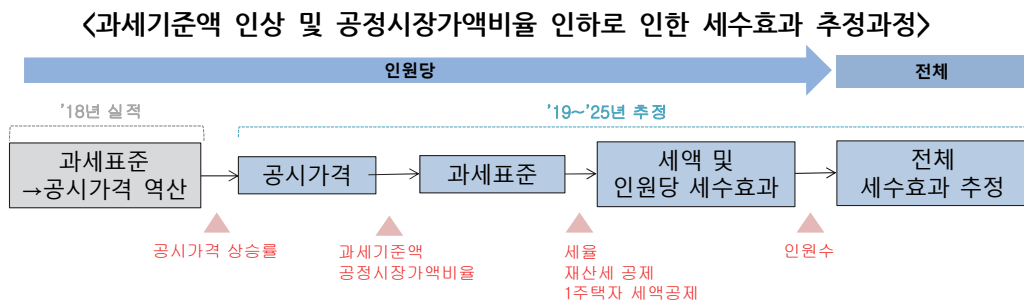
〈공시가격의 지역별 연평균 상승률: 2018~2020년〉

(단위: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12.2	1.0	4.4	2.1	5.0	6.3	-3.3	5.6	4.0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국
-1.1	-3.2	-1.6	-0.2	3.6	-3.3	-4.4	0.8	5.4

주: 최근 3년 연평균 표준단독주택, 개별단독주택,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의 가중평균값(가중치: 호수)
 자료: 국토교통부 발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토지) 최근 3년 전국 표준지·개별토지 공시가격 상승률의 가중평균(가중치: 필지수)인 6.8%만큼 매년 상승한다고 가정
- (추정방법) 종부세의 지역별·과표별 실적자료를 바탕으로, 과세기준액 인상,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로 인한 인원당 세수효과를 추정하고, 과세대상 인원수를 곱한 후 1주택자 세액공제액 감소를 반영하여 전체 세수효과 추정
 - 주택분은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는 4개 그룹으로 구분
 - 1주택/2주택 일반지역/2주택 조정대상지역/3주택 이상 등 4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추정
 - 2016년 이후 행정구역내 전 지역이 지속적으로 조정대상지역인 서울시, 세종시만 추계기간동안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할 것으로 가정
 - 토지분은 과세기준액 및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는 2개 그룹으로 구분
 - 종합합산토지/별도합산토지 등 2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추정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인원당 세수효과: 2018년 그룹별·지역별·과표별 인원당 공시가격을 추정한 후, 향후 인원당 공시가격, 과세표준, 결정세액을 추정하여, 현행 및 개정안의 결정세액 차이로 산출

- 전체 세수효과: 인원당 세수효과에 인원수를 곱하여 추정
 - 인원은 2018년 실적 기준, 인원수의 증가로 인한 세수효과는 고려하지 않음

마. 비용추계 상세 내역

- 과세기준액 인상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로 인한 세수효과를 주택분과 토지분으로 나눠서 추정
 - 2021~2025년간 총 9조 779억원의 세수효과 발생
 - 주택분은 6조 7,244억원, 토지분은 2조 3,535억원

1) 주택분 세수효과

- 2020년의 인원당 공시가격을 추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2021~2025년의 인원당 공시가격과 현행 및 개정안의 과세표준, 결정세액을 추정하여 세수효과 산출
 - 2020년 인원당 공시가격은 2018년 실적을 바탕으로 2018년 인원당 공시가격을 역산한 후, 2019~2020년 지역별 공시가격 상승률을 반영하여 추정
 - 2020년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2021~2025년 공시가격을 추정한 후, 현행 및 개정안의 인원당 과세표준 및 결정세액 추정
 - 현행 및 개정안의 과세기준액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 및 결정세액을 각각 추정
 - ※ 과세기준액(1주택자/다주택자): 현행 9억원/6억원 → 개정안 12억원/9억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현행 95%(‘21년), 100%(‘22년 이후) → 개정안 90%(‘21년 이후)

- 현행 및 개정안의 결정세액 차이로 인원당 세수효과를 산출하고, 인원수를 곱하여 전체 세수효과 추정

가) 2020년 인원당 공시가격 추정

- 2018년 세법개정으로 2019년 이후 1주택/2주택 일반지역/2주택 조정대상지역/3주택 이상자의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이를 4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추정
 - 주택보유수는 2018년 과표구간별 주택보유수 비율을 이용하여 구분
 -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행정구역 전체가 조정대상지역인 서울시와 세종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가정하고, 이외에는 일반지역으로 가정
 - 조정대상지역: 서울·대전·세종 전 지역, 경기·인천 일부제외 전 지역, 청주 오창·오송읍 (지정일: 2020.6.19.)
- 2018년 4개 그룹 각각 지역별·과표별 실적을 바탕으로 인원당 공시가격을 역산한 후, 2019~2020년의 인원당 공시가격을 추정
 - 2018년 지역별·과표별 실적자료를 이용하여 1주택/2주택 일반지역/2주택 조정대상지역/3주택 이상자의 인원당 공시가격을 역산
 - 공시가격 = {과세표준/공정시장가액비율(80%)} + 과세기준액
※ (과세기준액) 1주택자 9억원, 다주택자 6억원
 - 2018년 지역별·과표별 인원당 공시가격 추정치를 이용하여 2019년 인원당 공시가격과 2020년 인원당 공시가격을 추정
 - 공시가격 = 공시가격 추정치(18년) × 지역별 공시가격 상승률(19~20년)

〈공시가격 추정과정 예시: 1주택자 과표구간별 인원당, 2018~2020년〉

과세표준 구간		1주택 인원 ¹⁾ (명)	'18년 과표 (만원)	공시가격 (억원)		
				2018 ²⁾	2019	2020
서울	1천만원 이하	4,605	459	9.1	10.3	11.7
	5천만원 이하	9,617	2,970	9.4	10.7	12.1
	⋮					
	100억원 초과	1	3,161,944	404.2	461.0	520.6
전국	총계 · 평균 ³⁾	127,369	24,086	12.0	13.1	14.2

주: 1) 1주택 인원은 지역별 · 과표별 인원내 과표별 1주택자 비율을 곱하여 추정

2) 2018년 공시가격은 (과세표준/80%+9억원)으로 계산하고, 2019~2020년 공시가격은 지역별 증가율을 반영하여 계산

3) 인원은 총계, 과세표준 및 공시가격은 지역별 · 과표별 인원수를 가중치로 한 가중평균값임

자료: 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추정결과, 1주택/2주택 일반지역/2주택 조정대상지역/3주택 이상자의 인원당 전국평균 공시가격은 2018년 8.6~12.0억원에서 2020년 8.9~14.2억원으로 상승

〈중부세 대상 인원당 공시가격 추정: 2018년~2020년, 그룹별〉

구분		인원(명)	2018	2019	2020
			공시가격 (억원)	공시가격 (억원)	공시가격 (억원)
1주택		127,369	12.0	13.1	14.2
2주택	일반지역	54,142	8.6	8.8	8.9
	조정대상지역	70,789	9.9	11.3	12.7
3주택 이상		140,943	10.0	10.9	11.9

주: 1. 과세대상 주택보유수별 구분은 2018년 실적 기준

2. 조정대상지역은 서울시와 세종시에만 적용된다고 가정

3. 2019~2020년 공시가격은 추정된 2018년 공시가격에 2019~2020년 지역별 공시가격 상승률을 적용

자료: 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나) 2021~2025년 세수효과 추정

- 2021~2025년간 1주택/2주택 일반지역/2주택 조정대상지역/3주택 이상자 각각의 지역별·과표별 현행 및 개정안의 인원당 결정세액을 추정하여, 그 차이로 세수효과를 산출
 - 2021~2025년간 지역별·과표별 1주택자의 인원당 공시가격은 최근 3년(2018~2020년)의 지역별 연평균 상승률 수준으로 매년 증가한다고 가정
 - 전국평균 5.4% 수준으로, 서울 12.2%, 대전 6.3%, 광주 5.0% 순([표 3] 참조)
 - 지역별·과표별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서 현행 및 개정안의 과세기준액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반영
 - 과세표준 = (공시가격-과세기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 ※ 과세기준액(1주택자/다주택자): 현행 9억원/6억원 → 개정안 12억원/9억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현행 95%(‘21년), 100%(‘22년 이후) → 개정안 90%(‘21년 이후)
 - 지역별·과표별 결정세액은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적용한 후, 재산세 공제 및 1주택자 세액공제, 세부담 상한 초과액을 반영하여 추정
 - 결정세액 = (과세표준×세율)-(재산세 공제액)-(세액공제)-(세부담 상한 초과액)
 - 재산세 공제액 추정치는 종부세 과세표준×60%×0.4%로 산출
 - ※ 종합부동산세 시행령 제4조의2 산식에 근거
 - 1주택자 세액공제액은 2018년 실적에서 25.4%만큼 매년 증가한다고 가정하되, 개정안 시행에 따라 2021년은 1주택자의 세액감소분(-42.4%)을 반영
 - ※ 최근 5년(2016~2020년)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액 연평균 증가율: 25.4%
 - 세부담 상한 초과액은 지역별·과표별 전년도 재산세 및 종부세액 추정치의 150%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으로 산출

※ 공시가격 상승률이 세부담 상한비율보다 낮아 초과액은 미미할 것으로 추정되나, 지역이나 과표구간을 더욱 세분화하면 다른 추정치가 도출될 수 있음

- 현행 및 개정안의 인원당 결정세액 차이를 바탕으로 인원당 세수효과를 추정

〈인원당 세수효과 추정과정 예시: 서울지역 1주택자 기준, 2021년〉

과세표준 구간		1주택 인원 (명)	'21년 공시 가격 ¹⁾ (억원)	현행		개정안		1인당 세수 효과 ⁴⁾ (만원)
				과세 표준 ²⁾ (억원)	결정 세액 ³⁾ (만원)	과세 표준 ²⁾ (억원)	결정 세액 ³⁾ (만원)	
서울	1천만원 이하	4,605	13.1	3.9	125	1.0	27	-98
	5천만원 이하	9,617	13.5	4.3	147	1.4	39	-108
	⋮							
	100억원 초과	1	583.9	546.2	129,388	514.7	121,346	-8,042
전국	총계 · 평균	127,369	15.5	6.2	306	3.5	178	-129

주: 1) 2021년 공시가격은 2020년 공시가격에 최근 3년(2018~2020년) 지역별 증가율을 반영하여 계산
 2) 과세표준은 (공시가격·과세기준액)×공정시장가액비율로 계산
 3) 결정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반영한 후, 재산세 공제액, 1주택자 세액공제액, 세부담 상한 초과액을 차감하여 계산
 4) 세수효과는 현행 및 개정안의 결정세액 차이로 계산
 자료: 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동일한 방식으로 2021~2025년의 그룹별 전국평균 인원당 세수효과를 추정한 후, 2018년 납세인원수를 곱하여 전체 세수효과를 추정
 - 추정한 종부세 세수효과를 바탕으로 부가세(surtax)인 농특세(종부세의 20%) 세수효과를 추정
 - 주택분 과세기준액 인상 및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로 인한 세수효과는 2021~2025년간 총 6조 7,244억원으로 추정

〈주택분 세수효과 추정: 2021~2025년〉

연도	보유주택		인원 (만명)	인원당 결정세액 (만원)		세수효과 (만원, 억원)			
				현행	개정안	1인당	종부세	농특세	합계
2021	1주택		12.7	306	178	-129	-6,938	-1,388	-8,326
	2주택	일반	5.4	152	62	-89			
		조정 대상	7.1	644	387	-257			
	3주택 이상		14.1	636	424	-213			
2022	1주택		12.7	442	255	-187	-9,802	-1,960	-11,763
	2주택	일반	5.4	177	70	-108			
		조정 대상	7.1	896	528	-369			
	3주택 이상		14.1	827	527	-300			
2023	1주택		12.7	577	357	-219	-11,406	-2,281	-13,687
	2주택	일반	5.4	194	78	-116			
		조정 대상	7.1	1,142	705	-437			
	3주택 이상		14.1	1,001	654	-347			
2024	1주택		12.7	737	487	-250	-13,076	-2,615	-15,692
	2주택	일반	5.4	212	88	-124			
		조정 대상	7.1	1,440	929	-511			
	3주택 이상		14.1	1,209	811	-397			
2025	1주택		12.7	930	649	-281	-14,813	-2,963	-17,760
	2주택	일반	5.4	232	100	-132			
		조정 대상	7.1	1,795	1,206	-588			
	3주택 이상		14.1	1,455	1,004	-451			
누적							-56,037	-11,207	-67,244
연평균							-11,207	-2,241	-13,449

자료: 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토지분 세수효과

- 2020년의 인원당 공시가격을 추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2021~2025년의 인원당 공시가격과 현행 및 개정안의 과세표준, 결정세액을 추정하여 세수효과 산출
 - 2020년 인원당 공시가격은 2018년 실적을 바탕으로 2018년 인원당 공시가격을 역산한 후, 2019~2020년 전국 공시가격 평균 상승률을 반영하여 추정
 - 2020년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2021~2025년 공시가격을 추정한 후, 현행 및 개정안의 인원당 과세표준 및 결정세액 추정
 - 현행 및 개정안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 및 결정세액을 각각 추정
 - ※ 공정시장가액비율: 현행 95%(’21년), 100%(’22년 이후) → 개정안 90%(’21년 이후)
 - 현행 및 개정안의 결정세액 차이로 인원당 세수효과를 산출하고, 인원수를 곱하여 전체 세수효과 추정

가) 2020년 인원당 공시가격 추정

- 종합합산토지와 별도합산토지의 2018년 실적을 바탕으로 인원당 공시가격을 역산한 후, 2019~2020년의 인원당 공시가격을 추정
 - 2018년 실적자료를 이용하여 종합합산토지/별도합산토지의 인원당 공시가격을 역산
 - 공시가격 = {과세표준/공정시장가액비율(80%)} + 과세기준액
 - ※ (과세기준액) 종합합산토지 5억원, 별도합산토지 80억원

- 역산한 공시가격 추정치를 이용하여 2019~2020년 인원당 공시가격 추정
 - 공시가격 = 공시가격 추정치('18년) × 공시가격 상승률('19~'20년 실적)
 - ※ 공시가격 상승률: '19년 8.1%, '20년 6.0%

□ 추정결과, 중부세 대상자의 인원당 공시가격은 전국평균 기준으로 2018년 종합합산토지 17.3억원, 별도합산토지 339.7억원에서 2020년 각각 19.8억원, 388.9억원으로 증가

〈공시가격 추정과정 예시: 지역별·과표구간별 인원당, 2018~2020년〉

과세표준 구간			총인원 (명)	'18년 과표 (만원)	공시가격(억원)		
					2018 ¹⁾	2019	2020
종합 합산 토지	서울	5천만원 이하	2,446	2,439	5.3	5.7	6.1
		1억원 이하	1,959	7,437	5.9	6.4	6.8
		⋮					
	전국	1,000억원 초과	25	24,739,557	3,097.4	3,346.8	3,546.1
		총계 · 평균 ²⁾	76,674	98,556	17.3	18.7	19.8
별도 합산 토지	서울	1억원 이하	197	3,075	80.4	86.9	92.0
		5억원 이하	454	29,686	83.7	90.5	95.8
		⋮					
	전국	7,000억원 초과	27	162,657,120	20,412.1	22,055.5	23,369.0
		총계 · 평균 ²⁾	9,325	2,077,632	339.7	367.1	388.9

주: 1) 2018년 공시가격은 {과세표준/80%+과세기준액(종합합산토지 5억원, 별도합산토지 80억원)}으로 계산하고, 2019~2020년 공시가격은 공시가격 증가율을 반영하여 계산

2) 인원은 총계, 과세표준 및 공시가격은 지역별·과표별 인원수를 가중치로 한 가중평균값임
자료: 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나) 2021~2025년 세수효과 추정

- 2021~2025년간 종합합산토지와 별도합산토지의 지역별·과표별 인원당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현행 및 개정안의 과세표준과 결정세액을 추정하여, 현행 및 개정안의 결정세액 차이로 세수효과를 산출
 - 2021~2025년간 지역별·과표별 인원당 공시가격은 최근 3년(2018~2020년)의 연평균 상승률인 6.8% 수준으로 매년 증가한다고 가정
 - 지역별·과표별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서 현행 및 개정안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반영
 - － 과세표준 = (공시가격-과세기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 ※ 공정시장가액비율: 현행 95%(’21년), 100%(’22년 이후) → 개정안 90%(’21년 이후)
 - 지역별·과표별 결정세액은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적용하고 재산세 공제액과 세부담 상한 초과액을 차감하여 추정
 - － 결정세액 = (과세표준×세율)-(재산세 공제액)-(세부담 상한 초과액)
 - － 재산세 공제액 추정치는 (종부세 과세표준)×70%×0.4~0.5%로 산출
 - ※ 종합부동산세 시행령 제4조의2 산식에 근거
 - － 세부담 상한 초과액은 지역별·과표별 전년도 재산세 및 종부세액 추정치의 150%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으로 산출
 - ※ 공시가격 상승률이 세부담 상한비율보다 낮아 초과액은 미미할 것으로 추정되나, 지역이나 과표구간을 더욱 세분화하면 다른 추정치가 도출될 수 있음

- 현행 및 개정안의 인원당 결정세액 차이를 바탕으로 인원당 세수효과를 추정

〈인원당 세수효과 추정과정 예시: 지역별·과표구간별 인원당, 2021년〉

과세표준 구간			인원 (명)	'21년 공시 가격 ¹⁾ (억원)	현행		개정안		1인당 세수 효과 ⁴⁾ (만원)
					과세 표준 ²⁾ (억원)	결정 세액 ³⁾ (만원)	과세 표준 ²⁾ (억원)	결정 세액 ³⁾ (만원)	
종합 합산 토지	서울	5천만원 이하	2,446	6.5	1.4	94	1.3	89	-5
		1억원 이하	1,959	7.2	2.1	142	2.0	134	-8
		:							
		1,000억원 초과	25	3,785.9	3,591.8	946,099	3,402.8	855,988	-50,111
	전국	총계·평균 ²⁾	76,674	21.2	15.4	2,535	14.6	2,379	-156
별도 합산 토지	서울	1억원 이하	197	98.3	17.3	395	16.4	374	-20
		5억원 이하	454	102.3	21.2	480	20.1	455	-25
		:							
		7,000억원 초과	27	24,940	23,655	992,620	22,382.0	940,061	-52,559
	전국	총계·평균 ²⁾	9,325	415.2	318.4	11,195	301.7	10,563	-633

주: 1) 2021년 공시가격은 2020년 공시가격에 최근 3년(2018~2020년) 지역별 증가율을 반영하여 계산

2) 과세표준은 (공시가격·과세기준액)×공정시장가액비율로 계산

3) 결정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반영한 값에 재산세 공제액 및 세부담 상한 초과액 추정치를 공제하여 계산

4) 인원당 세수효과는 현행 및 개정안의 결정세액의 차이로 계산

자료: 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동일한 방식으로 2021~2025년의 그룹별 전국평균 인원당 세수효과를 추정한 후, 2018년 납세인원수를 곱하여 전체 세수효과를 추정
- 추정한 종부세 세수효과를 바탕으로 부가세(surtax)인 농특세(종부세의 20%) 세수효과를 추정
 - 토지분 과세기준액 인상 및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로 인한 세수효과는 2021~2025년간 총 2조 3,535억원으로 추정

〈토지분 세수효과 추정: 2021~2025년〉

연도	구분	인원 (명)	인원당 결정세액 (만원)		세수효과 (만원, 억원)			
			현행	개정안	1인당	종부세	농특세	합계
2021	종합합산	76,674	2,535	2,379	-156	-1,196	-239	-1,435
	별도합산	9,325	11,195	10,563	-633	-590	-118	-707
2022	종합합산	76,674	2,931	2,595	-336	-2,576	-515	-3,091
	별도합산	9,325	12,858	11,463	-1,394	-1,299	-260	-1,559
2023	종합합산	76,674	3,187	2,825	-362	-2,772	-554	-3,327
	별도합산	9,325	13,953	12,439	-1,514	-1,411	-282	-1,693
2024	종합합산	76,674	3,476	3,072	-404	-3,099	-620	-3,719
	별도합산	9,325	15,123	13,492	-1,631	-1,520	-304	-1,824
2025	종합합산	76,674	3,799	3,341	-458	-3,508	-702	-4,210
	별도합산	9,325	16,376	14,615	-1,760	-1,640	-328	-1,969
누적						-19,613	-3,923	-23,535
연평균						-3,923	-785	-4,707

자료: 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3) 세수효과 종합

- 개정안에 따라 주택분 과세기준액을 3억원 인상하고 주택 및 토지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0% 수준으로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경우 세수 효과는 다음과 같이 추계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 종합부동산세 등〉

(단위: 억원)

	2021	2022	2023	2024	2025	누적	연평균
합계(A+B)	-10,469	-16,413	-18,708	-21,235	-23,955	-90,779	-18,156
- 주택	-8,326	-11,763	-13,687	-15,692	-17,776	-67,244	-13,449
- 토지	-2,143	-4,650	-5,020	-5,543	-6,179	-23,535	-4,707
중부세(A)	-8,724	-13,677	-15,590	-17,696	-19,962	-75,639	-15,130
- 주택	-6,938	-9,802	-11,406	-13,076	-14,813	-56,037	-11,207
- 토지	-1,786	-3,875	-4,184	-4,620	-5,149	-19,613	-3,923
농특세(B)	-1,745	-2,735	-3,118	-3,539	-3,992	-15,130	-3,026
- 주택	-1,388	-1,960	-2,281	-2,615	-2,963	-11,207	-2,241
- 토지	-357	-775	-837	-924	-1,030	-3,923	-785

바. 부대의견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의 기준이 되는 주택 공시가격의 향후 증가율 수준에 따라 세수효과 규모는 달라질 수 있음
- 세부담 상한비율 인상 추계시 2018년 과표별 주택보유수를 기준으로 1주택/2주택/3주택 이상 보유자를 가정하였으므로, 향후 중부세 대상자의 주택보유수 분포 추이에 따라 세수효과 규모는 달라질 수 있음
- 세액공제액 대상자의 연령 및 보유기간 변동으로 인한 효과를 반영하면 세수효과 규모는 달라질 수 있음

IV 소비과세 분야

1.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비과세 기준을 배기량에서 자동차 가액으로 변경: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2020.10.22. 발의)

가. 주요내용

-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비과세 기준을 배기량 1,000cc 이하에서 자동차 가액 3,000만원 미만으로 변경

나. 비용추계 결과

- 승용자동차 비과세 기준을 배기량 1,000cc 이하에서 자동차 가액 3,000만원 미만으로 변경할 경우 개별소비세 등 재정수입은 2021년 9,052억원, 2025년 9,833억원으로 5년간 총 4조 7,164억원(연평균 9,433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개정안에 따른 비용추계 결과〉

(단위: 억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합계	연평균
개별소비세	-6,330	-6,456	-6,590	-6,730	-6,876	-32,982	-6,596
교육세	-1,899	-1,937	-1,977	-2,019	-2,063	-9,895	-1,979
부가가치세	-823	-839	-857	-875	-894	-4,288	-858
합계	-9,052	-9,233	-9,423	-9,623	-9,833	-47,164	-9,433

다. 재정수반요인

- 승용자동차 비과세 기준을 변경함에 따라 개별소비세 등 감소 예상
(안 제1조제2항제3호)
 -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비과세 기준
 - (현행) 배기량 1,000cc 이하 → (개정안) 자동차 가액 3,000만원 미만
 - 개별소비세 감소에 따라 교육세, 부가가치세 감소
 - 적용시기: 2021년부터

라. 비용추계의 전제

- 2020년 중 개정안이 통과되어 부칙에 따라 2021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전제하고, 세수효과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추계
- 비용추계 기간 동안 개별소비세 비과세 대상 승용자동차의 과세표준은 최근 3년간(2017~2019년) 연평균 증감율에 따를 것으로 가정
 - 국산 내수 승용자동차의 과세표준은 자동차 가액 3,000만원 미만 승용자동차가 점유하는 비중을 추정하여 산출
 -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상 과세표준은 현행 과세기준인 배기량으로 구분될 뿐, 개정안 과세기준인 자동차 가액으로 구분 불가
 - 비용추계 기간 동안 과세표준은 최근 3년간 연평균 증감율을 따르고, 이 중 3,000만원 미만 승용자동차의 과세표준은 해당 차량의 점유 비율이 일정하게 지속된다고 가정하여 적용
 - 3,000만원 미만 승용자동차의 점유 비율은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제출자료상

2019년 차종별 판매대수와 자동차 가격정보 검색(네이버 자동차, 다나와 자동차)을 통한 현시점 차종별 시세정보를 이용하여 추정

- 2019년 1,000cc 초과 승용자동차 총판매액 36조 9,414억원
 - (3,000만원 미만) 15조 1,770억원, 41.1%, (3,000만원 이상) 21조 7,644억원, 58.9%
 - 수입 내수 승용자동차의 과세표준은 관세청 제출자료상 자동차 가액 3,000만원 미만 승용자동차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이 최근 3년간 연평균 증감율에 따를 것으로 가정
 - 관세청 제출자료상 비과세 대상 승용자동차의 과세표준은 최근 3년간 연평균 3.4% 감소
- 비용추계 기간 동안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은 기본세율 5%를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
- 현행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6호에 따른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3.5%의 적용기간은 2020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마. 비용추계 상세 내역

- 자동차 가격 3,000만원 미만 승용자동차 비과세에 따른 세수효과는 국산 및 수입 내수 승용자동차의 비과세 대상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추계
- (국산 내수 승용자동차 과세표준) 국세통계연보상 최근 3년간(2017~2019년)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및 2019년 기준 자동차 가격 3,000만원 미만 점유 비율을 바탕으로 비과세 대상 과세표준 추계

- 최근 3년간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은 연평균 3.2% 증가

〈국산 내수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2017~2019년〉

(단위: 억원)

구 분	2017	2018	2019	연평균 증감율(%)
과세표준	224,130	226,469	238,533	3.2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자동차 가격 3,000만원 미만 승용자동차가 점유하는 비중은 41.1%로 추정
 -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제출자료상 2019년 차종별 판매대수와 자동차 가격 정보 검색(네이버 자동차, 다나와 자동차)을 통한 현시점 차종별 시세정보를 이용하여 산출
- 비과세 대상 승용자동차의 과세표준은 최근 3년간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연평균 증감율을 적용한 과세표준 추정치에 자동차 가격 3,000만원 미만 승용자동차의 점유 비중을 적용하여 추계

〈3,000만원 미만 국산 내수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추계: 2021~2025년〉

(단위: 억원)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전체 승용자동차 과세표준(A)	253,862	261,892	270,17	278,722	287,538
3,000만원 미만 승용자동차 과세표준 (B=A×41.1%)	104,297	107,596	110,999	114,510	118,132

- (수입 내수 승용자동차 과세표준) 자동차 가격 3,000만원 미만 승용자동차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이 관세청 제출자료상 최근 3년간 (2017~2019년) 연평균 증감율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
 - 최근 3년간 3,000만원 미만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은 연평균 3.4% 감소

<3,000만원 미만 수입 내수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2017~2019년>

(단위: 억원)

구 분	2017	2018	2019	연평균 증감율(%)
과세표준	25,639	27,788	23,911	-3.4%

자료: 관세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비과세 대상 승용자동차의 과세표준은 최근 3년간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의 연평균 증감율을 적용하여 추계

<3,000만원 미만 수입 내수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추계: 2021~2025년>

(단위: 억원)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과세표준	22,299	21,534	20,796	20,083	19,394

- (국산 및 수입 내수 승용자동차 과세표준) 자동차 가격 3,000만원 미만 국산 및 수입 승용자동차의 과세표준을 합산하여 추계

〈3,000만원 미만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추계: 2021~2025년〉

(단위: 억원)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국산 내수 승용자동차 과세표준	104,297	107,596	110,999	114,510	118,132
수입 내수 승용자동차 과세표준	22,299	21,534	20,796	20,083	19,394
합 계	126,596	129,130	131,795	134,593	137,526

- (세수효과) 국산 및 수입 내수 승용자동차 과세표준을 바탕으로
3,000만원 미만 승용자동차 비과세에 대한 세수효과 추계
-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기본세율 5%를 적용하여 추계

〈3,000만원 미만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등 추계: 2021~2025년〉

(단위: 억원)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과세표준(A)	126,596	129,130	131,795	134,593	137,526
개별소비세(B=A×5%)	6,330	6,456	6,590	6,730	6,876
교육세(C=B×30%)	1,899	1,937	1,977	2,019	2,063
부가가치세(D=[B+C]×10%)	823	839	857	875	894
합계(E=B+C+D)	9,052	9,233	9,423	9,623	9,833

2. 원료로 사용되는 중유를 과세대상에서 제외: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2020.12.02. 대안반영폐기 의결)

가. 주요내용

- 원료로 사용되는 중유를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나. 비용추계 결과

- 2021년 210억원, 2025년 210억원으로 5년간 총 1,051억원(연평균 210억원)의 재정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추계

〈개정안에 따른 비용추계 결과〉

(단위: 억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합계	연평균
개별소비세	-183	-183	-183	-183	-183	-914	-183
교육세	-27	-27	-27	-27	-27	-137	-27
합계	-210	-210	-210	-210	-210	-1,051	-210

다. 재정수반요인

- 원료로 사용되는 중유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개별소비세 등 감소 예상(안 제1조제2항제4호라목)
 - 중유를 연료용과 원료용으로 구분하고, 원료용 중유를 과세대상에서 제외
 - － 개별소비세 감소에 따라 교육세(개별소비세의 15%) 감소

라. 비용추계의 전제

- 2020년 중 개정안이 통과되어 2021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전제하고, 세수효과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추계
- 비용추계 기간 동안 석유제품 정제공정에 원료로 사용하는 중유의 투입량은 대한석유협회 제출자료상 최근 3년간(2017~2019년) 연평균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가정
 - 원료용 중유의 투입량은 원유 및 석유제품 가격 등 경제성을 고려하여 결정되나 각 정유사 정제설비 특성에 따라 투입 가능한 수량이 제한적 이므로 최근 3년간 연평균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가정
- 개정안에 따른 비과세 대상 중유량은 대한석유협회 제출자료상 2019년 기준 미환급 세액 비율을 적용하여 추계
 - 개별소비세 부과 석유제품(휘발유·경유·등유·석유가스 등)의 원료로 사용된 중유는 「개별소비세법」 제20조에 따라 이미 부과된 개별소비세를 환급
 - 개별소비세 미부과 석유제품(나프타·항공유·유탄유 등) 중 수출 석유제품의 원료로 사용된 중유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미 부과된 개별소비세를 환급
 - 따라서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개별소비세 미부과 석유제품 중 내수 석유제품의 원료로 사용된 중유를 대상으로 세수효과 추계

마. 비용추계 상세 내역

- 석유제품 정제공정에 원료로 사용하는 중유의 투입량은 최근 3년간 (2017~2019년) 연평균 3,175천kl

〈석유제품 정제공정에 원료로 사용하는 중유 투입량: 2017~2019년〉

(단위: 천kl)

구 분	2017	2018	2019	연평균
중유 투입량	2,133	3,742	3,651	3,175

자료: 대한석유협회, 각 정유사 제출자료 취합

- 비과세 대상 중유량은 석유제품 정제공정에 원료로 투입된 중유량의 최근 3년간 연평균 규모에 2019년 기준 미환급 세액 비율을 적용하여 추계
 - 대한석유협회 제출자료상 중유의 미환급 세액 비중은 33.9%
 - 비과세 대상 중유량: 3,175천kl × 33.9% = 1,075천kl
- 세수효과는 비용추계 기간 동안 비과세 대상 중유량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여 추계

〈석유제품 정제공정에 원료로 사용하는 중유의 비과세액 추계: 2021~2025년〉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비과세 대상 중유 투입량(A, 천kl)	1,075	1,075	1,075	1,075	1,075
개별소비세(B=A×17원/ℓ, 억원)	183	183	183	183	183
교육세(C=B×15%, 억원)	27	27	27	27	27
합계(D=B+C, 억원)	210	210	210	210	210

3. 개인음식점 사업자에 대한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인상: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2020.11.17. 발의)

가. 주요내용

- 음식점을 경영하는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에 대해 2021년
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인상

나. 비용추계 결과

- 음식점을 경영하는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에 대한 면세농
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9/109에서 10/110으로 인상하는 경우 연
평균 586억원의 재정수입 감소 예상

〈개정안에 따른 비용추계 결과〉

(단위: 억원)

구분	2021	2022	합계	연평균
과표 2억원 이하 음식업 개인 사업자에 대한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인상	-879	-293	-1,173	-586

다. 재정수반요인

-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 음식점을 경영하는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에 대해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9/109에서 10/110으로
인상함에 따라 부가가치세수 감소 예상

라. 비용추계의 전제

- 2019년 의제매입세액공제율 9/109를 적용한 것으로 신고한 음식업 개인 일반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액에서, 개정안의 10/110 공제율을 적용한 공제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추정
 - 일반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액은 1기와 2기 금액을 합산한 금액
 - 2021년부터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8,000만원인 일반사업자 중 일부가 간이사업자로 전환되며 더 이상 의제매입세액공제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2019년 신고자료 활용하여 해당 금액을 추계한 뒤 차감
 - 현행 간이과세 구간(공급대가 0~4,800만원) 음식업 사업자의 전체 과세표준 금액 중 간이사업자 과표 금액의 비중*이 4,800~8,000만원 구간에 서도 동일하다고 가정하여 해당 구간 간이사업자의 공제액을 추계
 - * 간이사업자 과표금액 / (일반사업자 과표금액+간이사업자 과표금액)¹⁾
 - 공급대가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므로 이를 공급가액 기준으로 환산 (=공급대가/1.1)
- 향후 의제매입세액공제 금액이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비례하여 증가할 것으로 가정
 - 물가 외 다른 환경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전제
- 개정안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을 전제로 추정

1)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음식업 전 구간의 매출과표에는 영세분 과표금액이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음

마. 비용추계 상세 내역

- 2019년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율 9/109를 적용한 것으로 신고한 음식업 개인 일반사업자의 연간 공제액은 1조 1,856억원 수준²⁾
 - 이 중 공급대가 4,800~8,000만원 구간에서 신고된 의제매입세액공제액은 719억원
- 2019년 의제매입세액공제액 중 간이과세 전환으로 동 개정안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자의 공제액을 419억원으로 추정하고, 이를 제외한 공제액을 1조 1,437억원으로 산출
 - 공급대가 4,800~8,000만원 구간의 의제매입세액공제액 719억원의 58.2%인 419억원을 간이과세자로 전환될 사업자의 종전 공제액으로 본다는 전제에 따라, 동 금액을 총 공제액에서 차감
 - － 2019년 음식업 신고 자료에 따르면, 간이과세 적용구간(공급대가 0~4,800만원)에서의 간이사업자 과표 비중은 58.2% 수준으로 추정
 - － 일반사업자의 과표는 2.4조원³⁾, 간이사업자의 과표는 3.4조원 수준
 - 따라서 동 개정안의 적용 대상인 의제매입세액공제액은 1조 1,437억원 (=1조 1,856억원-419억원)으로 산출

2)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상, 공제율을 9/109로 적용한 사업자의 공제액 신고분임 (국세청 제공자료, 2020년 12월)

3) 국세통계연보 상 일반사업자의 자료는 0~6,000만원 구간에 대한 집계가 공개되어 있어, 해당 구간 내 신고건수가 균등분포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매출과표를 추정함

-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9/109에서 10/110으로 인상 시, 2021년 기준 부가가치세수 신고액은 1,173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
 - 2021년 동 추계의 대상이 되는 공제액은 2019년 기준 1조 1,437억원에 향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을 곱한 1조 1,609억원으로 추정
 -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국회예산정책처, 2020.9.): '20년 0.5%, '21년 1.0%
 - 개정안의 공제율(10/110)을 적용한 금액은 1조 2,782억원(=1조 1,609억원 × (10/110)/(9/109))으로 계산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율 특례 공제율 조정 시 공제액: 2021년, 신고 기준>
(단위: 억원)

	현행 제도 (공제율 9/109)	개정안 (공제율 10/110)	세수효과
의제매입세액공제액	11,609	12,782	-1,173

자료: 국세청 제공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징수 시점을 감안할 경우 부가가치세수는 2021년 879억원, 2022년 293억원으로 총 1,173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
 - 일반사업자에 대한 공제는 각 과세기간의 예정·확정신고 기간에 이루어지므로 당해연도에 3/4, 차년도에 1/4 공제되는 것으로 가정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율 특례 공제율 조정 시 공제액 변화: 2021~2022년, 징수 기준>
(단위: 억원)

	2021년	2022년	합계
의제매입세액공제액	-879	-293	-1,173

4. 부가가치세 면세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12.30발의)

가. 주요내용

-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으로 간이과세자에게 공급하는 차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신설

나. 재정수반 요인

- 부가가치세의 면제
 -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으로 간이과세자에게 공급하는 차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
 - － 동 개정안의 ‘개인화물자동차’는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차량을 가리킴(「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

다. 미첨부 근거규정

-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라. 미첨부 사유

-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으로 간이과세자에게 공급하는 차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세 대상에 포함함에 따라 부가가치세수의 감소 예상
- 개정안에 따른 부가가치세수 감소액을 추계하기 위해서는 화물자동차 1대를 운영할 것으로 예상되는 간이과세(직전연도 매출 8,000만원 미만) 사업자의 차량 취득가액 관련 정보가 필요

〈추가재정소요 산식〉

$$\text{추가재정소요액} = \sum_{t=2022}^{2026} [\text{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으로 간이과세자에게 공급하는 차량의 취득가액}_t \times \text{차량 공급 단계의 부가가치율}_t \times 10\% \text{ 세율}]$$

- 그러나 화물자동차 1대를 운영할 것으로 예상되는 간이과세(직전연도 매출 8,000만원 미만) 사업자의 차량 취득가액 등에 대한 합리적인 추정이 어려워 동 개정안에 대한 객관적인 추계가 불가능함
 - 2019년의 경우 개인이 취득한 화물자동차 대수 및 해당 평균 가액에 관한 자료가 존재하나, 이 중 차량을 1대만 보유한 사업자 분 별도 구분이 어려워 파악이 어려움
 - 개인화물자동차 사업자 중 일부만이 간이과세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향후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하회하는 사업자가 취득하는 차량의 가액을 추정하기 어려움

〈신규·이전등록된 개인소유 사업용 화물자동차 현황: 2019년〉

(단위: 원, 건)

등록구분	1톤이하		5톤이하		5톤초과	
	평균 취득금액	건수	평균 취득금액	건수	평균 취득금액	건수
신규등록	16,816,435	10,488	43,936,286	3,404	96,394,947	705
이전등록	2,196,782	13,061	5,152,798	8,004	6,327,194	2,033

주: 1. 개인소유 사업용 화물자동차는 1대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의 차량도 포함한 자료

2. 취득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취득가액

3. 이전등록은 개인 간 이전 외에 증여 및 상속 등도 포함

자료: 국토교통부 제공자료(2021.1.)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운수업조사(통계청) 상 개별 화물자동차 운송업의 평균 매출액: 2019년〉

(단위: 개, 억원, 만원)

매출액 규모별	사업체 수	매출액	평균 매출액
~5천만원	45,723 (58.7)	16,324 (40.9)	3,570
5천만원~1억원	28,383 (36.4)	19,098 (47.9)	6,729
1억원~5억원	3,797 (4.9)	4,468 (11.2)	11,768
합계	77,903 (100.0)	39,890 (100.0)	5,120

주: 괄호 안은 조사대상 전체 중 비중

자료: 운수업조사(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 시점에서 제정안에 따른 지출 증가액을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V 지방세제 분야

1. 영세개인사업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1.2.1. 발의)

가. 주요내용

- 영세개인사업자가 2024년 말까지 신청한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을 면제하고, 체납액을 최대 5년 간 분납

나. 비용추계 결과

- 영세개인사업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의 가산금을 2024년 말 신청분까지 면제하는 경우 연평균 2.8억원의 재정수입 감소 예상

〈개정안에 따른 비용추계 결과〉

(단위: 억원)

구분	2022	2023	2024	합계	연평균
영세개인사업자의 지방소득세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의 면제	-2.8	-2.8	-2.8	-8.4	-2.8

다. 재정수반요인

- 영세개인사업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
 -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체납액이 5천만원 미만인 영세개인사업자에

대해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¹⁾을 면제하고, 체납액을 최대 5년 간 분납하도록 함에 따라 가산금 및 이자수입의 감소가 예상

- 현행 종합소득세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 면제 및 분납의 특례를 적용 받은 경우, 개인지방소득세의 가산금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

〈현행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

대상	종합소득세(부가된 농어촌특별세 포함) 및 부가가치세 체납액이 5천만원 이하인 개인사업자 ²⁾
특례 내용	가산금 ³⁾ 의 납부의무를 면제, 최대 5년 범위에서 체납액의 분납 허용
적용 기한	2024년 12월 31일 신청분까지

- 1)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못한 지방세액의 3%(「지방세징수법」 제30조, 단, 동 규정은 2022년 2월 3일 이후 「지방세기본법」 제55조 납부지연가산세로 전환될 예정)
- 2) 동 제도의 국세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하는 사업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직전 3개 과세연도(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포함)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평균금액이 15억원 미만
 - 2020년 12월 31일 이전 모든 사업을 폐업한 경우 2020~2023년 기간 사업을 개시하여 1개월 이상 지속하거나,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무
 - 직전 5년 이내 「조세법 처벌법」에 따른 처벌 또는 처분을 받았거나 관련 재판을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경우
 - 신청일 기준 「조세법 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경우
 - 신청일 기준 체납액 중 종합소득세(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포함) 및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이 5천만원 미만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5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적용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3) 납부지연가산세는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 중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한 세액의 3%(「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라. 비용추계의 전제

- 개정안의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 면제는 해당 국세 가산금이 면제된 경우에 적용하므로,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의 변화는 국세의 경우와 같이 2024년 말까지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전제하여 추정
-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 면제액은 국세인 종합소득세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 면제액의 10%로 산출
 - 종합소득세 체납액 및 이에 대한 가산금 면제액의 최근 실적이 향후에도 동일한 수준으로 이어질 것으로 가정
 - 다만 종합소득세 체납액은 종합소득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⁴⁾도 포함하고 있는데, 이를 별도로 분리하기 어려워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체납액도 모두 종합소득세 체납액인 것으로 가정
- 체납액의 분납 시 이자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사업자 별로 5년 범위 내에서 분납기한·금액 등을 달리 하기 때문에 이자수입의 감소에 대한 합리적인 추정이 어려워 동 추계에는 포함하지 않음
- 본 비용추계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을 전제로 추정

4) 소득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및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을 받은 소득세 감면세액의 20%,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받은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세액의 10%(「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

마. 비용추계 상세 내역

- (개요) 영세개인사업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 면제 제도를 신설
 - 국세의 경우 2020년부터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체납액이 5천만원 미만인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신청액에 대하여 가산금을 면제하고 있음
 - 동 개정안은 가산금 감면이 적용된 종합소득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에 대하여도 면제를 적용하는 내용
- (감면 실적) 2020년 영세개인사업자에 대하여 국세인 종합소득세의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으로 면제된 금액은 28억원⁵⁾ 수준
- (추계 방법) 해당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체납액은 국세의 10% 수준이므로,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은 2.8억원 수준일 것으로 추정
 - 추계 기간 국세인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의 가산금 면제액이 2020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발생할 것으로 가정
- (추계 결과) 개정안에 따라 영세개인사업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을 면제할 경우 2022년 2.8억원, 2024년 2.8억원 등 2022~2024년 3년 간 총 8.4억원의 지방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 지방세〉

(단위: 억원)

구분	2022	2023	2024	누적	평균
영세개인사업자의 지방소득세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의 면제	-2.8	-2.8	-2.8	-8.4	-2.8

5) 국세청 제공 자료

2.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 인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06.10. 발의)

가. 주요내용

-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0.5~2%p 인하

나. 비용추계 결과

-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을 인하할 경우 연 평균 3조 5,745억원의 재정수입 감소가 예상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단위: 억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누적	연평균
취득세(A)	-27,806	-29,975	-32,313	-34,833	-37,550	-162,477	-32,495
지방교육세(B)	-2,781	-3,231	-3,231	-3,483	-3,755	-16,248	-3,250
합계	-30,587	-32,972	-35,544	-38,317	-41,305	-178,725	-35,745

다. 재정수반요인

-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하는 주택분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따른 구간을 인하하는 과정에서 구간의 세율이 인하됨에 따라 지방세 수입 감소가 예상(안 제11조제1항제8호)

〈주택분 취득세율: 현행 및 개정안〉

(단위: %, %p)

구분	현행(A)	개정안(B)	비교(B-A)
6억원 이하	1.0	0.5	-0.5
6~9억원	1.0~3.0 ¹⁾	1.0	-2.0~0
9~15억원	3.0	2.0	-1.0
15억원 초과		3.0	0

주: 1) 6~9억원 구간의 세율은 1.0~3.0%로, 납부실적을 균등분포로 가정할 경우 평균세율은 2.0% 수준

라. 비용추계의 전제

- 개정안에 따른 비용추계는 2018년 기준 주택 유상거래 과세표준 단계별 취득세 실적자료 등을 바탕으로 분석
 -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한 현행 주택 유상거래 과세표준에 따른 세분화된 취득세 현황자료를 바탕으로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정
 - － 행정안전부 제공자료를 바탕으로 과세표준 구간을 6억원 이하, 6~9억원, 9~15억원, 15억원 초과구간으로 구분
 - 현행 150만원 단위로 1.0~3.0%의 세율을 적용하는 주택 취득가액 6~9억원 구간의 경우, 납부실적의 분포는 균등분포를 보인다고 가정
 - － 균등분포를 가정할 경우, 본 구간의 평균 세율은 2.0%로 추정
 - 취득세 관련 세수효과는 취득세와 부가세(surtax)인 지방교육세(취득세의 10%)를 포함하여 추정
 - － 단, 또 다른 부가세(surtax)인 농어촌특별세(취득세액의 5%)의 경우, 85㎡ 초과하는 주택 취득시에만 부과되지만, 이를 구분할 수 있는 자료가 부재하여 분석에서 제외

- 향후 세수효과는 최근 3년(2016~2018년)간 주택분 취득세액 연평균 증가율인 7.8%에 비례하여 증가한다고 가정

마. 비용추계 상세 내역

- (18년 주택분 취득세 실적) 2018년 기준 유상거래 주택분 취득세 과세액은 5조 3,956억원 규모
 - 전체 취득세액 23조 8,135억원에서 주택분은 8조 175억원, 33.7%를 차지하며, 이 중 67.2%인 5조 3,956억원이 유상거래로 인한 취득에 해당
 - 과세표준 6억원 이하 구간 2조 9,947억원, 6~9억원 구간 8,701억원, 9~15억원 구간 1조 4,240억원, 15억원 초과 구간 6,692억원의 세수 기록

〈유상거래 주택분 취득세의 과세표준 구간별 세수현황: 2018년〉

(단위: 억원)

과세표준별	6억원 이하	6~9억원	9~15억원	15억원 초과	계
취득세액	29,947	8,701	8,617	6,692	53,956

자료: 행정안전부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18년 세수효과) 개정안에 따른 세율감소를 적용하면, 2018년 기준 2조 4,416억원의 세수감소가 있을 것으로 추정
 - 세부구간별 해당 취득세액에 세율의 증감분을 곱하여 세수효과를 산출

〈과세표준 구간별 취득세액 세수효과 추정: 2018년〉

(단위: %, 억원)

과세표준별	현행		개정안		세수효과		
	세율 (A)	세액 (A')	세율 (B)	세액 (B'=A'×B/A)	취득세 (C=B'-A')	지방 교육세 (D=C×0.1)	계 (C+D)
6억원 이하	1.0	29,947	0.5	14,973	-14,973	-1,497	-16,471
6~9억원	2.0 ¹⁾	8,701	1.0	4,351	-4,351	-435	-4,786
9~15억원	3.0	8,617	2.0	5,744	-2,872	-287	-3,159
15억원 초과	3.0	6,692	3.0	6,692	0	0	0
전체		52,486		31,760	-22,196	-2,220	-24,416

주: 1) 6~9억원 구간의 세율은 1.0~3.0%로, 납부실적을 균등분포로 가정할 경우 평균세율은 2.0% 수준
자료: 행정안전부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향후 세수효과) 2018년 세수효과를 바탕으로 매년 최근 3년간 취득세의 연평균 증가율만큼 세수효과가 증가할 것으로 가정
- 2016~2018년 주택분 취득세액 연평균 증가율: 7.8%

〈개정안에 따른 취득세 세수효과 전망: 2018~2025년〉

(단위: %, 억원)

	세수효과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취득세	-22,196	-23,928	-25,794	-27,806	-29,975	-32,313	-34,833	-37,550
지방 교육세	-2,220	-2,393	-2,579	-2,781	-2,997	-3,231	-3,483	-3,755
합계	-24,416	-26,320	-28,373	-30,587	-32,972	-35,544	-38,317	-41,305

바. 부대의견

-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의 기준이 되는 주택 매매가격 (취득가액)의 향후 증가율 수준에 따라 세수효과 규모는 달라질 수 있음
- 본 추계는 2018년 주택 유상거래 과세표준별 분포를 기준으로 세수 효과를 추정하였으므로, 향후 주택 유상거래 취득자의 과세표준별 분포 추이에 따라 세수효과 규모는 달라질 수 있음
- 본 추계는 85㎡ 이상 주택 취득시 취득세와 같이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취득세의 5% 부가) 감소로 인한 세수효과를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포함하면 세수효과 규모는 달라질 수 있음

3. 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인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11.06. 발의)

가. 주요내용

-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세율을 현행 0.14%에서 0.12%로 0.02%p 인하

나. 비용추계 결과

-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세율을 인하하는 등의 경우, 재산세는 2021~2025년 5년간 총 3조 7,901억원(연평균 7,58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 재산세〉

(단위: 억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누적	연평균
합계(A+B+C)	-7,077	-7,303	-7,531	-7,843	-8,147	-37,901	-7,580
- 주택(A)	-3,673	-3,759	-3,842	-4,007	-4,168	-19,450	-3,890
- 토지(B)	-2,548	-2,660	-2,775	-2,890	-3,001	-13,874	-2,775
- 건축물(C)	-855	-884	-914	-946	-978	-4,577	-915

다. 재정수반요인

-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현행 과세표준의 0.14%에서 0.12%로 세율인하함에 따라 재산세수의 감소가 예상됨(안 제112조제1항제2호)

- 재난·감염병 등 발생시 각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산세 탄력세율 조정을 의무화하고, 탄력세율 조정 범위를 규정함에 따라 재산세수의 증감이 예상되나 본 추계에서는 고려하지 않음(안 제111조제3항, 제112조제2항)
 - 법률에서 규정하는 재난 및 감염병 발생시 조례에 따라 재산세 세율의 50% 범위내에서 가감하여 조정
 - 재난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감염병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상황으로 규정
 - 단, 재난·감염병 발생 상황에 대한 예측이 어렵고, 탄력세율 조정 수준은 지방조례에서 결정하도록 하여 증감수준을 특정하기가 곤란하여 본 추계에서는 고려하지 않음

라. 비용추계의 전제

- 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인하의 세수효과는 도시지역에 해당하는 부동산 재산세 과표의 세율인하분($\Delta 0.02\%$)를 적용하여 산출
 - 향후 도시지역 부동산 과표는 2019년 기준 실적자료를 바탕으로 부동산 유형별로 공시가격 또는 시가표준액 상승률을 반영하여 산출
 - 주택 및 토지는 해당 부동산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60%, 토지 70%)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므로, 과표의 상승률은 공시가격의 상승률과 일치
 -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를 곱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므로, 과표의 상승률은 시가표준액 상승률과 일치

- (자료) 개정안에 따른 비용추계는 행정안전부의 2019년 기준 재산세 도시지역분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함
 - 주택, 토지, 주택 이외의 건축물(이하 '건축물')에 대한 지역(17개 광역시·도)별 재산세 도시지역분 실적자료
-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 상승률) 2020년은 지역별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 상승률을 반영하며, 향후 공시가격 상승률은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른 공시가격 상승률 전망을 이용하여 적용
 - 2020년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해당지역별 주택 및 토지의 세부유형별 공시가격 상승률의 가중평균(가중치: 호수, 필지수) 값을 적용
 - 주택: 공동주택, 표준단독주택,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의 가중평균(가중치: 호수)
 - 토지: 표준지, 개별토지 공시가격 상승률의 가중평균(가중치: 필지수)
 - 향후 공시가격 상승률은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2020.11.)에 따른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이하 '현실화율') 제고로 인한 공시가격 상승률 적용
 - 공시가격 상승률은 시세의 변동뿐만 아니라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승 등의 정책요인에도 영향을 받아 예측이 어려움
 - 정부는 2020년 기준 공동주택 69.0%, 단독주택 53.6%, 표준지 65.5%인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부동산 유형별로 8~15년간 90%까지 상승시킬 전망
 - 시세의 변동 등 시장요인이 없다고 가정할 때, 추계기간 중 주택은 연평균 2.2~4.6%, 토지는 3.9~4.7% 수준으로 상승할 전망
 - ※ 주택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의 가중평균값을 적용(가중치: 호수)
토지는 표준지의 공시가격 상승률을 이용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 상승률 전망: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단위: %)

		2021	2022	2023	2024	2025
주택	공동주택	1.7	1.9	1.7	4.0	3.7
	단독주택	4.3	3.9	4.0	5.3	5.0
	가중평균 (가중치: 호수)	2.3	2.3	2.2	4.3	4.0
토지		4.7	4.4	4.3	4.1	3.9

주: 향후 공시가격 상승률은 시세변동이 없다고 가정할 때, 공시가격 현실화를 제고에 따른 상승률만 적용

자료: 국토교통부 발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상승률) 2020년은 지역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의 시가표준액 상승률을 반영하며, 향후 상승률은 최근 5년(2016~2020년)간 연평균 시가표준액 상승추세가 이어진다고 가정
 -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매년 1회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그 외 건물의 가액에 따름
 -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나목
 - 최근 5년(2016~2020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의 시가표준액 상승률은 연평균 3.4% 수준
 - －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시가표준액 전국 평균 상승률에 가중평균 값(가중치: 호수)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시가표준액 상승률: 2016~2020년〉

(단위: %)

	2016	2017	2018	2019	2020	연평균
오피스텔	1.6	3.8	3.7	7.5	1.4	3.6
상업용 건물	0.8	2.6	2.9	7.6	2.4	3.2
가중평균 (가중치: 호수)	1.2	3.2	3.3	7.5	1.9	3.4

자료: 국세청 발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마. 비용추계 상세 내역

- 2019년 재산세 도시지역분 실적을 바탕으로 2020년 과표를 추정한 후, 공시가격 및 시가표준액 상승률을 적용하여 2021~2025년 과표를 추정하고 세율인하분($\Delta 0.02\%$)을 반영하여 세수효과 추정

1) 2020년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표 산출

- 2019년 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액은 주택 2조 3,789억원, 토지 1조 6,045억원, 건축물 5,703억원으로, 도시지역분의 과표는 주택 1,699조원, 토지 1,146조원, 건축물 407조원 수준으로 산출
 - 도시지역분 과표(추정치) = 도시지역분 세액/공정시장가액비율
 - － 공정시장가액비율: 주택 60%, 토지 및 건축물 70%

〈재산세 도시지역분 실적 및 과표 추정치: 2019년〉

(단위: 억명, 조원)

지역	주택		토지		건축물	
	세액 (A)	과표 (A/60%)	세액 (B)	과표 (B/70%)	세액 (C)	과표 (C/70%)
전국	23,789	1,699	16,045	1,146	5,703	407
서울	8,393	599	5,564	397	1,189	85
부산	1,409	101	1,097	78	396	28
대구	1,051	75	652	47	246	18
인천	1,219	87	1,080	77	368	26
광주	489	35	248	18	144	10
대전	563	40	292	21	155	11
울산	444	32	407	29	175	13
세종	196	14	93	7	38	3
경기	6,402	457	3,844	275	1,382	99
강원	331	24	201	14	131	9
충북	372	27	226	16	154	11
충남	497	35	412	29	237	17
전북	390	28	231	17	161	12
전남	298	21	282	20	184	13
경북	580	41	481	34	284	20
경남	952	68	774	55	377	27
제주	201	14	160	11	81	6

자료: 「2020년 지방세통계연감」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2019년 과표 추정치를 바탕으로 2020년 공시가격 및 시가표준액 상승률을 반영하면, 2020년 과표는 주택 1,795조원, 토지 1,217조원, 건축물 413조원 수준으로 추정
- 2020년 도시지역분 과표(추정치) = 2019년 과표(추정치) × 상승률
 - 주택·토지: 지역별 평균 공시가격 상승률
 - ※ 단, 평균 공시가격 상승률 산출시, 주택은 표준단독주택, 개별단독주택, 공동주택의 토지는 표준지, 개별토지의 상승률의 가중평균값을 사용 (가중치: 호수, 필지수)
 - 건축물: 전국평균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의 시가표준액 상승률의 가중 평균값(1.9%)
 - ※ 건축물의 경우, 서울 및 주요광역시 외의 개별 도급 행정구역의 상승률이 공표되지 않음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표 추정치: 2020년〉

(단위: 조원, %)

지역	주택			토지			건축물		
	'19년 과표 (A)	공시 가격 상승률 (A')	'20년 과표 (A×A')	세액 (B)	공시 가격 상승률 (B')	'20년 과표 (B×B')	세액 (C)	공시 가격 상승률 (C')	'20년 과표 (C×C')
전국	1,699	-	1,795	1,146	-	1,217	407	-	413
서울	599	12.9	677	397	8.2	430	85	3.2	88
부산	101	1.0	102	78	6.2	83	28	-0.8	28
대구	75	1.3	76	47	7.0	50	18	0.8	18
인천	87	1.7	89	77	4.1	80	26	-0.6	26
광주	35	2.0	36	18	7.3	19	10	1.2	10
대전	40	11.8	45	21	6.0	22	11	1.8	11

지역	주택			토지			건축물		
	'19년 과표 (A)	공시 가격 상승률 (A')	'20년 과표 (A×A')	세액 (B)	공시 가격 상승률 (B')	'20년 과표 (B×B')	세액 (C)	공시 가격 상승률 (C')	'20년 과표 (C×C')
울산	32	-1.1	31	29	2.4	30	13	-1.3	12
세종	14	5.5	15	7	4.8	7	3	-4.1	3
경기	457	3.2	472	275	5.5	290	99	1.5	100
강원	24	-4.6	23	14	4.7	15	9	1.9	10
충북	27	-2.8	26	16	4.0	17	11	1.9	11
충남	35	0.0	35	29	2.7	30	17	1.9	17
전북	28	-2.0	27	17	4.5	17	12	1.9	12
전남	21	1.8	22	20	5.7	21	13	1.9	13
경북	41	-2.8	40	34	4.9	36	20	1.9	21
경남	68	-2.9	66	55	3.0	57	27	1.9	27
제주	14	-3.4	14	11	4.5	12	6	1.9	6

주: 건축물 시가표준액 및 지역별 자료가 공표되지 않는 도급 행정구역의 경우 전국평균 상승률 적용
 자료: 「2020년 지방세통계연감」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2021~2025년 세수효과 추정

- 2020년 과표를 바탕으로 주택, 토지, 건축물의 공시가격 및 시가표준액 상승률을 반영하여 2021~2025년의 과표를 추정
 - 2020년 주택, 토지, 건축물의 총과표를 토대로 공시가격 상승률 또는 시가표준액 상승률을 적용하여 2021~2025년간 각 부동산 유형별 총과표를 추정

- 주택 및 토지의 경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2020.11.)에 따른 향후 공시가격 상승률을 반영
 - ※ 주택은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상승률의 가중평균 값을 이용(연간 2.2~4.3%)
 - 토지는 표준지 상승률을 이용(연간 3.9~4.7%)
- 건축물의 경우, 향후 시가표준액은 최근 5년(2016~2020년)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의 시가표준액 상승추세를 따른다고 가정
 - ※ 연평균 3.4% 수준

□ 추정된 2021~2025년의 과표를 바탕으로 세율인하분(0.02%p)을 반영하여 각 부동산 유형별 세수효과를 추정

〈2021~2025년간 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인하 세수효과〉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주택	과표 ¹⁾ (조원)	1,795	1,837	1,880	1,921	2,003	2,084
	상승률(%)	-	2.3	2.4	2.2	4.3	4.0
	세수효과 ²⁾ (억원)	-	3,673	3,759	3,842	4,007	4,168
토지	과표(조원)	1,217	1,274	1,330	1,387	1,445	1,501
	상승률(%)	-	4.7	4.4	4.3	4.1	3.9
	세수효과(억원)	-	2,548	2,660	2,775	2,890	3,001
건축물	과표(조원)	413	428	442	457	473	489
	상승률(%)	-	3.4	3.4	3.4	3.4	3.4
	세수효과(억원)	-	855	884	914	946	978

주: 1) 과표는 2020년 과표 추정치에 향후 공시가격 및 시가표준액 상승률 가정을 반영하여 추정

2) 세수효과는 과표의 세율인하분(0.02%p)을 곱하여 산출

자료: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바. 부대의견

-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향후 시세변동을 반영하지 않은 관계로, 시세변동에 따라 세수효과는 달라질 수 있음
-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상승률은 최근 5년(2016~2020년)의 상승추세를 따른다고 가정하였으므로, 향후 상승추세에 따라 세수효과는 달라질 수 있음
- 개정안은 재난·감염병 등 발생시 각 지방자치단체는 재산세 세율의 50% 범위내에서 세율을 조정하도록 규정하여, 재난·감염병 등의 상황 발생시 세수효과는 달라질 수 있음

2021 법안 비용추계 이해와 사례 II

발간일 2021년 8월 24일
발행인 국회예산정책처장 임익상
편 집 추계세제분석실 행정비용추계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인쇄처 유월애(TEL 02-859-2278)

내용에 관한 문의는 국회예산정책처 행정비용추계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TEL 02-6788-3778)

ISBN 978-89-6073-428-9 93350

© 국회예산정책처, 2021

내일을 여는 국민의 국회



(0723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www.nabo.go.kr

발 간 등 록 번 호
31-9700492-001784-01



국회에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